



연구보고서 18-24



#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문희  
김영귀  
구경현  
박혜리  
금혜윤

#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문희·김영귀·구경현·박혜리·금혜윤

연구보고서 18-24

##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 쇠 2018년 12월 24일  
발 행 2018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T. 1833-9650)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723-9 94320  
978-89-322-1072-8(세트)



## 서언

최근 국제통상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그동안 WTO로 대표되던 다자무역체제는 이런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질적 측면에서도 협정이 포함하는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를 규율하는 조항들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53개국과 15건의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유무역협정 관련 연구는 관세 감축이나 협정 체결 여부에 따른 효과에 집중하고 있었던 반면,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유무역협정 수준과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된 배경을 살펴보고, Worldbank(2017)의 DB를 이용하여 전 세계 및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 포함 범위와 수준을 변수화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 여부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및 그 구성요소 포함 범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Worldbank(2017)의 DB에서 52개로 분류된 세부 구성요소를 그 특성에 따라 9개의 상위 구성요소로 재분류하여 이들 상위 구성요소와 주요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조문희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본원의 김영귀 연구위원, 구경현 부연구위원, 박혜리 전문연구원 그리고 금혜윤 전문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문위원을 맡아주신 최낙균 선임연구위원께 감사드리며, 원외 심의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과장, 박형민 과장, 숭실대학교 서정민 교수, 원내 심의위원으로 도움을 주신 배찬권 연구위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자유무역협정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자유무역협정 관련 통상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

원장 이재영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보다 복잡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orldbank(2017)의 DB를 활용하여 전 세계 및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을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및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를 현재 WTO의 권한(mandate)하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14개 WTO+ 요소와 WTO의 권한 밖에 있는 38개 WTO-X 요소로 구분한 다음, 1958~2015년 기간에 발효된 261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총 52개의 WTO+/WTO-X 구성요소 포함 여부(coverage) 및 법적구속력(legal enforceability) 여부를 기준으로 협정의 수준(depth)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개별 협정의 수준(depth)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포함하는 WTO+ 및 WTO-X 요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히 SPS와 TBT, TRIPs, GATS 등 WTO+ 요소의 포함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법적구속력이 부여된 요소의 경우, 2005년까지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과 포함된 구성요소의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의 경제 수준이나 당사국이 속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제 수준 측면에서 보면, 최근 발효된 모든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언급된 요소는 SPS, 공공조달, GATS였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통관이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채로 모두 포함되었다.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SPS와 TBT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덤핑조치, TRIMs, TRIPs 등의 포함 비중도 높아졌다. 한편 지역 기준으로는 유럽 및 동아시아가 체결한 협정에서 대체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법적구속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이 포함된 협정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발효 시기가 최근인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평균 구성요소 수는 26개로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평균인 18.3개보다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시가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준 높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 관세자유화, 통관, SPS, TBT, 반덤핑 및 상계관세, GATS, TRIPs, 지식재산권으로 총 10개였다. 다만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와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시기보다 상대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선진국과 체결한 7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개도국과 체결한 8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부재한 요소로는 수출세, 공공조달,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요소로는 공공조달, 노동시장 규제, 공공행정 등이 있었고 반면 국가보조, 문화협력, 에너지, 공동연구에 대한 내용은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다 강조되었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지역 기준에서, 가장 많은 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10개의 구성요소 외에 투자 관련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었다. 그 밖에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대국에 따라 중심적인 구성요소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의 수준(depth)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포함 정도로 새롭게 정의하고, 1995년부터 2015년까지(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10) 제외) 전 세계 196개국의 양자간 교역자료와 약 260여 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에 따른 교역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별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양의 교역효과는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은 개도국의 수출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동태적 효과 분석에서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큰 양의 교역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

요소들의 포함 수준이 이러한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  
드러났다.

이어서 52개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를 ① 시장접근 ② 서비스 ③ 투자 ④  
지재권 ⑤ 공공조달 ⑥ 경쟁 ⑦ 표준 ⑧ 무역구제조치 ⑨ 비교역 이슈라는 9개  
상위 구성요소로 나누어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 및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시장접근은 각 분야별 관세화와 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인하는 상호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며, 양자교역을 촉  
진한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세부 산업별 이질성이 강하므  
로 서비스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은 단순치가 않다. 투자 자  
유화와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투자 조항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유형  
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어 분석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적  
창작물 보호 강화를 위한 지재권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에 기여하  
고 투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국가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커서 분쟁의 여지가 많  
은 분야이다.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거나 영향이 없다는 주장과 수출  
확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등 상반되는 논의가 존재한다. 공공조달은 정부  
가 경제행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양허안을 통해 시장접근 수준을 합의한다. 따라서 시장접근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국산 우선구매나 자국 내 조달 비중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교  
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쟁정책은 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를 목표로 한다. 경쟁정책은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증대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남용될 경우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TBT와 SPS를 포함하는 표준 조항 또한 소비자의 탐색비용과 생산자의 수출비용 감소 등을 통한 수출 촉진 효과와 기업 생산비용 증대로 인한 수출 축소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무역구제 조항은 대표적인 보호무역조치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교역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무역구제 조항에 규정된 남용 방지 규정을 통해 교역 활성화 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

위에서 논의한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들과 해당 세부 구성요소들이 실제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간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교역 효과가 불분명한 일부 구성요소의 경우 상품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그 효과는 이질적이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시장접근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접근의 세부 구성요소인 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자유화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세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서비스 구성요소는 교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선진국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개도국간 교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로서 투자 역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선진국의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공조달의 경우 개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관한 상위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보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구성요소 표준은 개도국의 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구성요소인 SPS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TBT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 중 무역구제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선진국 간 그리고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별 교역 효과가 협정 상대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향후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개선 협상 대상국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협상분야 선별과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이행위원회 및 개선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서언 .....	3
국문요약 .....	5
<b>제1장 서론 .....</b>	<b>19</b>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	20
가.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 .....	20
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원인 .....	22
다.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과정 .....	24
2. 연구의 목적, 차별성 및 구성 .....	26
가. 연구의 목적 .....	26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7
다. 연구의 구성 .....	28
<b>제2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현황 .....</b>	<b>29</b>
1. 구성요소의 분류 및 주요 내용 .....	30
2.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	36
가. 전체 및 시기별 특징 .....	36
나. 경제 수준별 특징 .....	43
다. 지역별 특징 .....	47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	55
4. 소결 .....	62

<b>제3장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b> .....	<b>65</b>
1.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	66
2. WTO+/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	72
3.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영향 .....	76
4. 동태적 영향 .....	81
5. 소결 .....	85
<b>제4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b> .....	<b>87</b>
1. 상위 구성요소의 재분류: 주성분 분석 .....	88
2. 상위 구성요소의 주요 특징 및 교역과의 관계 .....	98
가. 시장접근(Market Access) .....	98
나. 서비스(Services) .....	101
다. 투자(Investment) .....	104
라. 지식재산권(IPR) .....	107
마.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	111
바. 경쟁(Competition) .....	115
사. 표준(Standards) .....	119
아. 무역구제(Trade remedy) .....	125
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	130
가.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	130
나.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	139
다. 소결 .....	156

<b>제5장 결론</b> .....	<b>159</b>
1. 요약 .....	160
2. 정책 시사점 .....	163
가.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	163
나. 높은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	165
다. WTO-X 및 신규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166
라. 구성요소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	167
<b>참고문헌</b> .....	<b>169</b>
<b>부록</b> .....	<b>177</b>
1. 주성분 분석(포함 여부) .....	178
2. 주성분 분석(법적구속력 여부) .....	183
3. 주성분 분석(분쟁해결대상 여부) .....	188
<b>Executive Summary</b> .....	<b>193</b>



## 표 차례

표 1-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및 특징 .....	22
표 2-1.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	32
표 2-2.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포함 수준이 높은 협정 현황 .....	34
표 2-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협정별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현황 .....	37
표 2-4. 시기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현황 .....	41
표 2-5. 경제 수준별·시기별 자유무역협정 주요 구성요소 및 법적구속력 현황 .....	46
표 2-6. 지역별 주요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유럽, 동아시아, 북미 ...	51
표 2-7. 지역별 주요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남미, 중미, 오세아니아 ...	52
표 2-8. 지역별 주요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CIS, 아프리카, 서아시아, 중동, 카리브 .....	54
표 2-9.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협정별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현황 .....	56
표 2-10. 상대국의 경제 수준별 자유무역협정 구분에 따른 구성요소 현황 .....	60
표 2-11. 지역별 자유무역협정 구분에 따른 구성요소 현황 .....	62
표 3-1. 주요 변수 기초 통계량 .....	71
표 3-2.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196개국 대상) ...	74
표 3-3.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교역량 기준 상위 48개국 대상) .....	75
표 3-4.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교역효과 (196개국 대상) .....	78

표 3-5.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교역효과 (교역량 기준 상위 48개국 대상) .....	79
표 3-6.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동태적 교역효과 .....	82
표 4-1.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분류 .....	89
표 4-2.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주성분 분석(전체 국가 대상) .....	94
표 4-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주성분 분석(상위 48개국 대상) .....	95
표 4-4. 다분상관 주성분 분석 .....	97
표 4-5. 일반 주성분 분석과 다중상관 주성분 분석 지표 간 상관관계 ..	98
표 4-6. 자유무역협정 유형별 투자챗터 포함 비중 .....	105
표 4-7.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반덤핑 관련 조항(성질별) .....	127
표 4-8.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	134
표 4-9. 경제 수준별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	138
표 4-10. 시장접근 개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	141
표 4-11. 시장접근 제조업 관세자유화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	142
표 4-12. 시장접근 농업 관세자유화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	143
표 4-13. 시장접근 수출세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	144
표 4-14. 투자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	146
표 4-15. 지식재산권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 .....	148
표 4-16. 경쟁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 .....	151
표 4-17. 표준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 .....	153
표 4-18. 무역구제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	155
표 5-1. 구성요소별 교역 영향 요약 .....	162
표 5-2. 주요국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선정기준 비교 .....	164



## 그림 차례

그림 2-1.	시기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수 비교 .....	40
그림 2-2.	경제 수준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수 비교 .....	44
그림 2-3.	지역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비교 .....	49
그림 2-4.	한국의 자유무역협정별 구성요소의 수 .....	59
그림 4-1.	역내 수입자유화 비중과 관세자유화 간의 상관관계 (발효시점 vs. 이행종료) .....	99
그림 4-2.	역내 수입자유화 비중과 관세자유화 간의 상관관계 (비농산물) .....	100
그림 4-3.	역내 수입자유화 비중과 관세자유화 간의 상관관계(농산물) ..	100
그림 4-4.	세부 서비스 분야 포함 비중과 GATS+ 조항의 포함 여부 ..	103
그림 4-5.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투자챕터 유형별 비중 .....	105
그림 4-6.	지식재산권 유형별 자유무역협정 포함 비중 .....	109
그림 4-7.	공공조달 포함 수준에 따른 유형 .....	112
그림 4-8.	GPA 가입 여부에 따른 공공조달 수준 .....	113
그림 4-9.	시기별 자유무역협정의 경쟁 조항/챕터 포함 비중 .....	116
그림 4-10.	경쟁 관련 조항의 자유무역협정 포함 비중 .....	117
그림 4-11.	자유무역협정 분야별로 포함된 경쟁 관련 조항 .....	118
그림 4-12.	시기별 자유무역협정의 TBT 조항 포함 여부 .....	121
그림 4-13.	자유무역협정에서의 SPS 조항의 포함 형태 (1958~2014년) .....	123
그림 4-14.	1995년 이전/이후의 SPS 조항의 포함 방식 비교 .....	123



## 부록 표 차례

부표 1-1.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시장접근)	178
부표 1-2.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투자)	178
부표 1-3.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지식재산권)	178
부표 1-4.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경쟁)	179
부표 1-5.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표준)	179
부표 1-6.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무역구제조치)	179
부표 1-7.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비교역이슈)	179
부표 1-8.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비교역이슈) (계속)	181
부표 2-1.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시장접근)	183
부표 2-2.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투자)	183
부표 2-3.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지식재산권)	183
부표 2-4.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경쟁)	183
부표 2-5.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표준)	184
부표 2-6.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무역구제조치)	184
부표 2-7.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비교역이슈)	184
부표 2-8.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비교역이슈) (계속)	186
부표 3-1.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시장접근)	188
부표 3-2.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투자)	188
부표 3-3.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지식재산권)	188
부표 3-4.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경쟁)	188
부표 3-5.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표준)	189
부표 3-6.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무역구제조치)	189
부표 3-7.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비교역이슈)	189
부표 3-8.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비교역이슈) (계속)	191

# 제1장



# 서론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2. 연구의 목적, 차별성 및 구성



#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 가.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sup>1)</sup>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다자 통상체제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서 국제통상체제의 기본 원칙과 규정을 제공하는 한편,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WTO의 설립목표는 다자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이며, 기본 원칙은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보장, 투명성이다.

WTO가 국제무역 확대를 위해 다자 차원에서 균등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자유무역협정은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혜무역체제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간에 추가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목표로 한다. 즉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협정세율(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을 적용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WTO 협정관세 및 수입제한을 유지한다. 자유무역협정의 또 다른 차별점은 민감 분야를 다루는 방식이다. 다양한 경제·정치적 배경을 가진 회원국으로 구성된 WTO에서는 환경, 노동, 빈곤, 개발 등 다양한 이슈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추세이지만,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결국의 민감 분야를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단계별 적용 방안을 도입하는 등 당사국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들은 WTO의 원칙과 의무 내용을 준용하여 구성되고 규제 수준도 WTO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WTO 협정 사항을 재확인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진화되면서 자유무역협정에 WTO+ 규정이 도입되기도 하고 별도의 예외

---

1) 본 연구에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는 FTA(Free Trade Agreement)뿐만 아니라 CU(Customs Union)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개념임.

조항이 신설되어 자유무역협정과 WTO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간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의 기본적 기준은 WTO TRIPs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지재산 분야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WTO보다 높은 기준(예: 보호관점에서 50~70년간 저작권 보호를 규정)을 채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부 국가들은 WTO 범위 이상의 규정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채널을 활용한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에 대한 국가별 규제 수준은 점차 벌어져 국가간 규제의 불일치 문제(divergence)가 발생하고, 이는 “One Rule for All”의 원칙을 추구하는 WTO 정신에 위배된다<sup>2)</sup>. 자유무역협정은 WTO의 궁극적인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접근 관점에서 세계무역의 활성화 및 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은 다자무역체제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다자시스템 무용론 등과 같이 다자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향후 상당 기간 동안 WTO와 자유무역협정은 대립과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sup>3)</sup> 세계 무역시스템이 다자주의와 양자주의 간 균형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간 조화(Coherence)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WTO에서는 2008년 ‘지역주의의 다자주의화(Multilateralizing Regionalism)’를 제시한 바 있다.<sup>4)</sup>

---

2) Acharya(2016), p. 11.

3) 박성훈 외(2017), p. 51.

4) WTO(2008).

표 1-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및 특징

구분	GATT(1948~94)	WTO(1995~현재)	자유무역협정 확산(1995~현재)
목표 및 방법	국제무역 확대를 목표로 다자간 관세 인하	국제무역 확대를 목표로 다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WTO 체제에 기반함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기본 원칙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의 예외 허용 상호주의 도입, 민감 분야 인정 (민감 품목 관세양허 대상 제외, 협정문에 미포함 등)
범위	제조업	제조업,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 환경, 노동 등으로 확대	제조업,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등 포함 환경, 노동 등 각국의 민감 분야 제외
특징	협정체제로 운영 기구나 조직 없음 다자통상체제 확립에 기여	국제기구 존재 분쟁해결절차의 정치화 다자통상체제 확립	협정 당사국간 협의로 이루어짐
참여국	선진국 중심으로 참여	신흥시장국가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	협정 당사국

자료: 저자 작성.

## 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원인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이 급속하게 확산된 원인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다자통상체제를 적극 지지하면서 국제통상질서를 선도하고 있던 미국이 지역주의로 통상정책을 선회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5년 이스라엘과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1989년에는 캐나다와, 1994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는 등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미국의 무역정책 방향 전환은 다른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 참여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유럽과 미국의 지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점차 지역

주의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sup>5)</sup> 오랫동안 다자통상체제를 지지해왔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은 더욱 확산되었다.

둘째로 WTO 확대에 따른 회원국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WTO의 비효율성 증대 때문이다. WTO는 경제발전 정도, 대외개방 수준 측면에서 다양한 정치경제적 배경을 가진 회원국들로 구성되면서 복잡성이 증대되고, 국가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WTO 규정의 일괄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다자체제 운영이 어려워졌다. 의사결정 측면에서도 회원국간 합의 도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성과 도출에도 실패하는 등 비효율성이 증대되었다.<sup>6)</sup> 이에 WTO 체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의 변화요소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었고, 다자체제의 대안으로서 각국은 협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협상 결과를 단시간에 도출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주체가 기업 단위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무역활동의 주체 역할을 하였으나 세계화의 심화로 기업들이 경제주체가 되면서 국경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었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심화로 생성된 다국적기업들의 증가로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기업은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철폐가 직접적이고 신속한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배타적 호혜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한다. 다자적 접근을 통한 무역자유화보다 이윤극대화 측면이나 민감 분야의 반영, 관심 분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원인은 통상지형 변화와 선진국들의 지역주의로의 정책 방향 선회, WTO 확대에 따른 복잡성과 비효율성 증대, 다자시스템의 성과 부진, 무역패턴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무역 및 비관세장벽의 중요

---

5) 이승주(2010), p. 141.

6) WTO 의사결정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① 과반수 표결방식 ② 압도적 다수결 방식 ③ 가변기하적 의사결정(variable geometry) ④ 의미 있는 다수(critical mass) 방식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다(안덕근 2012, pp. 30~33).

성 증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은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은 역외국으로서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동참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된 것이다.

## 다.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과정

자유무역협정은 양적인 증대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진화해왔다. 자유무역협정이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범위는 광범위해지고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조항들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은 전통적인 이슈인 관세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TBT/SPS, 분쟁해결, 경쟁, 노동, 환경, 디지털 무역 등 광범위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규모와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 체결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는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 국가들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대부분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 발전이 늦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국가들은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미온적이다. 2018년 5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발효 중 기준) 287개 자유무역협정 중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은 144건, 상품만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은 142건이며, 서비스만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은 1건에 불과하다.<sup>7)</sup>

서비스 산업은 세부 산업별로 특성이 매우 이질적이고 국가별로 발전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일된 원칙이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제조업에 적용되었던 규정이 더 이상 작동

---

7)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Information System(RTA-IS)(검색일: 2018. 5. 18).

하지 않게 되어 다양한 국가간 통상마찰을 조율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개도국들의 무역협정 참여 증가도 자유무역협정의 심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선진국-개도국(North-South)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증가하면서 개도국-개도국(South-South) 간 자유무역협정도 가속화되었으며, 개도국들의 무역협정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선진국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 수준과 산업 특성을 가진 국가들이 국제무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노동, 환경 등 개도국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자유무역협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포함되고 규제 수준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통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규범들이 생성되었다. 무역협정의 증가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복잡해짐에 따라 무역원활화, 무역비용 감소를 위한 비관세장벽의 완화, 규제조화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산업고도로 디지털 무역, 지적권, TBT 부문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빈곤 퇴치(poverty alleviation), 지역개발(rural development), 관광(tourism) 반부패, 위생, 안보, 에너지 이슈까지 다루게 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포함하는 정책 분야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새로이 등장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차원에서 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양자간 협정에서 정의하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은 포함 범위(Coverage)뿐 아니라 수준(Depth) 측면에서도 보다 심화되고 있다. 최근 WTO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무역 이슈들에 대해서도 협정문의 조항이 길어지고 다수의 부속서와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WTO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투자, 경쟁,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도 부속서, 상호주의 조항, 각주 등을 활용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 2. 연구의 목적, 차별성 및 구성

### 가. 연구의 목적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04년 4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최근 콜롬비아와의 협정(2016년 7월)까지 발효하면서 현재 53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중미 5개국<sup>8)</sup>과의 자유무역협정도 타결하였다. 아울러 한·중·일 FTA, 한-이스라엘 FTA, 한-에콰도르 SECA, RCEP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그 성과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됨에 따라 관세는 상당 부분 낮춰진 반면 WTO 등을 통해 통제되기 어렵고 정량화하기 어려운 비관세조치가 세계 교역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이외에도 다양한 조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협정 당사국은 이들 비관세조치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들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는 주로 관세 감축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와 협정 체결 여부에 따른 효과에 집중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구축된 Worldbank(2017)의 DB를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심화되어왔는지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8)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연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여부 또는 관세 하락의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의 수준과 그 개별 구성요소가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Worldbank(2017)의 DB 방식을 준용하여 최근 발표된 한국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구축함으로써 후속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Worldbank(2017)의 자료에는 한-호주 FTA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한-콜롬비아 FTA의 협정문을 토대로 자료를 추가하였다.

둘째, 자유무역협정 체결 여부가 아닌 포함 범위와 수준을 변수화하여 그 영향을 다양한 모형 설정을 통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분석 자료가 가용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자료를 사용한 분석과 중국의 WTO 가입 시점 이후인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발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 여부에 따른 영향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사국들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영향도 별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접근 이외의 구성요소들이 양국간 교역에 발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구성요소에 따라서는 협상 논의 또는 협상 단계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태적 영향도 검토하였다.

셋째, 자유무역협정 개별 구성요소가 상품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그동안 특정 구성요소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했으나, 모든 구성요소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개별 구성요소의 영향 자체보다는 자유무역협정의 포함 범위나 수준을 변수화하는 데 구성요소를 이용하고 있다. 모든 구성

요소를 동시에 모형에 포함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구성요소들을 우선 식별한 후, 여타 상위 구성요소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각 상위 구성요소의 세부 요소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 다. 연구의 구성

제1장에서는 국제통상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왜 WTO 체제하에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었고 그 내용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Worldbank(2017)의 DB를 이용하여 전 세계 및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구성요소 자료를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의 포함 범위와 수준을 변수화하여 다양한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여부보다는 그 구성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개별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기 위하여 Worldbank(2017)의 DB에서 52개로 분류된 세부 구성요소를 그 특성에 따라 9개의 상위 구성요소로 재분류하여 이들 상위 구성요소의 개념 및 동향, 특징을 살펴보고 상위 구성요소와 주요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제2장



#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현황

1. 구성요소의 분류 및 주요 내용
2.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4. 소결



# 1. 구성요소의 분류 및 주요 내용

1958년 EC Treaty 발효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FTA는 급격히 확산되어왔으나 시기에 따라 협정의 주된 관심 대상은 달랐다. 1990년대 초반에 발효된 FTA만 하더라도 관세자유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비관세장벽 관련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Horn, Mavroidis, and Sapir(2010)와 WTO(2011)에 따르면 최근에 발효되는 무역협정은 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경쟁정책 등과 같은 많은 규제적 이슈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FTA의 교역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단 FTA의 발효 여부뿐만 아니라 FTA를 구성하는 요소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FTA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Worldbank(2017)의 DB를 이용한다.<sup>9)</sup> 이 DB는 2015년 12월부로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FTA의 협정 내용을 52개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각 협정문 포함 여부(coverage) 및 분쟁절차와 같은 법적구속력(legal enforceability)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 FTA의 실질적 자유화 수준(depth)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52개 구성요소는 현재 WTO의 권한(mandate)하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14개 분야(WTO+)와 WTO의 권한 밖에 있는 38개 분야(WTO-X)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WTO+ 요소로는 제조업 및 농업의 관세자유화를 비롯하여 통관, 수출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Agreement on Trade

---

9) WTO에서 physical RTA 건수를 계산하는 방식과 달리 Worldbank(2017)의 DB는 추가가입 협정과 EU의 확대 협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연도별, 지역별, 국가별 FTA 발효 건수는 WTO RTA DB와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Worldbank(2017)의 DB는 협정의 당사자가 복수 국가일 경우 가능한 국가조합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장에서는 국가 기준이 아닌 261건의 협정을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Worldbank(2017) DB(검색일: 2018. 3. 2).

-Related Investment Measure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등이 있고, WTO-X에는 반부패, 경쟁정책에서부터 투자, 환경, 노동, 데이터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포함된다.

상기 구성요소들은 연구자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분류된 바 있다. 예를 들어 Baldwin(2008)은 WTO+ 분야로 분류되는 14개 요소와 WTO-X 분야 중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 지식재산권의 4개 요소를 시장접근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본적 규정으로 보았다. Damuri(2012)는 이러한 18개 요소를 FTA의 핵심 규정으로 지목하면서 이를 관세/비관세 관련 국경 조항(border provisions)과 상대국 보호/시장접근 관련 비국경 조항(behind border provisions)으로 범주화하여 FTA의 자유화 수준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관세 관련 국경 조항은 제조업 및 농업의 관세자유화,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TRIMs, TRIPs이며 비관세 조항은 통관, 수출세, SPS, TBT, 자본이동이다. 상대국 보호 관련 비국경 조항은 국영기업, 국가보조, 경쟁정책, 투자, 지식재산권이고, 시장접근 관련 조항에는 공공조달과 GATS가 포함된다. 그리고 관세 관련 국경 조항만 포함하고 있는 협정을 가장 낮은 수준의 FTA로, 모든 국경 및 비국경 조항을 포함한 협정을 가장 높은 수준의 FTA로 보았다. 더불어 Damuri(2012)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제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된 국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다.

Hofmann, Osnago, and Ruta(2017) 역시 국경(border)을 기준으로 18개의 핵심 구성요소를 세분류하였다. 즉 제조업 및 농업의 관세자유화,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 TRIMs, TRIPs, 통관, 수출세, SPS와 TBT, 자본이동은 국경을 넘어야만 의미를 가지는 요소인 반면, 국영기업, 국가보조,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투자, 공공조달과 GATS는 국경과 관계없이 보다 넓은 관점에서 FTA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구성요소가 FTA를 체결한 당

사국간의 특혜인지 혹은 비차별적 적용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는데 관세자유화, 공공조달, 수출세, 반덤핑과 상계관세조치는 특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통관, SPS, TBT, GATS 등 특혜 규정으로 언급된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구성요소는 모두 MFN 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1.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구성요소	주요 내용
WTO+	
제조업 관세자유화	제조업의 관세자유화, 비관세조치의 제거
농업 관세자유화	농업의 관세자유화, 비관세조치의 제거
통관	새로운 법률과 규제에 대한 온라인상 공시, 무역원활화
수출세	수출세 철폐(예: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수출품에 대한 세금 또는 기타 부과금 철폐)
SPS	WTO SPS 협정하에 권리와 의무 확인, SPS 조치의 조화
TBT	WTO TBT 협정하에 권리와 의무 확인, 규제의 조화, 협정에 대한 상호인식
국영기업	GATT 제17조 국영기업의 설립 및 유지 규정 준수, 생산 및 마케팅 조건의 비차별성
반덤핑조치	WTO 협정(GATT 제6조)하에서 반덤핑 권리와 의무 준수
상계관세 조치	WTO 협정(GATT 제6조)하에서 상계관세조치의 권리와 의무 준수
국가보조	반경쟁적 행위 평가, 국가보조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 등
공공조달	점진적 자유화, 내국민대우(또는) 비차별적 원칙, 온라인상으로 법률과 규제 공시, 공공조달체계 구체적으로 명시
TRIMs	현지생산 요건과 FDI에 대한 수출성과 관련 규정, 상품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만 적용
GATS	서비스의 자유화
TRIPs	기준의 조화, 집행,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IPIC 조약과 같은 국제조약 비준

표 2-1. 계속

구성요소	주요 내용
WTO-X	
반부패	국제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경쟁정책	비경쟁적 기업행위에 대한 조치, 경쟁법의 조화, 독립적인 경쟁정책 당국의 설립 및 유지를 포함한 일반적 경쟁정책 규정
환경법	환경기준 향상, 국내환경법 집행,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 마련, 법률 및 규제에 대한 공시
지식재산권	TRIPs 협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국제조약 가입
투자	정보 교환, 법률적 체계 발전, 절차의 조화 및 단순화, 내국민대우, 분쟁해결 절차 수립
노동시장규제	국내 노동시장규제, 국제노동기구(ILO)의 의무 확인, 이행
자본이동	자본이동의 자유화, 새로운 규제 금지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법의 조화, 정보 및 전문가 교환, 훈련
데이터 보호	정보 및 전문가 교환, 협업
농업 기술지원	농업 현대화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정보 교환
입법절차 통일	국내 입법절차에 국제 입법절차 적용
시정각	산업 촉진, 협업 장려
시민보호	통일된 규칙 이행
혁신정책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 기술이전 촉진
문화협력	공동 이니셔티브와 지역문화 장려
경제정책 대화	아이디어 및 의견 교환, 공동연구
교육훈련	일반적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치
에너지	정보 교환, 기술이전, 공동연구
금융지원	공여 및 금융지원 행정에 대한 지침 마련
보건	질병 모니터링, 건강정보체계 개선, 정보 교환
인권	인권 존중
불법이민	불법이민의 금지 및 통제
불법약물	약물중독 처치 및 치료, 약물 소비 금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약물 공급 축소, 정보 교환
산업협력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 신용거래 촉진 및 접근성 강화
정보사회	정보 교환, 신기술 확산, 훈련, 협력
광업	정보 및 경험 교환, 공동 이니셔티브 발전
자금세탁	기준의 조화, 기술적·행정적 지원
원자력 안전	법률 및 규제 개선, 방사성 물질 이동에 대한 감시
정치적 대화	국제적 이슈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 수용

표 2-1. 계속

구성요소	주요 내용
WTO-X	
공공행정	기술지원, 정보 교환, 공동 프로젝트, 훈련
지역협력	지역적 협력 촉진, 기술지원 프로그램
공동연구	공동연구 프로젝트, 연구자 교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중소기업	기술지원, 금융접근 촉진
사회 문제	사회 안전시스템의 협력과 근무 여건의 비차별성
통계	통계적 방법 통일 및(또는) 개선, 훈련
조세	재정시스템 개혁에 대한 지원
테러리즘	정보와 경험 교환, 공동연구
비자와 인력이동	정보 교환, 관련 법률 마련, 훈련, 인력의 국제이동

자료: Hofmann, Osnago, and Ruta(2017), pp. 27-29.

1958년부터 2015년까지 WTO에 통보된 FTA 중에서 [표 2-1]의 구성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협정은 2014년 발효된 EU-조지아 FTA로 TRIMs, 혁신정책, 공공행정, 중소기업을 제외한 48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에 따르면 뒤이어 같은 해에 발효된 EU-몰도바 FTA가 47개, 2013년에 발효된 EU-중미 FTA는 45개, 2006년의 EU-알바니아 FTA가 42개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부연하면 구성요소 포함 수준이 높은 FTA의 한쪽 당사국은 모두 EU였고, EU와 FTA를 체결한 상대국에 따라 구성요소의 포함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단 TRIMs는 위의 모든 FTA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2-2.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포함 수준이 높은 협정 현황

협정명	발효 연도	전체 수	WTO+	WTO-X	비포함 구성요소
EU-조지아	2014	48	13	35	TRIMs, 혁신정책, 공공행정, 중소기업
EU-몰도바	2014	47	12	35	국영기업, TRIMs, 혁신정책, 인권, 중소기업

표 2-2. 계속

협정명	발효 연도	전체 수	WTO+	WTO-X	비포함 구성요소
EU-중미	2013	45	13	32	소비자보호, 경제정책대화, 조세, 비자와 인력이동 등
EU-알바니아	2006	42	11	31	SPS, GATS, 반부패, 노동시장규제, 원자력 안전 등
EU-마케도니아	2001	41	12	29	GATS, 반부패, 노동시장규제, 데이터보호, 보건 등
EU-크로아티아	2002	41	12	29	GATS, 반부패, 노동시장규제, 데이터보호, 광업 등
EU-칠레	2003	40	13	27	반부패, 노동시장규제, 금융지원, 자금세탁, 조세 등
EU-멕시코	2000	38	11	27	국가보조, 반부패, 시민보호, 불법이민, 테러리즘 등

자료: Worldbank(2017) DB(검색일: 2019. 3. 2)를 토대로 저자 작성.

참고로 분석 대상인 261건의 FTA에서 18개 핵심 구성요소 포함 현황을 살펴보면, 192건의 FTA(전체 FTA의 73.6%)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경 및 비국경 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Damuri(2012)에 따를 경우 대부분의 FTA가 높은 자유화 수준을 보였다. 반대로 관세 관련 국경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어 자유화 수준이 가장 낮았던 3건의 협정은 ASEAN 자유무역협정(1992년 발효), PAFTA(1998), 인도-부탄 FTA(2006)였다.<sup>10)</sup> 그리고 관세 및 비관세 관련 국경 조항으로만 구성된 협정이 6건, 비국경 조항 중 상대국 보호와 시장접근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협정이 58건이다.<sup>11)</sup>

10) PAFTA(Pan-Arab Free Trade Area)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체결된 중동국가와 아프리카국가 간 협정으로 참여국은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UAE, 튀니지, 이집트, 예멘이다.

11) 국경 조항으로만 구성된 6건의 협정은 EU-안도라(1991), 페로제도-스위스(1995),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1997), EU-산마리노(2002), SAFTA(2006), 터키-몰리셔스(2013)였다. 그리고 시기에 상관없이 CIS 국가가 포함된 협정에서 비국경 조항 중 상대국 보호와 시장접근 요소를 동시에 다루지 않은 협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 가. 전체 및 시기별 특징

[표 2-3]에서 1958~2015년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전 세계 FTA의 구성요소 현황을 보면 WTO-X 요소에 비해 WTO+ 요소의 협정 포함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법적구속력도 강력한 편이다. 제조업의 관세자유화는 모든 협정문에서 다루고 있고 98.5%의 협정에서 분쟁절차를 포함하는 법적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 관세자유화, 통관, 수출세의 포함 비중도 높은 편이며 이러한 규정은 법적구속력도 크다.<sup>12)</sup> 반면 TRIMs는 WTO+로 분류되는 요소 중 34.1%의 협정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항목으로 포함 비중은 가장 낮았으나 일단 협정문에 포함시킬 경우 대부분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WTO-X 요소 가운데 협정 포함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쟁정책으로 80%에 육박하며 다만 분쟁절차를 포함하지 않는 약한 수준의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거나 법적구속력이 없는 협정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WTO-X 요소 중에서 협정 포함 비중이 높은 분야는 투자(57.5%), 자본이동(56.7%), 지식재산권(49.8%), 환경법(42.5%), 정보사회(34.1%) 순이며 특히 자본이동은 FTA 협정문에서 강한 법적구속력을 지니는 요소로 파악된다. 반면 정치적 대화, 정보사회, 혁신정책, 지역협력 등은 법적구속력이 거의 없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협정당사국간 발전적 관계 유지를 위해 상호 장려 규정으로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12) 농업 관세자유화의 경우 1992년 발효된 ASEAN FTA 1건을 제외한 260건의 FTA에 포함되는 요소이다.

표 2-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협정별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현황

(단위: 건수, %)

구성요소	협정 포함여부		분쟁절차 포함한 법적구속력 부여		분쟁절차 미포함 법적구속력 부여		법적구속력 부재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제조업 관세자유화	261	100	257	98.5	1	0.4	3	1.1
농업 관세자유화	260	99.6	256	98.5	1	0.4	3	1.2
통관	244	93.5	222	91.0	1	0.4	21	8.6
수출세	215	82.4	210	97.7	0	0.0	5	2.3
경쟁정책	206	78.9	110	53.4	72	35.0	24	11.7
반덤핑조치	202	77.4	155	76.7	30	14.9	17	8.4
TBT	191	73.2	133	69.6	14	7.3	44	23.0
SPS	181	69.3	108	59.7	34	18.8	39	21.5
국가보조	178	68.2	146	82.0	13	7.3	19	10.7
GATS	178	68.2	136	76.4	2	1.1	40	22.5
상계관세조치	172	65.9	127	73.8	31	18.0	14	8.1
TRIPs	157	60.2	149	94.9	3	1.9	5	3.2
공공조달	156	59.8	106	67.9	12	7.7	38	24.4
투자	150	57.5	104	69.3	2	1.3	44	29.3
자본이동	148	56.7	138	93.2	0	0.0	10	6.8
국영기업	140	53.6	116	82.9	16	11.4	8	5.7
지식재산권	130	49.8	100	76.9	8	6.2	22	16.9
환경법	111	42.5	29	26.1	25	22.5	57	51.4
TRIMs	89	34.1	85	95.5	0	0.0	4	4.5
정보사회	89	34.1	3	3.4	7	7.9	79	88.8
비자와 인력이동	88	33.7	31	35.2	41	46.6	16	18.2
농업 기술지원	84	32.2	22	26.2	10	11.9	52	61.9
지역협력	81	31.0	5	6.2	6	7.4	70	86.4
노동시장규제	70	26.8	31	44.3	19	27.1	20	28.6
공동연구	66	25.3	14	21.2	9	13.6	43	65.2
경제정책 대화	63	24.1	10	15.9	10	15.9	43	68.3
교육훈련	57	21.8	12	21.1	6	10.5	39	68.4
산업협력	56	21.5	14	25.0	7	12.5	35	62.5
에너지	55	21.1	22	40.0	5	9.1	28	50.9
공공행정	51	19.5	9	17.6	1	2.0	41	80.4

표 2-3. 계속

구성요소	협정 포함여부		분쟁절차 포함한 법적구속력 부여		분쟁절차 미포함 법적구속력 부여		법적구속력 부재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통계	50	19.2	27	54.0	1	2.0	22	44.0
소비자보호	44	16.9	11	25.0	10	22.7	23	52.3
문화협력	43	16.5	10	23.3	7	16.3	26	60.5
중소기업	41	15.7	5	12.2	11	26.8	25	61.0
사회 문제	41	15.7	19	46.3	2	4.9	20	48.8
정치적 대화	40	15.3	0	0.0	5	12.5	35	87.5
금융지원	38	14.6	12	31.6	1	2.6	25	65.8
조세	36	13.8	13	36.1	2	5.6	21	58.3
반부패	33	12.6	13	39.4	2	6.1	18	54.5
데이터 보호	32	12.3	10	31.3	6	18.8	16	50.0
입법절차 통일	32	12.3	13	40.6	1	3.1	18	56.3
보건	29	11.1	4	13.8	12	41.4	13	44.8
혁신정책	28	10.7	1	3.6	6	21.4	21	75.0
불법약물	24	9.2	4	16.7	1	4.2	19	79.2
사청각	23	8.8	4	17.4	5	21.7	14	60.9
인권	23	8.8	1	4.3	1	4.3	21	91.3
광업	20	7.7	8	40.0	3	15.0	9	45.0
불법이민	19	7.3	13	68.4	0	0.0	6	31.6
자금세탁	17	6.5	2	11.8	1	5.9	14	82.4
원자력 안전	14	5.4	6	42.9	0	0.0	8	57.1
테러리즘	14	5.4	4	28.6	1	7.1	9	64.3
시민보호	4	1.5	1	25.0	1	25.0	2	50.0

주: 1) 협정 포함비중이 높은 구성요소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WTO+ 요소는 음영으로 표시함.

2) 법적구속력 관련 비중은 구성요소별 협정 포함 건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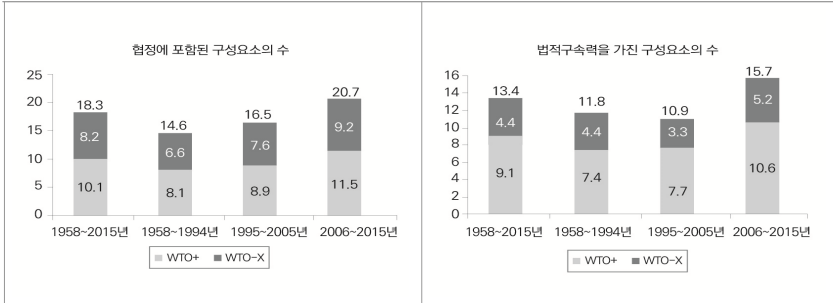
자료: Worldbank(2017) DB(검색일: 2018. 3. 2); Hofmann, Osnago, and Ruta(2017)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1]은 분석기간을 전체, 1958~94년, 1995~2005년, 2006~15년으로 구분하여 협정에 포함되고 법적구속력을 가진 평균 구성요소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다. 1995년 이전에 발효된 FTA는 전체 52개 구성요소 중 평균 14.6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WTO+ 항목이 8.1개, WTO-X 항목이 6.6개였다. 1995~2005년 기간에 FTA에 포함된 평균 구성요소의 수가 16.5개로 증가하였고 2006~15년에는 20.7개로 더욱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각 시기에 WTO+ 항목과 WTO-X 항목이 동시에 늘어났다. 즉 시간이 갈수록 협정에서 포함하는 구성요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WTO+와 WTO-X로 분류되는 전체 구성요소의 수를 고려할 때 WTO-X 요소가 협정에 포함되는 속도는 더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기별 협정의 평균 구성요소에서 법적구속력을 가진 요소의 개수를 살펴보면 각각 11.8개, 10.9개, 15.7개로 2005년까지는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후 차츰 늘어났다. 1995~2005년 기간에 개도국간의 FTA가 크게 증가하면서 협정문에 다양한 요소를 포함시키더라도 분쟁절차를 포함하는 등의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기보다는 장려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FTA가 확산되면서 법적구속력을 가진 요소의 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WTO-X 요소 중에서 법적구속력을 가지면서 협정에 포함되는 요소의 개수는 1995년 이전에 평균 4.4개에서 1995~2005년 기간에 3.3개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2006년 이후에는 평균 5.2개로 증가하였는데 분쟁절차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법적구속력을 가진 요소의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림 2-1. 시기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수 비교

(단위: 개)



주: 여기서 법적구속력은 분쟁절차 포함 여부를 불문함.  
 자료: Worldbank(2017) DB(검색일: 2018. 3. 2)를 토대로 저자 작성.

앞서 시기별로 협정에 포함된 평균 구성요소의 수를 비교해 보았는데 [표 2-4]에서는 시기별 협정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현황을 각 구성요소별로 정리하였다. 제조업의 관세자유화는 모든 시기의 협정에 포함된 요소이며, 농업의 관세자유화와 통관 역시 각 시기에 대부분 포함된 요소였고 이 세 가지 요소는 법적구속력도 강력하였다.

1995년 이전에 비해 최근 협정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요소는 SPS와 TBT이다. 두 요소의 경우 1995년 이전에는 해당 기간에 발효된 FTA의 30~40%에만 포함되었으나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2006~15년에는 90% 내외의 협정문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세자유화 요소에 비해 법적구속력의 수준은 다소 낮은 편으로 2006~15년에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보면 법적구속력은 있으되 분쟁절차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선언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 SPS는 37.1%, TBT는 21.8%가량이었다. 그 밖에 시간이 지나면서 협정에 포함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요소로 TRIPs, 투자, GATS 등을 들 수 있다. TRIPs의 경우 대부분의 협정에서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투자와 GATS에 대해서도 분쟁절차를 포함하는 협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요소 외에 1995~2005년 기간에 협정에 포함되는 비중이 높아진 요소로는 WTO+ 항목인 공공조달, 국영기업과 WTO-X 항목의 지식재산권 등이 있는데 강력한 법적구속력 부여비중은 국영기업이 85.4%로 가장 높았다. 2006~15년 기간에는 WTO+ 항목 중에서 상계관세조치와 WTO-X 항목인 노동시장규제, 정보사회, 환경법 등의 포함비중이 전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WTO-X 요소들은 각 협정에서 법적구속력까지 명문화하기보다는 대부분 당사국간의 장려와 협력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협정문에서 제외되고 있는 요소들도 존재하는데, 1995년 이전에 발효된 FTA과 비교하면 사회 문제(Social Matters), 주로 관세동맹에서 언급되는 입법절차 통일, 통계적 수단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통계 요소와 산업 및 문화협력, 원자력 안전 등의 요소는 최근 협정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표 2-4. 시기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현황

(단위: %)

구성요소	협정 포함 비중			분쟁절차 포함 법적구속력 부여 비중			분쟁절차 미포함 법적구속력 부여 비중		
	1958~ 1994	1995~ 2005	2006~ 2015	1958~ 1994	1995~ 2005	2006~ 2015	1958~ 1994	1995~ 2005	2006~ 2015
WTO+									
제조업 관세자유화	100	100	100	100	97.9	98.4	0	0	0.8
농업 관세자유화	97.4	100	100	100	97.9	98.4	0	0	0.8
통관	89.5	89.4	97.7	88.2	82.1	97.6	0	1.2	0
수출세	86.8	76.6	85.3	97.0	98.6	97.3	0	0	0
SPS	34.2	55.3	89.9	92.3	44.2	62.9	0	15.4	22.4
TBT	42.1	59.6	92.2	62.5	53.6	78.2	0	7.1	8.4
국영기업	34.2	51.1	61.2	92.3	85.4	79.7	0	12.5	12.7

표 2-4. 계속

구성요소	협정 포함 비중			분쟁절차 포함 법적구속력 부여 비중			분쟁절차 미포함 법적구속력 부여 비중		
	1958~ 1994	1995~ 2005	2006~ 2015	1958~ 1994	1995~ 2005	2006~ 2015	1958~ 1994	1995~ 2005	2006~ 2015
WTO+									
반덤핑조치	65.8	68.1	87.6	84.0	85.9	69.9	0	6.3	23.0
상계관세조치	47.4	50.0	82.9	83.3	83.0	68.2	0	8.5	25.2
국가보조	78.9	55.3	74.4	86.7	82.7	80.2	10.0	5.8	7.3
공공조달	34.2	56.4	69.8	100	50.9	73.3	0	7.5	8.9
TRIMs	21.1	24.5	45.0	100	87.0	98.3	0	0	0
GATS	44.7	54.3	85.3	70.6	68.6	80.9	0	2.0	0.9
TRIPs	28.9	52.1	75.2	100	93.9	94.8	0	6.1	0
WTO-X									
반부패	0	4.3	22.5	-	0.0	44.8	-	0	6.9
경쟁정책	78.9	84.0	75.2	83.3	68.4	32.0	13.3	24.1	50.5
환경법	26.3	31.9	55.0	60.0	26.7	21.1	0	3.3	33.8
지식재산권	23.7	48.9	58.1	77.8	63.0	85.3	0	8.7	5.3
투자	28.9	45.7	74.4	54.5	62.8	74.0	9.1	0	1.0
노동시장규제	18.4	11.7	40.3	85.7	72.7	32.7	0	0	36.5
자본이동	39.5	46.8	69.0	86.7	97.7	92.1	0	0	0
소비자보호	15.8	14.9	18.6	66.7	7.1	25.0	0	21.4	29.2
데이터 보호	2.6	10.6	16.3	100	20.0	33.3	0	30.0	14.3
농업 기술지원	34.2	29.8	33.3	38.5	14.3	30.2	0	3.6	20.9
입법절차 통일	21.1	17.0	6.2	62.5	31.3	37.5	0	0	12.5
시청각	5.3	9.6	9.3	100	11.1	8.3	0	0	41.7
시민보호	2.6	0	2.3	100	-	0.0	0	-	33.3
혁신정책	0	1.1	20.9	-	0.0	3.7	-	0	22.2
문화협력	23.7	18.1	13.2	55.6	11.8	17.6	0	5.9	35.3
경제정책 대화	31.6	22.3	23.3	41.7	14.3	6.7	0	0	33.3
교육훈련	21.1	23.4	20.9	62.5	22.7	7.4	0	4.5	18.5
에너지	18.4	19.1	23.3	85.7	16.7	43.3	0	0	16.7
금융지원	18.4	14.9	13.2	42.9	28.6	29.4	0	0	5.9
보건	15.8	7.4	12.4	16.7	0.0	18.8	66.7	28.6	37.5

표 2-4. 계속

구성요소	협정 포함 비중			분쟁절차 포함 법적구속력 부여 비중			분쟁절차 미포함 법적구속력 부여 비중		
	1958~ 1994	1995~ 2005	2006~ 2015	1958~ 1994	1995~ 2005	2006~ 2015	1958~ 1994	1995~ 2005	2006~ 2015
WTO-X									
인권	0	16.0	6.2	-	6.7	0.0	-	0	12.5
불법이민	10.5	8.5	5.4	100	50.0	71.4	0	0	0
불법약물	2.6	12.8	8.5	0	8.3	27.3	0	0	9.1
산업협력	28.9	23.4	17.8	54.5	22.7	13.0	0	0	30.4
정보사회	10.5	24.5	48.1	25.0	4.3	1.6	0	0	11.3
광업	2.6	5.3	10.9	100	20.0	42.9	0	0	21.4
자금세탁	0	10.6	5.4	-	0.0	28.6	-	0	14.3
원자력 안전	13.2	5.3	3.1	60.0	40.0	25.0	0	0	0
정치적 대화	10.5	14.9	17.1	0	0.0	0.0	0	0	22.7
공공행정	7.9	16.0	25.6	33.3	26.7	12.1	0	0	3.0
지역협력	15.8	29.8	36.4	16.7	3.6	6.4	0	0	12.8
공동연구	28.9	23.4	25.6	45.5	22.7	12.1	0	9.1	21.2
중소기업	7.9	12.8	20.2	66.7	8.3	7.7	0	8.3	38.5
사회 문제	28.9	17.0	10.9	63.6	56.3	21.4	0	0	14.3
통계	21.1	34.0	7.8	87.5	56.3	20.0	0	0	10.0
조세	21.1	11.7	13.2	100	18.2	17.6	0	0	11.8
테러리즘	2.6	4.3	7.0	100	0.0	33.3	0	0	11.1
비자와 인력이동	15.8	27.7	43.4	100	23.1	33.9	0	38.5	55.4

주: 법적구속력 부여 비중은 요소가 포함된 협정 대비 법적구속력까지 포함된 협정의 비중임.  
 자료: Worldbank(2017) DB(검색일: 2018. 3. 2)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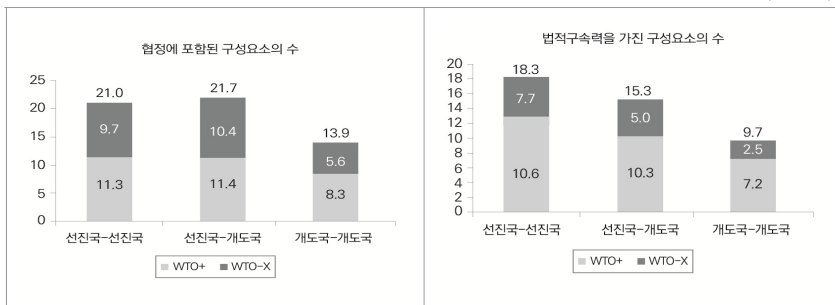
## 나. 경제 수준별 특징

[그림 2-2]는 선진국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개도국간의 FTA 협정문에 포함되고 법적구속력을 가진 평균 구성요소의 개수를 비교하고 있다. 1958~2015년 기간에 발효된 선진국간의 FTA는 총 44건으로 전체 52개 구성요소 중 평균

21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WTO+ 항목이 11.3개, WTO-X 항목이 9.7개였다. 같은 기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FTA는 107건이 발효되었는데, 이러한 협정에 포함된 구성요소는 평균 21.7개로 WTO+ 항목이 11.4개, WTO-X 항목이 10.4개였으며 선진국간 FTA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FTA가 15.3개인 반면 선진국간 FTA는 18.3개로 더 많았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의 주도하에 개도국과의 FTA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선진국-개도국 FTA 협정문에서 다루는 구성요소는 늘어났으며 그러한 구성요소에 부여된 법적구속력 수준은 선진국간 FTA에 미치지 못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개도국간 FTA는 110건이 발효되어 경제 수준별 FTA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협정에 포함된 구성요소는 평균 13.9개로 가장 적었다. 또한 법적구속력을 부여한 요소는 9.7개에 불과하였고 특히 WTO-X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요소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2. 경제 수준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수 비교

(단위: 개)



주: 여기서 법적구속력은 분쟁절차 포함 여부를 불문함.  
 자료: Worldbank(2017) DB(검색일: 2018. 3. 2)를 토대로 저자 작성.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조업 및 농업의 관세자유화는 거의 모든 협정에서 분쟁절차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FTA의 구성요소였다. 이러한 관

세자유화 요소를 제외하고 경제 수준별 FTA에 따라 포함 비중이 높았던 구성 요소는 [표 2-5]와 같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포함 비중이 높아져 최근 발효된 모든 선진국-선진국 FTA에서 언급된 요소는 SPS, 공공조달, GATS였는데 이러한 요소에 대하여 모든 협정이 법적구속력을 부과한 것은 아니었다. 그 밖에 TRIPs, 지식재산권, 투자의 포함 비중도 증가하였으며, 반덤핑은 1995년 이후의 협정에서, 정보사회 관련 내용은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롭게 등장한 요소였다. 수출세, 입법절차 통일, 사회 문제, 통계 관련 항목은 협정에 포함된다면 분쟁절차를 포함하는 강력한 법적구속력까지 부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새롭게 체결되는 FTA에서 언급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6~15년 기간에 발효된 선진국-개도국 FTA에서 통관은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채로 모두 포함되어 있고, SPS, TBT, GATS의 포함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환경법과 정보사회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도 많아지고 있는데 다만 환경법의 경우 분쟁절차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편이고 정보사회 관련 내용 역시 법적구속력은 거의 없는 요소인 것으로 확인된다. 1995년 이후 선진국-개도국 FTA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요소로는 데이터 보호, 경제정책 대화, 중소기업, 비자와 인력이동이 대표적이며 반덤핑, 산업협력, 원자력 안전에 대한 내용은 협정 포함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도국-개도국 FTA에서도 SPS와 TBT의 증가세가 뚜렷하며, 선진국간 FTA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요소로 포함되고 있는 반덤핑조치, TRIMs, TRIPs 등의 포함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비자와 인력이동 항목은 1995년 이후 협정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여 법적구속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개도국 FTA에 비해 분쟁절차를 포함하는 비중은 크게 낮은 편이었다. 개도국간 FTA에서 포함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요소로는 경쟁정책, 입법통일 절차, 경제정책 대화 등을 들 수 있다.

표 2-5. 경제 수준별·시기별 자유무역협정 주요 구성요소 및 법적구속력 현황

(단위: %)

경제 수준별 구분	구성요소		협정 포함 비중			법적구속력 부여 비중		
			1958~1994	1995~2005	2006~2015	1958~1994	1995~2005	2006~2015
선진국-선진국	SPS	WTO+	60.0	69.2	100	88.9	66.7	93.8
	TBT	WTO+	53.3	76.9	93.8	87.5	70	100
	공공조달	WTO+	60.0	76.9	100	100	70	93.8
	GATS	WTO+	60.0	69.2	100	88.9	88.9	93.8
	TRIPs	WTO+	53.3	69.2	87.5	100	100	92.9
	반부패	WTO-X	0	15.4	37.5	-	0	16.7
	지식재산권	WTO-X	33.3	61.5	81.3	80	75	84.6
	투자	WTO-X	33.3	46.2	87.5	80	100	78.6
	자본이동	WTO-X	53.3	69.2	87.5	100	100	100
	정보사회	WTO-X	0	0	37.5	-	-	16.7
	공공행정	WTO-X	6.7	15.4	37.5	100	50	16.7
	수출세	WTO+	93.3	84.6	81.3	100	100	100
	입법절차 통일	WTO-X	33.3	23.1	6.25	100	66.7	100
	사회 문제	WTO-X	46.7	30.8	12.5	100	100	100
	통계	WTO-X	26.7	15.4	6.25	100	100	100
선진국-개도국	통관	WTO+	75.0	97.1	100	100	94.1	98.5
	SPS	WTO+	25.0	65.7	86.8	100	52.2	83.1
	TBT	WTO+	50.0	77.1	89.7	50	44.4	82.0
	GATS	WTO+	25.0	71.4	89.7	100	72	85.2
	환경법	WTO-X	25.0	48.6	64.7	100	23.5	65.9
	데이터 보호	WTO-X	0	20.0	23.5	-	42.9	56.3
	경제정책 대화	WTO-X	0	20.0	23.5	-	0	37.5
	정보사회	WTO-X	25.0	45.7	50.0	0	6.3	20.6
	중소기업	WTO-X	0	20.0	26.5	-	14.3	55.6
	비자와 인력이동	WTO-X	0	22.9	38.2	-	62.5	88.5
	반덤핑조치	WTO-X	100	97.1	86.8	75	94.1	96.6
	산업협력	WTO-X	50.0	31.4	17.6	0	0	58.3
원자력 안전	WTO-X	25.0	8.6	2.9	0	0	0	

표 2-5. 계속

경제 수준별 구분	구성요소		협정 포함 비중			법적구속력 부여 비중		
			1958~1994	1995~2005	2006~2015	1958~1994	1995~2005	2006~2015
개도국-개도국	SPS	WTO+	15.8	43.5	91.1	100	65	85.4
	TBT	WTO+	31.6	41.3	95.6	33.3	78.9	88.4
	국영기업	WTO+	10.5	28.3	48.9	100	92.3	90.9
	반덤핑조치	WTO+	31.6	41.3	86.7	83.3	84.2	87.2
	공공조달	WTO+	10.5	30.4	53.3	100	78.6	75
	TRIMs	WTO+	10.5	19.6	31.1	100	77.8	92.9
	TRIPs	WTO+	5.3	26.1	62.2	100	100	89.3
	투자	WTO-X	15.8	23.9	57.8	33.3	63.6	80.8
	공공행정	WTO-X	5.3	13.0	28.9	0	16.7	15.4
	비자와 인력이동	WTO-X	0	23.9	44.4	-	72.7	85
	경쟁정책	WTO-X	84.2	80.4	62.2	93.8	83.8	64.3
	입법절차 통일	WTO-X	15.8	8.7	6.7	0	50	0
경제정책 대화	WTO-X	26.3	26.1	22.2	0	8.3	20	

주: 협정 포함 비중이 낮아지는 구성요소는 음영으로 처리함.  
 자료: Worldbank(2017) DB(검색일: 2018. 3. 2)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다. 지역별 특징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FTA를 체결하는 양당사국이 속한 지역에 따라 협정에 포함되고 법적구속력을 가진 평균 구성요소의 수는 다르다. 먼저 협정의 구성요소 수를 기준으로 보면 유럽-중미 간 협정이 평균 33.5개(WTO+ 항목 13개, WTO-X 항목 20.5개)로 가장 높은 자유화 수준을 나타낸다. 유럽-카리브 간 협정이란 2008년 발효된 EU-CARIFORUM FTA를 의미하며 27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였고, 유럽-남미 간 협정은 분석 기간 동안 6건이 발효되었는데 WTO+ 항목 12.5개, WTO-X 항목 13.5개로 평균 26개의 구성요소를 담고 있었다. 유럽 및 동아시아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협정에서 대체

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내 FTA에서는 특히 아프리카와 북미 지역내 협정에서 구성요소의 수가 많았다.<sup>13)</sup> CIS 지역에서 가장 많은 FTA가 발효되었으나 평균 구성요소는 8개로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법적구속력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위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분쟁 절차의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강제력이 있는 구성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협정은 북미와 동아시아 간의 협정(WTO+ 항목 12.5개, WTO-X 항목 9개)이었다.<sup>14)</sup> 뒤를 이어 북미간의 협정, 즉 NAFTA가 21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EU-CARIFORUM FTA(유럽-카리브), 미국-호주 FTA(북미-오세아니아)가 각각 20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이 포함된 협정에서 법적구속력이 부여된 구성요소가 많이 확인되나 예외적으로 유럽-북미와 유럽-오세아니아 협정의 경우 강제력이 있는 조항의 비중이 낮았다.<sup>15)</sup>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내 협정 4건과 PAFTA(중동-아프리카)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의 관세자유화를 중심으로 3개 미만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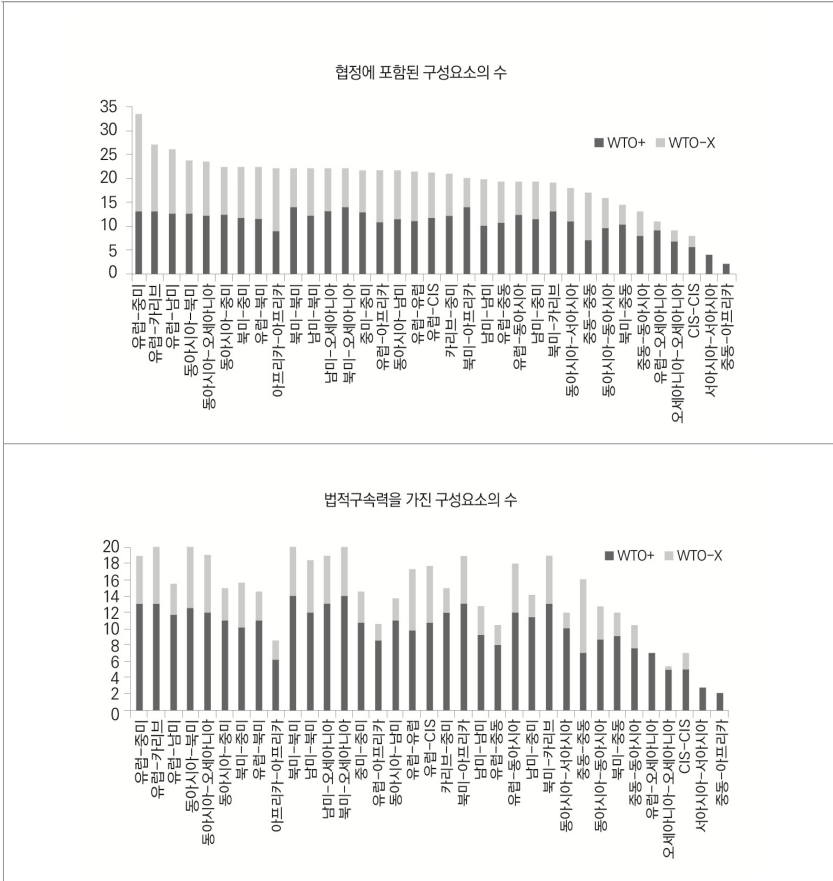
13) 아프리카 지역 내 협정은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등으로 대부분 관세동맹(CU) 형태이며, 북미 지역협정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해당된다.

14) 북미와 동아시아 간 협정은 총 4건으로 미국-싱가포르 FTA(2004), 일본-멕시코 FTA(2005), 한국-미국 FTA(2012), 캐나다-한국 FTA(2015)가 포함된다.

15) 유럽-북미 협정에 해당하는 EU-멕시코 FTA(2000)의 법적구속력 요소는 14개, EFTA-멕시코(2001) FTA가 15개, 캐나다-EFTA FTA(2009)는 11개였으며, 유럽-오세아니아 협정인 EU-파푸아뉴기니/피지(2009) FTA의 경우 7개 요소에 불과하였다.

그림 2-3. 지역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비교

(단위: 개)



주 1) 여기서 법적구속력은 분쟁절차의 포함 여부를 불문함.

2) 2개를 초과하는 지역간 협정(2인인 카리브, 중미, 남미 지역의 CARICOM(1973년 발효), 동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의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2006년 발효)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Worldbank(2017) DB(검색일: 2018. 3. 2)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6] ~ [표 2-8]은 1958년부터 2015년 사이에 통보된 FTA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절반 이상의 협정에 포함된 구성요소를 정리한 결과이다.<sup>16)17)</sup> 유럽 국가들이 90% 이상의 FTA에서 포함하는 조항은 반덤핑, 통관, 수출세였으며, WTO+ 항목 중에서 TRIMs를 제외한 모든 요소가 50% 이상의 협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경우 법적구속력까지 부여된 협정이 전체 유럽 협정의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분쟁절차까지 포함한 법적구속력의 비중은 60%대로 낮아진다는 점이 예외적이다. 유럽은 농업 기술지원에 대한 관심도 높는데 다만 법적구속력까지 부여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14개의 WTO+ 항목을 비롯하여 투자,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자본이동 등을 FTA 구성요소로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비자와 인력이동, 환경법 관련 규정도 절반 이상의 협정에서 다루고 있다. 북미 지역 국가들은 90% 이상의 협정에 통관, GATS, SPS, TBT, 공공조달을 포함하고 있다. WTO-X 항목 중에서는 환경법, 투자,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높는데 다만 법적 구속력 수준은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

---

16) 다른 지역간 FTA는 중복계상되는바 지역별 협정 수의 합은 261건을 초과한 404건(앞서 언급한 3개 지역간 협정 2건 제외)이다. 즉 유럽 95건, 동아시아 67건, CIS 51건, 남미 42건, 북미 33건, 중미 31건, 아프리카 27건, 중동 24건, 오세아니아 19건, 서아시아 11건, 카리브 4건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17) 모든 협정에 포함된 제조업 관세자유화 및 1건을 제외한 모든 협정에 포함된 농업 관세자유화 항목은 제외하였다.

표 2-6. 지역별 주요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유럽, 동아시아, 북미

(단위: %)

유럽			동아시아			북미		
구성요소	협정 포함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구성요소	협정 포함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구성요소	협정 포함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반덤핑	95.8	89.0	통관	94.0	96.8	통관	93.9	96.8
통관	93.7	97.8	GATS	91.0	96.7	GATS	93.9	90.3
수출세	93.7	98.9	반덤핑	89.6	96.7	SPS	90.9	86.7
경쟁정책	89.5	96.5	TBT	88.1	93.2	TBT	90.9	90
국가보조	86.3	96.3	상계관세	88.1	96.6	공공조달	90.9	90
TBT	81.1	61.0	SPS	83.6	96.4	수출세	84.8	100
국영기업	81.1	94.8	투자	80.6	87.0	환경법	81.8	77.8
공공조달	80.0	61.8	TRIPs	79.1	94.3	TRIPs	78.8	100
TRIPs	78.9	97.3	경쟁정책	73.1	87.8	투자	78.8	96.2
SPS	76.8	61.6	지식 재산권	71.6	79.2	경쟁정책	75.8	96
상계관세	72.6	92.8	자본이동	71.6	100	반덤핑	72.7	100
GATS	69.5	56.1	수출세	68.7	93.5	TRIMs	72.7	100
지식 재산권	65.3	87.1	국가보조	67.2	86.7	국영기업	69.7	91.3
자본이동	64.2	90.2	TRIMs	64.2	95.3	상계관세	69.7	100
투자	60.0	45.6	공공조달	58.2	89.7	국가보조	69.7	91.3
농업 기술지원	50.5	29.2	비자와 인력이동	53.7	88.9	지식 재산권	69.7	95.7
			환경법	52.2	62.9	자본이동	69.7	91.3
			국영기업	50.7	94.1	노동시장 규제	60.6	95
						공공행정	51.5	29.4

주: 여기서 법적구속력은 분쟁절차 포함 여부를 불문함.

자료: Worldbank(2017) DB(검색일: 2018. 3. 2)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남미의 국가들은 90% 이상의 FTA에서 WTO+ 조항에 해당하는 통관, TBT, 수출세, SPS, GATS를 포함하였으며, 그 밖에 국가보조, 공공조달, 국영기업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특히 수출세와 공공조달의 경우 모든 남미가 속

한 협정에서 분쟁절차를 포함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WTO-X 조항 중 경쟁정책은 분쟁절차를 포함하지 않은 약한 구속력을 가진 협정이 대부분이었고, 정보사회와 지역협력은 선언적 의미에서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미 지역 국가들은 발효 중인 모든 협정에서 TBT와 GATS를 다루고 있고 통관, 수출세, SPS도 중요 요소로 대부분의 협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여타 지역에 비해 투자 조항의 포함 비중이 높다. WTO-X 항목인 경쟁정책, 비자와 인력이동, 공공행정은 분쟁절차가 없는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정보사회와 지역협력은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수준에 비해 법적구속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통관과 반덤핑 조항을 중심으로 TBT, SPS, 상계관세, 국가보조 등을 협정의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TRIPs, 수출세, TRIMs와 같은 WTO+ 항목은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WTO-X에 해당하는 경쟁정책과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의 경우 분쟁절차는 포함하지 않으나 강제적 조항으로서의 의미는 있었다. 한편 환경법, 노동시장 규제, 정보사회의 법적집행 가능성은 낮은 편이었다.

표 2-7. 지역별 주요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남미, 중미, 오세아니아

(단위: %)

구성요소	남미		중미			오세아니아		
	협정 포함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구성요소	협정 포함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구성요소	협정 포함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통관	97.6	97.6	TBT	100	93.5	통관	94.7	94.4
TBT	95.2	90	GATS	100	93.5	반덤핑	94.7	88.9
수출세	92.9	100	통관	96.8	96.7	TBT	89.5	88.2
SPS	90.5	94.7	수출세	93.5	100	SPS	84.2	93.8
GATS	90.5	97.4	SPS	93.5	89.7	상계관세	84.2	87.5
경쟁정책	85.7	77.8	투자	93.5	93.1	국가보조	84.2	87.5
상계관세	78.6	97.0	반덤핑	87.1	96.3	GATS	78.9	100
투자	78.6	87.9	경쟁정책	83.9	53.8	TRIPs	78.9	100

표 2-7. 계속

구성요소	남미		중미			오세아니아		
	협정 포함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구성요소	협정 포함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구성요소	협정 포함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반덤핑	76.2	96.9	상계관세	80.6	84	경쟁정책	73.7	92.9
국가보조	76.2	84.4	국가보조	80.6	64	투자	73.7	92.9
공공조달	73.8	100	정보사회	80.6	4	수출세	68.4	100
국영기업	71.4	96.7	비자와 인력이동	77.4	91.7	지식 재산권	68.4	61.5
자본이동	69.0	93.1	공공조달	74.2	95.7	자본이동	68.4	100
정보사회	69.0	6.9	환경법	71.0	45.5	소비자 보호	68.4	84.6
TRIPs	64.3	96.3	자본이동	71.0	86.4	공공조달	63.2	100
환경법	64.3	29.6	국영기업	67.7	95.2	TRIMs	57.9	100
지역협력	54.8	4.3	TRIPs	64.5	100	환경법	57.9	45.5
비자와 인력이동	54.8	95.7	공공행정	61.3	5.3	비자와 인력이동	57.9	81.8
TRIMs	52.4	95.5	TRIMs	58.1	100	노동시장 규제	52.6	50
지식 재산권	52.4	81.8	지역협력	54.8	0	정보사회	52.6	20

주: 여기서 법적구속력은 분쟁절차의 포함 여부를 불문함.  
 자료: Worldbank(2017) DB(검색일: 2018. 3. 2)를 토대로 저자 작성.

CIS 국가들의 FTA는 대부분 역내에서 발효 중으로, 앞서 확인하였듯이 협정 수준도 낮은 편이며 절반 이상의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도 통관, 수출세, 경쟁정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다. 아프리카의 경우 통관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고, 수출세, TBT, 반덤핑 역시 협정 포함 비중이 높았다. WTO-X 항목 중에서는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을 주로 포함하였고, 지역협력, 농업 기술지원, 산업협력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았으나 이러한 요소의 법적구속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아시아 국가들도 낮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해왔는데 통관을 중심으로 TBT, 반덤핑, SPS, GATS 등 WTO+ 항목

을 주요 요소로 포함하였다. 중동의 국가들이 90% 이상의 FTA에 포함하는 조항은 통관이었으며, WTO+ 항목 가운데 TRIMs를 제외한 모든 요소가 50% 이상의 협정에서 다루어졌다. WTO-X 항목 중에서는 경쟁정책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컸으며 법적구속력이 부여된 협정의 비중도 70~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리브 지역에서 발효 중인 FTA는 4건에 불과한데, 이 중 2건 이상의 협정에서 다루어진 요소는 25개였다. 카리브 국가들은 14개의 WTO+ 항목을 비롯해 환경법, 투자, 자본이동 등을 FTA 구성요소로 비중 있게 포함하였다. 여타 지역에 비해 반부패와 노동시장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WTO-X 항목인 정보사회, 금융지원, 지역협력, 공동연구, 사회문제 관련 내용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었다.

표 2-8. 지역별 주요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CIS, 아프리카, 서아시아, 중동, 카리브

(단위: %)

CIS			서아시아			카리브		
구성요소	협정 포함 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구성 요소	협정 포함 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구성 요소	협정 포함 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통관	96.1	73.5	통관	90.9	90	통관	100	75
수출세	94.1	97.9	TBT	72.7	87.5	TBT	100	75
경쟁정책	86.3	97.7	반덤핑	72.7	87.5	반덤핑	100	100
			SPS	63.6	100	상계관세	100	100
			GATS	54.5	100	국가보조	100	100
아프리카			중동			GATS	100	100
통관	92.6	96	통관	91.7	95.5	환경법	100	50
수출세	88.9	95.8	반덤핑	83.3	95	투자	100	75
TBT	88.9	41.7	SPS	75.0	50	자본이동	100	100
반덤핑	88.9	87.5	공공 조달	75.0	38.9	수출세	75	100
경쟁정책	74.1	80	국가 보조	70.8	100	SPS	75	100
투자	70.4	10.5	TBT	66.7	43.8	공공조달	75	100

표 2-8. 계속

구성요소	아프리카		중동			카리브		
	협정 포함 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구성 요소	협정 포함 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구성 요소	협정 포함 비중	법적 구속력 비중
자본이동	70.4	89.5	국영 기업	66.7	93.8	TRIPs	75	100
SPS	66.7	55.6	GATS	66.7	43.8	경쟁정책	75	66.7
상계관세	66.7	88.9	수출세	62.5	100	지식 재산권	75	66.7
지역협력	66.7	0	TRIPs	62.5	93.3	정보사회	75	0
공공조달	63.0	17.6	경쟁 정책	62.5	93.3	국영기업	50	100
GATS	63.0	29.4	지식 재산권	58.3	78.6	TRIMs	50	100
농업 기술지원	63.0	0	상계 관세	50	100	반부패	50	50
국가보조	59.3	93.8				노동시장 규제	50	100
TRIPs	55.6	93.3				금융지원	50	0
산업협력	51.9	7.1				지역협력	50	0
						공동연구	50	0
						사회 문제	50	0
						조세	50	50

주: 여기서 법적구속력은 분쟁절차 포함 여부를 불문함.  
 자료: Worldbank(2017) DB(검색일: 2018. 3. 2)를 토대로 저자 작성.

###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먼저 [표 2-9]에서 현재 발효 중인 한국의 FTA 15건을 대상으로 구성요소별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sup>18)</sup> 전 세계 FTA 특징에서도

18) Worldbank(2017) DB는 한-호주 FTA까지만 포함하고 있는바 한국이 현재 발효 중인 모든 FTA 구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FTA 역시 WTO-X 요소에 비해 WTO+ 요소의 협정 포함 비중이 높고 법적구속력도 강력한 편이었다. 모든 FTA에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의 관세자유화, TRIPs이었고 그 외에 WTO+로 분류되는 통관, SPS, TBT,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GATS의 경우 법적구속력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든 FTA 협정문에 포함되었다. 통관, GATS, 수출세는 대부분의 FTA에서 분쟁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나 SPS,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의 법적구속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WTO-X 항목 중에는 유일하게 지식재산권이 모든 FTA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 환경법, 정보사회, 시청각의 순으로 포함 비중이 높았다. 다만 법적구속력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 투자, 자본이동을 제외하면 분쟁절차가 미비하거나 법적구속력이 부재한 조항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WTO-X 요소인 데이터 보호, 혁신정책, 교육훈련, 공공행정, 산업협력, 지역협력, 반부패는 모두 선언적 의미에서만 언급되고 있었다. 한편 입법절차 통일, 시민보호, 인권, 불법이민, 불법약물, 자금세탁, 원자력 안전, 사회 문제, 통계, 조세, 테러리즘 관련 내용은 한국의 어떠한 FTA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

표 2-9.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협정별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현황

(단위: 건수, %)

구성요소	협정 포함여부		분쟁절차 포함한 법적구속력 부여		분쟁절차 미포함 법적구속력 부여		법적구속력 부재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제조업 관세자유화	15	100	15	100	0	0	0	0
농업 관세자유화	15	100	15	100	0	0	0	0
통관	15	100	14	93.3	0	0	1	6.7
SPS	15	100	6	40	9	60	0	0

성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중국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한-콜롬비아 FTA의 협정문을 토대로 해당 FTA의 구성요소를 업데이트하였다.

표 2-9. 계속

구성요소	협정 포함여부		분쟁절차 포함한 법적구속력 부여		분쟁절차 미포함 법적구속력 부여		법적구속력 부재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TBT	15	100	12	80	3	20	0	0
반덤핑조치	15	100	9	60	6	40	0	0
상계관세조치	15	100	9	60	6	40	0	0
GATS	15	100	14	93.3	0	0	1	6.7
TRIPs	15	100	15	100	0	0	0	0
지식재산권	15	100	14	93.3	1	6.7	0	0
수출세	14	93.3	14	100	0	0	0	0
경쟁정책	14	93.3	1	7.1	12	85.7	1	7.1
투자	14	93.3	11	78.6	0	0	3	21.4
국영기업	13	86.7	10	76.9	3	23.1	0	0
자본이동	13	86.7	13	100	0	0	0	0
공공조달	12	80	10	83.3	0	0	2	16.7
TRIMs	12	80	12	100	0	0	0	0
환경법	11	73.3	0	0	8	72.7	3	27.3
정보사회	11	73.3	1	9.1	1	9.1	9	81.8
시청각	10	66.7	0	0	6	60	4	40
국가보조	9	60	6	66.7	2	22.2	1	11.1
소비자보호	9	60	0	0	4	44.4	5	55.6
에너지	9	60	2	22.2	1	11.1	6	66.7
공동연구	9	60	2	22.2	1	11.1	6	66.7
노동시장규제	8	53.3	0	0	7	87.5	1	12.5
문화협력	8	53.3	2	25	4	50	2	25
비자와 인력이동	8	53.3	3	37.5	4	50	1	12.5
농업	7	46.7	3	42.9	1	14.3	3	42.9
데이터 보호	6	40	0	0	0	0	6	100
중소기업	6	40	2	33.3	1	16.7	3	50
혁신정책	5	33.3	0	0	0	0	5	100
교육훈련	5	33.3	0	0	0	0	5	100
정치적 대화	5	33.3	0	0	1	20	4	80
공공행정	5	33.3	0	0	0	0	5	100

표 2-9. 계속

구성요소	협정 포함여부		분쟁절차 포함한 법적구속력 부여		분쟁절차 미포함 법적구속력 부여		법적구속력 부재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광업	4	26.7	2	50	1	25	1	25
산업협력	3	20	0	0	0	0	3	100
지역협력	3	20	0	0	0	0	3	100
반부패	2	13.3	0	0	0	0	2	100
경제정책 대화	2	13.3	0	0	1	50	1	50
보건	2	13.3	1	50	0	0	1	50
금융지원	1	6.7	0	0	0	0	1	100

주: 1) 협정 포함 비중이 높은 구성요소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WTO+ 요소는 음영으로 표시함.

2) 법적구속력 관련 비중은 구성요소별 협정 포함 건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된 값임.

자료: Worldbank(2017) DB(검색일: 2018. 3. 2); 한국의 가발호 FTA 협정문(검색일: 2018. 6. 28); Hofmann, Osnago, and Ruta(2017)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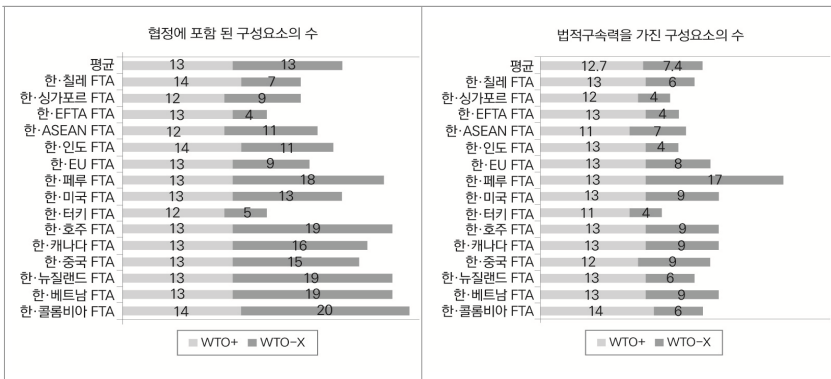
한국의 각 FTA에 포함된 구성요소의 수는 WTO+와 WTO-X 항목 각각 평균 13개였고 칠레, 인도, 콜롬비아와의 FTA에서는 모든 WTO+ 요소를 담고 있었다. WTO-X 항목의 수는 FTA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가장 최근에 발효한 콜롬비아와의 FTA는 20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한-EFTA FTA는 4개 요소에 불과하였다. 전체 구성요소의 수에서도 한-콜롬비아 FTA가 34개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가 32개로 뒤를 이었다. 한-EFTA FTA와 한-터키 FTA는 가장 적은 17개 구성요소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도 21개로 구성요소의 수가 적은 편이었다. 즉 대체로 FTA 발효 시기가 최근일수록 협정에서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수는 증가하였다. 다만 한-터키 FTA의 경우 2013년부터 발효 중인 기본 협정 및 상품협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성요소의 수가 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터키 FTA는 한-ASEAN FTA와 더불어 비관세 및 시장접근 관련 비국경 조항의 포함 비중이 낮은 관계로 FTA 핵심 구성요소도 14개로 가장 적었다. 참고로 칠레, 인도, 콜롬비아와의 협정은 18개의 핵심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고, 그 밖의 협정은 17개(한-싱가포르 FTA는 16개) 요소를 포함

하였는데 상대국 보호 관련 비국경 조항이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적구속력을 가진 요소의 수는 협정에 포함된 구성요소의 수보다 줄어들어 WTO+ 요소는 평균 12.7개, WTO-X 요소는 7.4개였다. 주로 앞서 언급한 FTA 핵심 구성요소의 법적구속력이 큰 편이었다. 한-콜롬비아 FTA는 14개의 WTO+ 요소 모두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었고, 싱가포르, ASEAN, 터키, 중국과의 FTA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법적구속력을 가진 WTO-X 요소는 한-페루 FTA가 17개로 독보적으로 많았으며, 싱가포르, EFTA, 인도, 터키와의 FTA는 각각 4개에 불과하였다.<sup>19)</sup> 이에 따라 전체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는 한-페루 FTA가 3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과의 FTA가 22개로 뒤를 이었다.<sup>20)</sup> 법적구속

그림 2-4. 한국의 자유무역협정별 구성요소의 수

(단위: 개)



주: 여기서 법적구속력은 분쟁절차 포함 여부를 불문함.

자료: Worldbank(2017) DB(검색일: 2018. 3. 2); 한국의 기발효 FTA 협정문(검색일: 2018. 6. 28)을 토대로 저자 작성.

19) 한-페루 FTA에서 법적구속력을 가진 17개 WTO-X 요소 중 지식재산권, 투자, 자본이동을 제외한 14개 요소는 분쟁절차를 포함하지 않은 약한 수준의 법적구속력만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EFTA, 인도, 터키와의 FTA도 분쟁절차까지 포함한 법적구속력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해당되는 WTO-X 요소의 수는 달라지며 한-터키 FTA의 경우 1개 요소(지식재산권)만이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된다.

20) 법적구속력을 분쟁절차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의미로 볼 경우, 전체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는 한-베트남 FTA가 2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ASEAN, 칠레, 싱가포르, EFTA 순이다.

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는 FTA 발효 시기보다는 상대국의 경제 수준이나 상대국이 속한 지역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0]에서는 먼저 한국의 기발효 FTA를 상대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선진국과의 FTA 및 개도국과의 FTA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모든 FTA에 포함되어 있는 9개 WTO+ 요소와 1개 WTO-X 요소를 제외하고 7건의 선진국과의 FTA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요소는 수출세, 공공조달,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이었으며, 개도국과의 FTA에는 위의 10개 요소 외에 추가적인 요소는 없었다.<sup>21)</sup> 개도국과의 FTA와 비교할 때 선진국과의 FTA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훨씬 큰 요소로는 공공조달, 노동시장규제, 자본이동, 공공행정이 있었고 반면 국가보조, 문화협력, 에너지, 공동연구에 대한 내용은 개도국과의 FTA에서 보다 강조되었다. 한편 1건 이상의 선진국과의 FTA에서만 확인되는 요소로 반부패와 금융지원이 있었고, 개도국과의 FTA에만 포함된 요소로는 경제정책 대화, 산업협력, 광업, 중소기업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선언적 의미에서 언급되거나 약한 수준의 법적구속력만 가지는 편이었다.

표 2-10. 상대국의 경제 수준별 자유무역협정 구분에 따른 구성요소 현황

구분	모든 해당 FTA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	상대적으로 포함 빈도 높은 구성요소	1건 이상 해당 FTA에만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
선진국 (7건)	(WTO+) 수출세, 공공조달 (WTO-X)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	(WTO+) 공공조달 (WTO-X) 노동시장규제, 자본이동, 공공행정	(WTO-X) 반부패, 금융지원
개도국 (8건)	-	(WTO+) 국가보조 (WTO-X) 문화협력, 에너지, 공동연구	(WTO-X) 경제정책 대화, 산업협력, 광업, 중소기업

자료: 저자 작성.

21) [표 2-9]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모든 FTA에 포함되어 있는 WTO+ 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 관세자유화, 통관, SPS, TBT,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GATS, TRIPs이며, WTO-X 요소는 지식재산권이다.

다음으로 [표 2-11]에서는 15건의 FTA를 상대국의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구성요소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은 4건의 FTA를 발효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에서는 앞서 언급한 10개 구성요소 외에 WTO+ 요소로 TRIMs, WTO-X 요소 중에는 투자, 에너지, 공동연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노동비용이 저렴한 편인 동아시아 지역은 아국 기업의 생산기반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바 투자 관련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지역과의 FTA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는 수출세, 국영기업, 국가보조 및 경쟁정책은 법적구속력도 큰 편이었으며, 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FTA에서 특별히 언급된 것으로는 WTO+ 및 WTO-X 요소 각각 4개씩이 있었다.<sup>22)</sup> 북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과의 FTA는 상대적으로 WTO-X 항목에서 공통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북미 FTA에서 반부패, 환경법, 노동시장규제 관련 내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오세아니아 FTA는 지식재산권 외에 18개의 공통적인 WTO-X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문은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아시아 지역의 FTA는 한-인도 FTA로 1건에 불과하여 해당 지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

22) 유럽 지역과의 FTA는 EFTA, EU, 터키와 체결한 것인데, 한-터키 FTA의 경우 EFTA 및 EU와의 FTA와 달리 상품만을 대상으로 발효 중인바 유럽 지역 FTA 공통 구성요소 수가 적어진 경향도 있다. EFTA와 EU만 한정하여 보면 WTO+ 요소인 공공조달, WTO-X 요소인 투자 및 자본이동 관련 내용도 공통 구성요소로 포함하게 된다.

표 2-11. 지역별 자유무역협정 구분에 따른 구성요소 현황

구분	해당 FTA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
동아시아(4건)	(WTO+) TRIMs (WTO-) 투자, 에너지, 공동연구
유럽(3건)	(WTO+) 수출세, 국영기업, 국가보조 (WTO-) 경쟁정책
남미(3건)	(WTO+) 수출세, 국가보조, 공공조달, TRIMs (WTO-) 경쟁정책, 자본이동, 소비자보호, 정보사회
북미(2건)	(WTO+) 수출세, 국영기업, 공공조달, TRIMs (WTO-) 반부패, 경쟁정책, 환경법, 투자, 노동시장규제, 자본이동, 소비자보호, 정보사회, 공공행정
오세아니아(2건)	(WTO+) 수출세, 국영기업, 공공조달, TRIMs (WTO-) 경쟁정책, 환경법, 투자, 노동시장규제, 자본이동, 소비자보호, 데이터 보호, 농업, 시청각, 혁신정책, 교육훈련, 에너지, 정보사회, 정치적 대화, 공공행정, 지역협력, 공동연구, 비자와 인력이동
서아시아(1건)	(WTO+) 수출세, 국영기업, 국가보조, 공공조달, TRIMs (WTO-)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 시청각, 문화협력, 에너지, 보건, 공동연구, 중소기업, 비자와 인력이동

자료: 저자 작성.

## 4. 소결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별 협정의 수준도 높아졌다. 협정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FTA의 구성요소는 14개 WTO+ 요소와 38개 WTO-X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 WTO-X에 비해 WTO+ 요소의 협정 포함 비중이 높고 법적구속력도 강력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FTA에서 포함하는 WTO+ 및 WTO-X 요소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SPS와 TBT, TRIPs, GATS 등 WTO+ 요소의 포함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법적구속력이 부여된 요소의 수에서는 2005년까지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차츰 늘어났

다. 1995~2005년 기간에 개도국간의 FTA가 크게 증가하면서 협정문에 다양한 요소를 포함시키더라도 분쟁절차를 포함하는 등의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기 보다는 장려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FTA가 확산되면서 법적구속력을 가진 요소의 수가 다소 증가하였다. 즉 보다 다양한 구성요소를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난 전 세계적 양상인 반면 그러한 구성 요소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는 협정 당사국간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FTA를 체결하는 양당사국의 경제 수준이나 당사국이 속한 지역에 따라 협정에 포함되고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협정의 수준) 및 구성요소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FTA를 경제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선진국간 FTA와 선진국과 개도국 간 FTA의 구성요소 수는 비슷하나 법적구속력 수준은 선진국간 FTA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효된 모든 선진국간 FTA에서 언급된 요소는 SPS, 공공조달, GATS였고 반부패는 1995년 이후, 정보사회 관련 내용은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롭게 등장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FTA에서는 통관이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채로 모두 포함되었고, SPS, TBT, GATS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1995년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요소로는 데이터 보호, 경제정책 대화, 중소기업, 비자와 인력이동이 대표적이다. 개도국 간 FTA에서도 SPS와 TBT의 증가세가 확연한 가운데 반덤핑조치, TRIMs, TRIPs 등의 포함 비중도 높아졌다. 비자와 인력이동 항목은 1995년 이후 언급되기 시작하였는데 선진국-개도국 간 FTA에 비해 법적구속력은 크게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유럽 및 동아시아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협정에서 대체로 많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지역내 FTA에서는 특히 아프리카와 북미 지역내 협정에서 구성요소의 수가 많았다. 그러나 법적구속력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주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이 포함된 협정에서 구성요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주요 FTA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WTO+ 요소는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WTO-X 요소는 당사국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유럽, 동아시아, 북미의 경우 구성요소 내용의 변동성이 적은 반면 카리브, 오세아니아, 중미, 남미 지역은 협정 상대국(지역)에 따라 포함하는 요소가 달라지는 경향이 컸다.

한국의 경우에도 FTA 발효 시기가 최근일수록 협정에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FTA별 구성요소 수의 평균을 보면 전 세계 평균보다 컸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FTA 개시는 상대적으로 늦었으나 그간 적극적인 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EFTA나 EU와 같은 선진국과의 FTA에서 포함하고 있는 구성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세계적인 구성요소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와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면에서는 FTA 발효 시기보다 상대국의 경제 수준이나 상대국이 속한 지역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체결한 7건의 FTA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8건의 개도국과의 FTA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요소인 공공조달, 경쟁 정책, 투자와 자본이동 관련 내용은 앞으로 진행 예정인 칠레, ASEAN, 인도 등과의 개선협상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MERCOSUR와 같은 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FTA에는 WTO-X 요소의 포함 비중을 더욱 높여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서의 의미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 제3장



#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2. WTO+/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영향
4. 동태적 영향
5. 소결



본 장에서는 UN COMTRADE의 세계교역 자료와 Worldbank(2017)의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전반적인 수준(depth)이 높아질수록 교역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모든 개별 구성요소를 포함시켜 다양한 모형을 추정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본 장에서는 WTO+/WTO-X 조항의 포함 정도를 지수화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단순한 조항의 포함 여부에서 더 나아가 조항의 법적구속력 여부에 따라, 혹은 WTO+와 WTO-X 각각에 속한 조항의 포함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교역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가 수입국-수출국 각각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협정 발효 전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 1.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많은 국제무역 연구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된 중력모형을 이용한다. 또한 Silva and Tenreyro(2006)에서 언급되었듯이 종속변수가 다수의 0(영)의 값을 가질 때 로그선형모형과는 달리 종속변수를 변환하지 않고 추정이 가능하며 이분산성에 강건하다고 알려진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이하 PPML) 방법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sup>23)</sup>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식 3-1]과 같다.

$$Trade_{ijt} = \exp(FTA_{ijt}\beta + X_{ijt}\gamma + \alpha_{ij} + \theta_t)\epsilon_{ijt} \quad [\text{식 3-1}]$$

23) 본 연구에서는 196개국의 양자교역 자료를 분석하는바 적지 않은 조합에서 교역량이 0인 경우가 발견되고 로그선형모형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모두 교역량이 없는 조합도 분석에 포함하는 문제가 있어 본 장에서는 PPML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i$ 는 수입국,  $j$ 는 수출국,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Trade_{ijt}$ 는  $i$ 국이  $j$ 국으로부터  $t$ 기에 수입한 상품의 총금액을 가리키며  $FTA_{ijt}$ 는 자유무역협정 관련 변수로서 분석 목적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발효더미, 자유무역협정 수준, WTO+나 WTO-X 조항 수준 변수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수준 변수나 WTO+ 조항 수준, WTO-X 조항 수준 등의 변수는  $i$ 국가와  $j$ 국가가  $t$  시점에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들)이 얼마나 많은 해당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0부터 1사이의 값으로 정규화(normalize)한 값을 의미한다.<sup>24)</sup>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i-j$  국가조합이 총 48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다른 한 국가조합의 자유무역협정(들)이 포함하고 있는 구성요소 개수가 총 26개일 때 그 국가조합의 자유무역협정 수준은  $26/48 \approx 0.54$ 로 계산된다.<sup>25)</sup> 비슷한 예로 서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모든  $i-j$  국가조합들 중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조항 개수’의 최대치가 31개라면, 어떤 한  $i-j$  국가조합의 자유무역협정(들)이 포함하는 법적구속력 있는 WTO-X 조항 개수가 5개일 때, 그 국가조합의 자유무역협정의 ‘법적구속력 있는 WTO-X 조항 수준’은  $5/31 \approx 0.16$ 으로 계산된다. 그 외에  $X_{ijt}$ 는 수입국/수출국의 로그 GDP와 같이 전통적인 중력모형의 통제변수 중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들을 의미하고  $\alpha_{ij}$ 와  $\theta_t$ ,  $\epsilon_{ijt}$ 는 각각 수입국-수출국 고정효과와 연도더미 벡터, 잔차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내생성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대신 수입국-수출국 고정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다뤘다. 내생성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협정의 상대국을 결정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Wonnacott and Lutz(1989), Summers(1991), Deardorff and Stern(1994)는 기존의 주요

24) Mattoo, Mulabdic, and Ruta(2017)가 제안한 방법을 준용하였다.

25) 여기서 구성요소의 최댓값은 특정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체에서의 최댓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을 측도할 때 분모의 값이 시기에 따라 혹은 국가조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 실증분석에서 쓰는 자유무역협정 수준 측도의 평균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데 이것은 수준 측도가 제2장에서 논의되었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교역 상대국과 우선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효과적(natural trading partner hypothesis)이라는 입장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Krugman(1989)과 Zissimos(2011)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우선순위로 둔 반면 Bhagwati and Panagariya(1996)와 Krishna(2003)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경제적 효과가 보다 큰 협정이라고 보았다. 지리적 요인에서 벗어나 Baier and Bergstrand(2004)와 Egger and Larch(2008)는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교역을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Ethier(1998)와 Krueger(1999)는 상대적 요소부존도와 시장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같은 개도국보다 선진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Lawrence(1996)는 무역 관련 정책 개혁의 필요성이 큰 개도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 결정요인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Magee(2003)는 자유무역협정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교역에의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된다. 이 논문에서는 양국간 교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natural trading partner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내생성을 통제한 결과 협정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모형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Baier and Bergstrand(2007) 역시 자유무역협정의 내생성을 다루면서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끼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도구변수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내생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고려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multilateral resistance terms와 내생성을 통제할 목적으로 수입국-수출국 고정효과를 사용하고 있는바 부분적으로 내생성에 의한 편의(bias)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내생성을 통제할 경우 협정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및 개별 구성요소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식 3-1]의 추정에 사용한 분석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2장 1절과 2절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와 동일하다. 다만 세계경제 및 무역량의 이례적인 침체를 가져왔던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를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석 기간 중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였다. 이미 패널분석 과정에서 연도더미를 포함시킴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를 감안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2008~10년 사이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동 기간 영향을 미친 금융위기의 효과와 분리되지 않는 식별(identification)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조합별로 교역품목 구성이 상이하며, 2008년 금융위기가 이러한 교역품목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연도더미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 장에서 설명한 주요 분석 자료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요약하자면, 196개국 양자간 교역자료는 UN Comtrade DB(검색일: 2018. 5. 11)로부터 구하였고,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의 14개 WTO+ 조항 및 38개 WTO-X 조항의 협정 포함 여부와 법적구속력 정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자료는 Worldbank(2017)의 DB(검색일: 2018. 3. 2)에서 구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일한 국가조합에 여러 건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한 구성요소에 대해 여러 다른 정보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법적구속력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더불어 각국의 연도별 GDP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B(검색일: 2018. 5. 10)에서 수집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한 주요 분석 대상은 1995~2015년(2008~10년 제외) 기간의 196개 국가이지만 회귀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2002~15년(2008~10년 제외) 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또 교역량 기준 상위 48개국으로 분석 대상을 좁혀서 두 분석 기간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up>26)</sup> 2002~15년(2008~10년 제외) 기간만 따로 살펴본 것

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기간을 고려한 것이고, 교역량 기준 상위 48개국을 추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주된 이유는 결측치(missing data)나 극소량의 교역량이 회귀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회귀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분석 기간과 분석 대상에 따라 [표 3-1]에 정리하였다.

---

26) 2015년 교역량 기준(100억 달러 이상) 상위 48개국: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홍콩, 한국, 캐나다, 이탈리아, 멕시코, 벨기에, 인도(인디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태국, 호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터키, 오스트리아, 체코 공화국, 인도네시아, 스웨덴, 아일랜드, 헝가리, 덴마크,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오만, 이란, 슬로바키아 공화국, 튀니지, 필리핀, 루마니아, 이스라엘, 칠레, 포르투갈, 핀란드,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표 3-1. 주요 변수 기초 통계량

	198개국 대상											
	1995-2007 & 2011~15						2002-07 & 2011~15					
	평균	표준오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관측치
수입액(백만 달러, USD)	279	3,752	0	0.004	504,028	629,536	358	4,445	0	0.023	504,028	391,242
수입국 로고 GDP	23.5	2.5	16.2	23.4	30.5	629,536	23.8	2.4	16.6	23.7	30.5	391,242
수출국 로고 GDP	23.5	2.5	16.2	23.4	30.5	629,536	23.8	2.4	16.6	23.7	30.5	391,242
자유무역협정 대비	0.09	0.28	0	0	1	629,536	0.11	0.32	0	0	1	391,242
자유무역협정 수준: WTO+/WTO-X 포함	0.05	0.17	0	0	1	629,536	0.06	0.19	0	0	1	391,242
자유무역협정 수준: 선진국 의미의 WTO+/WTO-X 포함	0.03	0.14	0	0	1	629,536	0.04	0.15	0	0	1	391,242
자유무역협정 수준: 선진국 의미의 WTO+/WTO-X 포함	0.03	0.13	0	0	1	629,536	0.04	0.15	0	0	0.98	391,242
자유무역협정 수준: 선진국 의미의 WTO+/WTO-X 포함	0.06	0.20	0	0	1	629,536	0.08	0.23	0	0	1	391,242
자유무역협정 수준: 선진국 의미의 WTO+/WTO-X 포함	0.02	0.11	0	0	1	629,536	0.03	0.13	0	0	1	391,242
<b>교역량 기준 상위 49개국 대상</b>												
수입액(백만 달러, USD)	3,685	14,257	0	477	504,028	40,608	4,760	16,934	0	750	504,028	24,816
수입국 로고 GDP	26.5	1.5	21.3	26.4	30.5	40,608	26.7	1.4	21.5	26.6	30.5	24,816
수출국 로고 GDP	26.5	1.5	21.3	26.4	30.5	40,608	26.7	1.4	21.5	26.6	30.5	24,816
자유무역협정 대비	0.25	0.43	0	0	1	40,608	0.31	0.46	0	0	1	24,816
자유무역협정 수준: WTO+/WTO-X 포함	0.16	0.31	0	0	0.94	40,608	0.21	0.34	0	0	0.92	24,816
자유무역협정 수준: 선진국 의미의 WTO+/WTO-X 포함	0.05	0.19	0	0	0.96	40,608	0.07	0.22	0	0	0.96	24,816
자유무역협정 수준: 선진국 의미의 WTO+/WTO-X 포함	0.15	0.30	0	0	1.00	40,608	0.18	0.32	0	0	0.98	24,816
자유무역협정 수준: 선진국 의미의 WTO+/WTO-X 포함	0.20	0.37	0	0	1	40,608	0.25	0.40	0	0	1	24,816
자유무역협정 수준: 선진국 의미의 WTO+/WTO-X 포함	0.12	0.27	0	0	0.97	40,608	0.14	0.30	0	0	0.94	24,816

자료: 저자 작성.

## 2. WTO+/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표 3-2]는 [식 3-1]과 PPML을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수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패널 A는 세계 금융위기 기간(2008~10년)을 제외한 1995~2015년을 분석 기간으로, 패널 B는 세계 금융위기 기간(2008~10년)을 제외한 2002~15년(중국 WTO 가입 이후)을 분석 기간으로 한 추정 결과이다. 먼저 [표 3-2] 패널 A의 1995~2015년 기간의 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약 7%의 교역증가를 가져오는 반면에 ((1)열), 가장 수준이 높은, 다시 말해 WTO+/WTO-X 조항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약 20%의 교역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2)열). 아울러 최고 수준 자유무역협정의 교역효과 추정치가 평균적인 자유무역협정의 교역효과 추정치에 비해 통계적으로도 더 강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WTO+/WTO-X 조항과 관련하여 더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일수록 평균적으로 더 큰 교역량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단순히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조항의 수보다는 그중에 얼마나 많은 조항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가 자유무역협정의 교역량 증가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이다. [표 3-1]의 (3)열처럼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을 ① 선언적 의미의 WTO+/WTO-X 조항 포함 정도 ②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WTO-X 조항 포함 정도로 각각 구분하여 회귀분석하면, ②의 수준이 자유무역협정 교역증가 효과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은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가 효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반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WTO+/WTO-X 조항들의 포함 정도는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가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위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추후 분석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②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WTO-X 조항 포함 정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 부가적인 설명 없이 ‘자유무역협정 수준’, 혹은 ‘자유무역협정/WTO+/WTO-X 조항 수준’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는 ②의 정의에 기초했음을 밝힌다.

추가적으로 [표 3-2] (4)열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WTO+ 조항의 수준 효과와 WTO-X 조항의 수준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WTO+ 조항의 수준보다 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WTO-X 조항의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지면 약 38%의 유의미한 수입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WTO+ 조항의 수준 증가는 자유무역협정 교역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WTO+ 조항의 세부 구성요소에 따라 교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혼재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이 부분은 4장의 분석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추후 분석에서 이러한 WTO-X 조항 수준의 긍정적인 교역효과는 협정 발효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태적 분석 부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표 3-2.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196개국 대상)

	A. 1995-2007 & 2011-15			B. 2002-07 & 2011-15				
	(1) 수입량	(2) 수입량	(3) 수입량	(4) 수입량	(5) 수입량	(6) 수입량	(7) 수입량	(8) 수입량
자유무역협정 대비	0.070* (0.039)				0.083*** (0.026)			
자유무역협정 수준 - WTO+/WTO-X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0.198*** (0.042)				0.192*** (0.038)	0.082* (0.049)	
자유무역협정 수준 - 선연직 의미의 WTO+/WTO-X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0.027 (0.044)					
자유무역협정 수준 - 법직구속력이 있는 WTO+/WTO-X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0.224*** (0.044)				0.185*** (0.040)	
자유무역협정 수준 - 법직구속력 있는 WTO-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0.070 (0.062)				0.059 (0.049)
자유무역협정 수준 - 법직구속력 있는 WTO-X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0.383*** (0.085)				0.142** (0.072)
수입국 로그 GDP	0.747*** (0.031)	0.749*** (0.030)	0.750*** (0.030)	0.757*** (0.030)	0.679*** (0.040)	0.683*** (0.040)	0.684*** (0.040)	0.685*** (0.040)
수출국 로그 GDP	0.595*** (0.035)	0.600*** (0.035)	0.602*** (0.034)	0.609*** (0.033)	0.472*** (0.033)	0.478*** (0.033)	0.479*** (0.033)	0.479*** (0.033)
총 관측치	527,982	527,982	527,982	527,982	320,570	320,570	320,570	320,570
국가조항 개수	30,297	30,297	30,297	30,297	29,765	29,765	29,765	29,765
추정방법	PPML	PPML	PPML	PPML	PPML	PPML	PPML	PPML
연도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국가조항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분석 대상 국가	All	All	All	All	All	All	All	All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 오차임(\*\*\*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3-3.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교역량 기준 상위 48개국 대상)

	A. 1995~2007 & 2011~15				B. 2002~07 & 2011~15			
	(1) 수입량	(2) 수입량	(3) 수입량	(4) 수입량	(5) 수입량	(6) 수입량	(7) 수입량	(8) 수입량
자유무역협정 대비	0.048 (0.046)				0.081** (0.032)			
자유무역협정 수준 - WTO+/WTO-X 조항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0.205*** (0.054)				0.180*** (0.049)	0.095 (0.176)	
자유무역협정 수준 - 선연적 의미의 WTO+/WTO-X 조항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0.109 (0.084)					0.170** (0.050)	
자유무역협정 수준 -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WTO-X 조항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0.237*** (0.063)						
자유무역협정 수준 - 법적구속력 있는 WTO+ 조항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0.160** (0.078)				0.028 (0.067)
자유무역협정 수준 - 법적구속력 있는 WTO-X 조항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0.531*** (0.108)				0.176* (0.098)
수입당 로그 GDP	0.741*** (0.036)	0.742*** (0.036)	0.742*** (0.036)	0.754*** (0.035)	0.661*** (0.048)	0.666*** (0.048)	0.666*** (0.048)	0.668*** (0.048)
수출당 로그 GDP	0.591*** (0.040)	0.598*** (0.041)	0.598*** (0.040)	0.611*** (0.037)	0.451*** (0.036)	0.457*** (0.035)	0.457*** (0.035)	0.459*** (0.036)
총 관측치	40,572	40,572	40,572	40,572	24,783	24,783	24,783	24,783
국가조합 개수	2,254	2,254	2,254	2,254	2,253	2,253	2,253	2,253
추정방법	PPML	PPML	PPML	PPML	PPML	PPML	PPML	PPML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국가조합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분식 대상 국가	Top 48	Top 48	Top 48	Top 48	Top 48	Top 48	Top 48	Top 48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 오차임(\*\*\*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표 3-2] 패널 A 주요 결과는 분석 기간과 분석 대상을 달리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일관되게 나타나 상당한 강건성(robustness)을 보여주었다. [표 3-2] 패널 B의 2002~15년(2008~10년 제외)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가 ((8)열) 패널 A의 결과((4)열)에 비해 다소 작게 추정이 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패널 A에서 논의했던 주요 결과들 대부분을 그대로 패널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표 3-3]은 [표 3-2] 패널 A, B 각각의 분석 기간에 대해 분석 대상을 교역량 기준 상위 48개국으로 좁혀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 3-3]도 역시 분석 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더 큰 크기의 교역효과를 가져온 것을 보여주며, 특별히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는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WTO-X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양국간의 교역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3.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영향

본 절에서는 수입국-수출국 유형을 협정당사국들의 경제 수준에 따라 선진국-선진국, 선진국-개도국, 개도국-선진국, 개도국-개도국으로 나누어 [식 3-2]와 같이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교역효과를 회귀분석하였다.<sup>27)</sup>

$$Trade_{ijt} = \exp(FTA_{ijt}^{AA}\beta^{AA} + FTA_{ijt}^{AD}\beta^{AD} + FTA_{ijt}^{DA}\beta^{DA} + FTA_{i,j,t}^{DD}\beta^{DD} + X_{ijt}\gamma + \alpha_{ij} + \theta_t)\epsilon_{ijt} \quad [\text{식 3-2}]$$

27) 선진국(advanced economies, IMF 기준):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말타, 일본, 영국, 캐나다, 한국, 호주, 타이완, 스웨덴,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체코, 노르웨이, 이스라엘, 덴마크,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여기서  $FTA_{i,j,t}^p$  는 t기 p 유형의 i-j국의 자유무역협정 여부 혹은 자유무역협정 수준을 가리키는 변수이다. i-j국이 선진국-선진국 유형이면 p=AA, 선진국-개도국 유형이면 p=AD, 개도국-선진국 유형이면 p=DA, 개도국-개도국 유형이면 p=DD이다. 그 외의 다른 변수들은 [식 3-1]과 동일하다.

[식 3-2]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3-4]에 정리하였다. [표 3-2], [표 3-3]과 마찬가지로 [표 3-4]의 패널 A, B는 각각 세계 금융위기 기간(2008~10년)을 제외한 1995~2015년과 2002~15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였다. 먼저 [표 3-4] 패널 A의 (2)열을 보면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기준으로 볼 때, 개도국-개도국 유형의 자유무역협정 교역증가 효과가 55%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선진국-개도국 유형과 개도국-선진국 유형의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가 효과는 각각 29%와 20%로 나타나 [표 3-4]의 (1)열에 나타난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의 평균적인 교역증가 효과(22%)와 비슷한 규모로 추정되었다. 선진국-선진국의 경우는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 약 10%의 교역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표 3-4]의 (3)열에서는 협정 당사국들의 경제 수준별 자유무역협정 수준 교역효과를 WTO+ 조항의 수준 효과와 WTO-X 조항의 수준 효과로 나누어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도국-선진국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는 WTO+ 조항에 비해 WTO-X 조항의 수준이 양(+의 교역효과 창출)에 더욱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개도국-선진국 유형이 선진국-개도국 유형과 대칭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WTO-X 조항의 수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2)열의 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개도국-선진국, 선진국-개도국 유형 모두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양(+의 교역효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다만 (3)열의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교역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개도국 유형에서는 WTO-X 조항의 수준이 유의미한 역할을 한

표 3-4.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교역효과(196개국 대상)

	A. 1995-2007 & 2011-15				B. 2002-07 & 2011-15			
	(1) 수입액	(2) 수입액	(3) 수입액	(4) 수입액	(5) 수입액	(6) 수입액	(7) 수입액	(8) 수입액
종속변수→ 생량변수→	자유무역협정 수준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자유무역협정 수준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자유무역협정 수준 1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자유무역협정 수준 2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자유무역협정 수준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자유무역협정 수준 1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자유무역협정 수준 2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수입국→수출국 유형!								
전체	0.221*** (0.045)			0.195*** (0.040)				
선진국→선진국	0.098 (0.085)	-0.487*** (0.118)	0.736*** (0.151)	0.062 (0.052)	-0.114 (0.100)	0.205 (0.140)		
선진국→개도국	0.287*** (0.064)	-0.081 (0.065)	0.523*** (0.101)	0.167*** (0.060)	-0.118* (0.065)	0.450*** (0.103)		
개도국→선진국	0.201*** (0.071)	0.115 (0.113)	0.071 (0.141)	0.214*** (0.075)	0.206* (0.114)	-0.087 (0.146)		
개도국→개도국	0.550*** (0.166)	0.069 (0.200)	0.686* (0.381)	0.557*** (0.114)	0.149 (0.068)	0.467*** (0.179)		
총 관측치	527,982	527,982	527,982	320,570	320,570	320,570		
국가조합 개수	30,297	30,297	30,297	29,765	29,765	29,765		
추정방법	PPML	PPML	PPML	PPML	PPML	PPML		
연도타미	Yes	Yes	Yes	Yes	Yes	Yes		
국가조합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분석 대상 국가	All	All	All	All	All	All		
각 국가 포그 GDP	Yes	Yes	Yes	Yes	Yes	Yes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 오차임(\*\*\*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3-5.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교역효과(교역량 기준 상위 48개국 대상)

종속변수→ 설명변수→	A. 1995-07 & 2011~15			B. 2002-07 & 2011~15		
	(1) 수입액	(2) 수입액	(3) 수입액	(4) 수입액	(5) 수입액	(6) 수입액
수입국-수출국 유형 ↓ 전체	자유무역협정 수준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자유무역협정 수준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자유무역협정 수준 1-법적구속력이 있는 WTO+ 조항의 포함 정도(최소:0, 최대:1)	자유무역협정 수준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자유무역협정 수준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자유무역협정 수준 2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선진국-선진국	0.225*** (0.054)	0.134 (0.108)	-0.497*** (0.120)	0.179*** (0.049)	0.066 (0.065)	-0.109 (0.101)
선진국-개도국	0.303*** (0.076)	0.303*** (0.076)	-0.118 (0.086)	0.811*** (0.161)	0.161** (0.072)	-0.183** (0.091)
개도국-선진국	0.186** (0.085)	0.186** (0.085)	0.098 (0.164)	0.083 (0.209)	0.192** (0.092)	0.209 (0.168)
개도국-개도국	0.466** (0.232)	0.466** (0.232)	-0.156 (0.259)	1.233** (0.558)	0.582*** (0.166)	0.083 (0.146)
총 관측치	40,572	40,572	40,572	24,783	24,783	24,783
국가조항 개수	2,254	2,254	2,254	2,253	2,253	2,253
추정방법	PPML	PPML	PPML	PPML	PPML	PPML
인도데이터	Yes	Yes	Yes	Yes	Yes	Yes
국가조항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분석 대상 국가	Top 48	Top 48	Top 48	Top 48	Top 48	Top 48
각 국가 로그 GDP	Yes	Yes	Yes	Yes	Yes	Yes

주: 괄호 안 수치는 표준 오차임(\*\*\*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반면, 개도국-선진국 유형에서는 WTO-X 조항 수준의 역할이 WTO+ 조항에 비해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진국-개도국 유형의 자유무역협정에서 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량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WTO-X 조항의 수준이 높은 선진국-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일수록 개도국이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도국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의 WTO-X 조항 수준을 높이는 것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될 수는 있어도 결국에 자국 제품에 대한 선진국 소비자들의 신뢰와 수요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출시장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표 3-4] 패널 A의 주요 결과는 분석 기간을 2002년 이후로 변경하고 분석 대상 국가 범위를 교역량 기준 상위 48개국으로 좁혀도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표 3-4] 패널 A의 결과를 같은 표 패널 B(196개국, 2002~07년/2011~15년), [표 3-5] 패널 A(48개국, 1995~2007년/2011~15년), [표 3-5] 패널 B(48개국, 2002~07년/2011~15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음 주요 결과들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선진국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교역량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둘째, 다른 유형에 비해 개도국-개도국 유형에서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미치는 양의 교역효과가 가장 컸으며, 셋째, 선진국-개도국, 개도국-개도국 유형에서는 특별히 WTO-X 조항의 수준이 자유무역협정의 교역효과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28)</sup>

---

28) 선진국-선진국 유형의 경우 분석 대상 국가와 상관없이 1995~2007년/2011~15년 기간에는 WTO-X 조항의 수준이 상당히 큰 양(+)의 교역효과를 가져왔지만 2002~07년/2011~15년 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교역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 4. 동태적 영향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논의 단계부터 발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발효 이후에도 최대 관세 감소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또 관련 정보가 확산되고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후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동태적 효과 분석인 만큼 충분한 분석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1995~07년/2011~15년 기간에 대해서만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한 분석 모형은 다음 [식 3-3]과 같다.

$$Trade_{ijt} = \exp\left(\sum_{k=-5}^{5+} FTA_{i,j,t}^k \beta^k + X_{i,j,t} \gamma + \alpha_{ij} + \theta_t\right) \epsilon_{i,j,t} \quad [\text{식 3-3}]$$

여기서  $FTA_{ijt}^k$  는 t-k기가 자유무역협정 발효 시작연도인지의 여부 혹은 t-k기에 발효되기 시작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을 의미하며 그 외 다른 변수들의 정의는 [식 3-1]과 동일하다.

[식 3-3]을 사용하여 196개국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3-6]의 패널 A에, 교역량 기준 상위 48개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패널 B에 정리하였다. [표 3-6] 패널 A (1)열은 먼저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자유무역협정의 교역효과가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결과를 보면 1995~2007년/2011~15년 기간 동안 평균적인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교역효과는 자유무역협정 발효 1년 후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자유무역협정 발효 4년 후까지 지속되다가(4년 평균 약 12%의 교역증가 효과), 이후 자유무역협정 발효 기준으로 5년 이상이 지난 시기에는 양(+)의 교역효과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9)30)</sup>

표 3-6.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동태적 교역효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A. 1995개국, 1995-2007/2011-15					B. 48개국, 1995-2007/2011-15				
	(1) 수입액 자유무역 협정	(2) 수입액 자유무역협정 수준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3) 수입액 자유무역협정 수준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4) 수입액 자유무역 협정	(5) 수입액 자유무역협정 수준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6) 수입액 자유무역협정 수준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7) 수입액 자유무역협정 수준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X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8) 수입액 자유무역협정 수준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X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9) 수입액 자유무역협정 수준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X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10) 수입액 자유무역협정 수준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X 조항의 포함 정도 (최소:0, 최대:1)
시차 ↓										
자유무역협정 발효 5년 전	-0.016 (0.029)	0.024 (0.051)	-0.052 (0.060)	-0.024 (0.035)	0.021 (0.063)	0.086 (0.096)	-0.079 (0.073)	0.126 (0.122)	0.126 (0.122)	
자유무역협정 발효 4년 전	0.014 (0.032)	0.089 (0.054)	-0.023 (0.065)	0.015 (0.040)	0.101 (0.066)	0.112 (0.095)	-0.032 (0.081)	0.142 (0.121)	0.142 (0.121)	
자유무역협정 발효 3년 전	0.028 (0.035)	0.125** (0.054)	-0.014 (0.065)	0.033 (0.044)	0.145** (0.066)	0.137 (0.094)	-0.032 (0.082)	0.194 (0.121)	0.194 (0.121)	
자유무역협정 발효 2년 전	0.048 (0.035)	0.135** (0.054)	0.044 (0.065)	0.061 (0.044)	0.157** (0.066)	0.046 (0.096)	0.044 (0.084)	0.077 (0.125)	0.077 (0.125)	
자유무역협정 발효 1년 전	0.073 (0.045)	0.159** (0.068)	0.100 (0.082)	0.089 (0.056)	0.186** (0.083)	-0.021 (0.106)	0.100 (0.107)	0.016 (0.140)	0.016 (0.140)	
자유무역협정 발효 연도	0.058 (0.040)	0.137** (0.061)	0.065 (0.067)	0.068 (0.049)	0.159** (0.074)	0.021 (0.096)	0.051 (0.086)	0.079 (0.124)	0.079 (0.124)	
자유무역협정 발효 1년 후	0.121** (0.054)	0.257*** (0.080)	0.155 (0.095)	0.126* (0.066)	0.277*** (0.094)	-0.017 (0.117)	0.111 (0.118)	0.071 (0.148)	0.071 (0.148)	
자유무역협정 발효 2년 후	0.112** (0.051)	0.271*** (0.078)	0.123 (0.082)	0.115* (0.062)	0.298*** (0.082)	0.052 (0.107)	0.061 (0.100)	0.177 (0.136)	0.177 (0.136)	
자유무역협정 발효 3년 후	0.109** (0.053)	0.284*** (0.077)	0.095 (0.083)	0.098 (0.064)	0.308*** (0.090)	0.120 (0.107)	-0.008 (0.101)	0.310** (0.135)	0.310** (0.135)	
자유무역협정 발효 4년 후	0.152*** (0.059)	0.416*** (0.092)	0.080 (0.086)	0.070 (0.070)	0.432*** (0.107)	0.255** (0.120)	-0.039 (0.107)	0.469*** (0.154)	0.469*** (0.154)	
자유무역협정 발효 5년 이상 후	0.056 (0.066)	0.310*** (0.070)	-0.200** (0.095)	0.020 (0.078)	0.314*** (0.085)	0.616*** (0.126)	-0.339*** (0.116)	0.824*** (0.156)	0.824*** (0.156)	
총 관측치	527,982	527,982	527,982	40,572	40,572	40,572	40,572	40,572	40,572	
국가조항 개수	30,297	30,297	30,297	2,254	2,254	2,254	2,254	2,254	2,254	
추정방법	PPML	PPML	PPML	PPML	PPML	PPML	PPML	PPML	PPML	
인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국가조항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각 국가 로그 GDP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 오차임(\*\*\*)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반면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차이는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교역효과의 동태적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의 (2)열을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발효 3년 전부터 약 13%의 유의미한 교역증가 효과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교역증가 폭이 더 늘어나서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5년 이상이 지나면 약 31%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교역증가 폭을 나타낸다. [표 3-6] (1)열의 결과가 평균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추정한 것이라고 할 때, 최고 수준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증가 효과는 거의 전 기간에 걸쳐 평균 수준 자유무역협정 무역증가 효과의 두 배를 상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표 3-2]의 (1)열과 (2)열의 비교에서 확인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1)

[표 3-6]의 (3)열에서는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동태적 교역효과를 WTO+ 조항 수준의 교역효과와 WTO-X 조항 수준의 교역효과로 나누어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시기에 두 조항 수준의 교역효과가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지만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4년 이후부터는 WTO-X 조항 수준이 교역증가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별히 자유무역협정 발효 5년 이후 시기에서

- 
- 29) 2002년 이후로 기간을 한정하여 같은 회귀분석을 하면 평균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양(+)의 교역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여 5년 이상이 지난 시기에도 자유무역협정이 상당히 크고 유의미한 양(+)의 교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표 3-6] (1)열에서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자유무역협정의 양(+)의 교역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주로 1992~97년 시기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들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들은 2002년 이후에는 모두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5년 이상이 지난 자유무역협정들로 포착되므로 국가조항 고정효과를 통제하고 있는 [식 3-3]을 이용한 회귀분석에서 자유무역협정의 동태적 교역효과 추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0) 앞서 [표 3-2] 패널 A의 (1)열에서 같은 기간 평균적인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가 효과는 약 7%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표 3-6] (1)열에서 추정된 자유무역협정 발효 당해 연도부터 자유무역협정 발효 5년 이상 후의 교역효과를 가장 평균한 값에서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전 시기의 교역효과를 가장 평균한 값을 뺀 값이라고 볼 수 있다.
- 31) 앞서 [표 3-2] 패널 A의 (2)열에서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준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가 효과는 약 20%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표 3-6] (2)열에서 추정된 자유무역협정 발효 당해 연도부터 자유무역협정 발효 5년 이상 후의 교역효과를 가장 평균한 값에서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전 시기의 교역효과를 가장 평균한 값을 뺀 값이라고 볼 수 있다.

는 전체 자유무역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의 대부분이 주로 WTO-X 조항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고려할 때, 앞의 [표 3-2]의 (4)열에서 WTO+ 조항 수준의 평균 교역증가 효과보다 WTO-X 조항 수준의 평균 교역증가 효과가 더 크고 유의하게 나왔던 것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5년 혹은 그 이상의 중장기 효과가 더 많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WTO-X 조항 수준 교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주로 장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WTO+ 조항들과 비교했을 때 WTO-X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협정 당사국들에게 더 큰 제도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표 3-6] (3)열의 회귀분석 결과는 WTO-X 조항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정 당사국들의 무역 조정 관련 비용이 커지므로 무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렇게 WTO-X 조항 수준의 교역효과가 발현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표 3-2]부터 [표 3-5]까지의 결과들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대체로 WTO-X 조항의 수준이 전반적인 자유무역협정의 교역효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WTO+ 조항들에 비해 WTO-X 조항에 대한 협의가 더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 많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교역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WTO-X 조항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의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표 3-6] 패널 A에서 설명한 주요 결과는 분석 대상을 교역량 기준 상위 48개국으로 좁혔을 때도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관련 회귀분석 결과는 [표 3-6] 패널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 소결

본 장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8~10년 제외) 전 세계 196개국의 양자간 교역자료와 지금까지 WTO에 통보된 261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 데이터를 이용하여 WTO+/WTO-X 구성요소를 토대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depth)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별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교역효과를 가져온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양(+)의 교역효과는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특히 개도국의 수출 증대 관점에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동태적 효과 분석에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WTO-X 구성요소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일수록 유의미한 양(+)의 교역효과가 더 오래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도 역시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 제4장



#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상위 구성요소의 재분류: 주성분 분석
2. 상위 구성요소 주요 특징 및 교역과의 관계
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 1. 상위 구성요소의 재분류: 주성분 분석

본 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개별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고유의 특성과 유형을 가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52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을 추정할 경우 추정방법론상의 문제점 및 해석상의 한계점이 예상되므로 우선 세부 구성요소를 총 9개 상위 구성요소로 재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표 4-1 참고).<sup>32)</sup> 구성요소의 재분류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가장 최신의 자료를 정치한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 DESTA(The Design of Trade Agreements)<sup>33)</sup>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상위 구성요소는 시장접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공공조달, 경쟁, 표준, 무역구제조치, 비교역이슈<sup>34)</sup>이며 각각의 개념, 자유무역협정 포함 동향과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이들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

32) DESTA는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를 총 10개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그중 분쟁해결은 본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쟁해결 요소는 각 구성요소의 법적구속력(혹은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별도의 구성요소로 분류하지 않았다.

33) DESTA 프로젝트 팀은 1948년부터 2016년까지 체결된 790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구성요소를 크게 10개 분야(시장접근, 투자, 서비스, 지재권, 경쟁, 공공조달, 표준, 무역구제조치, 분쟁해결, 비교역이슈)로 구분하여 해당 구성요소별 수준과 법적강제성 여부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34) 비교역이슈는 대부분 WTO-X로 구성되며 제3장에서 이미 교역에 대하여 유의한 효과가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교역이슈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들이 매우 이질적인 관계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4-1.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분류

구분	상위 구성요소 (DESTA 분류기준)	세부 구성요소 (World bank 기준)
1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조업 관세자유화
		농업 관세자유화
		수출세
2	서비스(Services)	GATS
3	투자(Investment)	TRIMs
		투자
4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지식재산권
5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공공조달
6	경쟁(Competition)	국영기업
		국가보조
		경쟁정책
7	표준(Standards)	SPS
		TBT
8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Instruments)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9	비교역이슈(Non-Trade Issues)	통관
		반부패
		환경법
		노동시장규제
		자본이동
		소비자보호
		데이터 보호
		농업 기술지원
		입법절차 통일
		시청각
		시민보호
		혁신정책
문화협력		

표 4-1. 계속

구분	상위 구성요소 (DESTA 분류기준)	세부 구성요소 (World bank 기준)
9	비교역이슈(Non-Trade Issues)	경제정책 대화
		교육훈련
		에너지
		금융지원
		보건
		인권
		불법이민
		불법약물
		산업협력
		정보사회
		광업
		자금세탁
		원자력 안전
		정치적 대화
		공공행정
		지역협력
		공동연구
		중소기업
		사회 문제
		통계
조세		
테러리즘		
비자와 인력이동		

자료: DESTA, <https://www.designoftradeagreements.org/downloads/>(검색일: 2018. 10. 15)를 토대로 저자 작성.

즉 이하에는 DESTA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9개 구성요소<sup>35)</sup>에 대해 주 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하여 새로운 지표(PCA 지표)를 구축하고, 새로이 생성된 PCA 지표를 활용하여 9개 구성요소의 개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35) [표 4-1] 참고.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52개 세부 구성요소 각각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는 추정모형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가 높은 다수의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다중공선성과 자유도 하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52개 구성요소를 9개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그룹에 속한 구성요소를 하나의 지표로 요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그룹의 지표가 해당 그룹에 속한 구성요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되었으나, 그 지표의 계수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거나 추정 결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관심 그룹에 속한 구성요소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되, 여타 그룹에 속한 구성요소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각 그룹에 속한 구성요소들의 특성을 하나의 지표로 요약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PCA)을 이용한다.<sup>36)</sup>

우선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 52개를 몇 개의 그룹으로 재분류한 후, 각 그룹에 속한 구성요소를 하나의 지표로 요약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분류기준은 DESTA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10개로 구성했다. 다만 52개 구성요소 중 DESTA 분류체계의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그룹에 속하는 구성요소는 없어 분쟁해결 구성요소는 제외했다. 본 연구에서는 52개 구성요소의 법적 구속력과 분쟁절차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의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고 있으므로 분쟁해결 구성요소를 제외시키는 데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번 그룹(서비스)과 5번 그룹(공공조달)에는 각각 한 개의 구성요소만

36) 다른 방법으로는 모든 구성요소를 설명변수에 포함시키는 대신 교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일부 구성요소들은 이미 WTO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선언적인 의미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성요소들이 교역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의미 있는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모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교역에 경제학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구성요소를 모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설명 교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구성요소와 상관관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수 제외에 따른 문제(omitted variable problems)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기로 한다.

포함되므로 하나의 지표를 도출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서비스, 공공 조달, 분쟁해결 구성요소를 제외한 여타 그룹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통해 하나의 지표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하에서는 각 그룹에 속한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들을 하나의 지표로 요약하는 데 사용한 주성분 분석 과정을 살펴본다.<sup>37)</sup> 주성분 분석에 관한 간략한 서술은 Jolliffe(2002)에서 인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다수의 변수를 기존의 변수가 가지고 있는 변동(variation)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저차원의 변수로 요약하는 수학적 기법이다. 이 기법을 이용하여 상관관계가 없는 몇 개의 주성분(principal components)을 도출할 수 있으며, 기존 변수의 변동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순서대로 주성분이 나열되므로 상위 몇 개의 주성분을 선택함으로써 자료의 차원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성분 분석 방식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그룹에 속하는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들의 공분산행렬을 도출한 다음, 공분산행렬에 해당하는 고유값(eigen values)과 각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벡터(eigen vectors)를 계산한다. 각 고유벡터와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를 곱하면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를 선형결합하는 하나의 지표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고유값이 클수록 기존의 자료에 있는 변동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고유값이 산출된 경우 통상 1보다 큰 고유값을 이용하여 주성분을 도출하게 된다.<sup>38)</sup>

52개의 구성요소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므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산출된 지표 역시 0~1사이의 값을 갖도록 스케일을 조정하였다. 아울러 2번 그룹과 5번 그룹의 경우 각 그룹에 하나의 지표만 포함되므로 별도의 주성분 도출 과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표현상 통일성을 위해 각 구성성분을 지표처럼 표기하였다.

---

37) Jolliffe(2002).

38) 주성분 분석 결과와 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은 부록에 기술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자료는 크게 두 종류이다. 하나는 각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 또는 1의 값을 갖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각 구성요소가 법적구속력을 갖되 분쟁해결절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을, 분쟁해결절차 대상에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2의 값을 갖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0, 1, 2의 값이 스케일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각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주성분 분석을 위해 후자 변수는 2개로 쪼갰다.

우선 기존 변수가 1 또는 2의 값을 갖는 경우 1을, 나머지는 0을 갖는 변수로 구성했다. 즉 분쟁해결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구속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변수를 생성하였다. 한편 기존 변수가 2의 값을 갖는 경우 1을, 나머지는 0의 값을 갖는 변수를 생성했는데, 이는 법적구속력이 분쟁해결절차로 뒷받침되는지를 기준으로 생성한 변수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변수를 대상으로 각각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각 그룹별 지표표를 생성하였다.

먼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 지표의 기술적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WTO가 출범한 직후부터 2015년까지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인 2002년부터 2015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구성요소 포함 여부, 법적구속력 여부 및 분쟁해결절차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지표에서 평균과 표준편차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주성분 분석(전체 국가 대상)

지표	지표	1995~2015, 전체 국가 (관측치: 785,908)		2002~15, 전체 국가 (관측치: 526,51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포함 여부	시장접근	0.0835	0.2705	0.1047	0.2995
	서비스	0.0637	0.2443	0.0781	0.2683
	투자	0.0386	0.1569	0.0484	0.1755
	지식재산권	0.0482	0.2061	0.0663	0.2413
	공공조달	0.0489	0.2156	0.0655	0.2475
	경쟁	0.0577	0.2202	0.0743	0.2488
	표준	0.0634	0.2354	0.0798	0.2625
	무역구제조치	0.0735	0.2562	0.0931	0.2857
	비교역이슈	0.0321	0.1298	0.0408	0.1468
법적 구속력 여부	시장접근	0.0815	0.2656	0.1027	0.2955
	서비스	0.0471	0.2119	0.0603	0.2381
	투자	0.0293	0.1432	0.0370	0.1608
	지식재산권	0.0446	0.1999	0.0620	0.2347
	공공조달	0.0406	0.1974	0.0541	0.2261
	경쟁	0.0562	0.2187	0.0723	0.2469
	표준	0.0441	0.1991	0.0566	0.2255
	무역구제조치	0.0686	0.2439	0.0885	0.2758
	비교역이슈	0.0131	0.0771	0.0166	0.0869
분쟁 해결 포함 여부	시장접근	0.0815	0.2656	0.1027	0.2955
	서비스	0.0471	0.2118	0.0603	0.2380
	투자	0.0289	0.1429	0.0366	0.1604
	지식재산권	0.0434	0.1970	0.0603	0.2315
	공공조달	0.0404	0.1968	0.0537	0.2254
	경쟁	0.0532	0.2111	0.0678	0.2374
	표준	0.0424	0.1932	0.0540	0.2180
	무역구제조치	0.0535	0.2149	0.0662	0.2391
	비교역이슈	0.0164	0.0981	0.0207	0.1100

자료: 저자 작성.

전체 196개국에는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일방적 특혜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교역을 전혀 하지 않는 국가조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을 2015년 기준으로 교역액 100억 달러 이상인 상위 48개국(전 세계 교역의 99.2%)으로 제한하고 분석 기간은 전체 기간과 2002년부터 2015년까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2002년 이후로 기간을 한정된 경우 모든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늘어나 자유무역협정의 포함 범위가 넓어졌을 뿐 아니라 법적구속력이나 분쟁절차 포함의 관점에서도 수준이 높아졌다.

표 4-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주성분 분석(상위 48개국 대상)

지표	지표	1995~2015, 상위 48개국 (관측치: 47,376)		2002~15, 상위 48개국 (관측치: 31,58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포함 여부	시장접근	0.2425	0.4178	0.2970	0.4450
	서비스	0.2009	0.4006	0.2482	0.4320
	투자	0.1593	0.3354	0.1944	0.3596
	지식재산권	0.2198	0.4023	0.2821	0.4434
	공공조달	0.2344	0.4236	0.2862	0.4520
	경쟁	0.2220	0.4065	0.2696	0.4320
	표준	0.2174	0.3985	0.2674	0.4267
	무역구제조치	0.2394	0.4253	0.2945	0.4542
	비교역이슈	0.1275	0.2527	0.1574	0.2737
법적 구속력 여부	시장접근	0.2423	0.4175	0.2966	0.4446
	서비스	0.1835	0.3871	0.2242	0.4171
	투자	0.1455	0.3300	0.1758	0.3539
	지식재산권	0.2112	0.3933	0.2709	0.4342
	공공조달	0.1916	0.3936	0.2325	0.4224
	경쟁	0.2208	0.4054	0.2678	0.4306
	표준	0.1892	0.3863	0.2306	0.4153

표 4-3. 계속

		1995~2015, 상위 48개국 (관측치: 47,376)		2002~15, 상위 48개국 (관측치: 31,584)	
법적 구속력 여부	무역구제조치	0.2380	0.4244	0.2924	0.4533
	비교역이슈	0.0835	0.1979	0.0985	0.2116
분쟁해결 포함 여부	시장접근	0.2423	0.4175	0.2966	0.4446
	서비스	0.1828	0.3865	0.2233	0.4164
	투자	0.1455	0.3301	0.1757	0.3540
	지식재산권	0.1971	0.3819	0.2516	0.4227
	공공조달	0.1899	0.3922	0.2299	0.4208
	경쟁	0.2017	0.3887	0.2403	0.4110
	표준	0.1775	0.3711	0.2142	0.3970
	무역구제조치	0.2200	0.4128	0.2673	0.4409
	비교역이슈	0.1063	0.2555	0.1246	0.2726

자료: 저자 작성.

일반적으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표가 기존 변수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KMO) 지수가 활용된다. 3번(투자)과 8번(무역구제조치)의 경우 KMO 지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분상관 주성분 분석(polychoric PCA)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이항변수로부터 정규분포하는 연속된 잠재변수의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기법이 이용되었다.

표 4-4. 다분상관 주성분 분석

		1995~2015, 전체 국가 (관측치: 785,908)		2002~15, 전체 국가 (관측치: 526,51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포함여부	투자	0.0416	0.1638	0.0522	0.1831
법적 구속력 여부	투자	0.0311	0.1478	0.0392	0.1660
	무역구제조치	0.0690	0.2444	0.0889	0.2763
분쟁해결 포함 여부	투자	0.0305	0.1471	0.0386	0.1653
	무역구제조치	0.0540	0.2158	0.0667	0.2399
		1995~2015, 상위 48개국 (관측치: 47,376)		2002~15, 상위 48개국 (관측치: 31,584)	
포함여부	투자	0.1656	0.3402	0.2024	0.3644
법적 구속력 여부	투자	0.1490	0.3329	0.1802	0.3569
	무역구제조치	0.2380	0.4245	0.2925	0.4533
분쟁해결 포함 여부	투자	0.1489	0.3329	0.1800	0.3569
	무역구제조치	0.2201	0.4129	0.2675	0.4410

자료: 저자 작성.

실제 재추정 결과, 기존의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된 3번과 8번 그룹의 지표는 다분상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도출된 지표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추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들이 이항변수로 표현되어 있고 이를 하나의 지표로 요약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건성 검증(robust check) 차원에서 다분상관 주성분 분석을 검토해볼 수 있다.

표 4-5. 일반 주성분 분석과 다중상관 주성분 분석 지표 간 상관관계

	지표	주성분 분석 지표 간 상관관계
포함여부	투자	0.9949
법적구속력 여부	투자	0.9967
분쟁해결 포함 여부	투자	0.997
포함 여부	무역구제조치	1
법적구속력 여부	무역구제조치	0.9999
분쟁해결 포함 여부	무역구제조치	0.9999

자료: 저자 작성.

## 2. 상위 구성요소의 주요 특징 및 교역과의 관계

### 가. 시장접근(Market Access)

시장접근(Market Access)은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각 분야별 관세화·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기도 한다. 시장접근은 WTO 핵심 의제 중 하나이며 통상적으로는 농업, 상품무역, 서비스 세 분야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어 농업과 제조업 시장접근에 국한하여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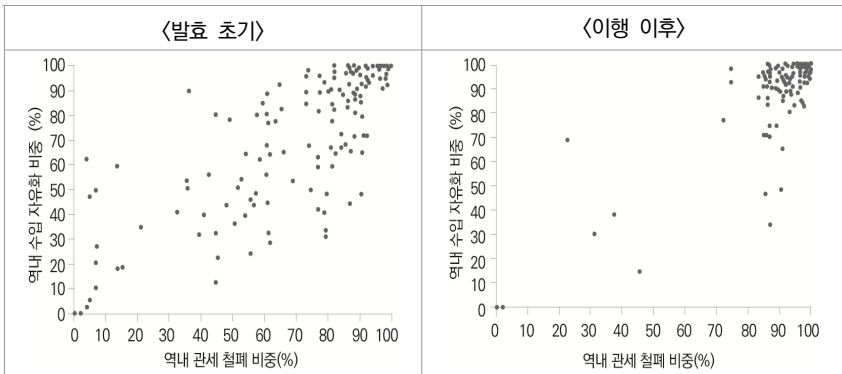
시장접근에 대한 다자적 논의 성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된 GATT 8차 UR 협상에서 관세인하 방식, 관세양허 확대 문제, 고관세 및 가공도별 관세율 격차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평균관세율 33% 이상 인하, 일부 품목의 무세화(zero-for-zero-scheme)가 이루어졌다.<sup>39)</sup> 특히 농산물 분야는 국가간의 관세 감축 목표 및 기간, 관세화 대상품목 등에 이견이 존재하여 합의가 어려웠으나 UR 협상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였다. WTO 출범 이후에도 시장접근의 개선

39) 권영민 외(2001), p. 31.

을 위한 다자적 논의는 지속되어왔다.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다자주의 원칙이 약화되면서 각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국의 경제상황 및 민감성을 반영하는 시장접근 규정을 도입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상품무역협정 시장접근 조항은 WTO 원칙과는 달리 최혜국대우를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접근의 개선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rawford (2012)는 자유무역협정 시장접근 조항을 통한 관세인하가 역내 무역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시점과 이행 이후를 비교하면 관세 인하가 진행될수록 역내 수입자유화 비중도 커진다는 것이다. [그림 4-1]은 관세자유화와 역내 수입자유화 정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발효 시점에서 자유무역협정별 관세자유화 수준은 협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행 종료 시점에서는 몇몇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자유화와 역내 수입자유화 모두 85% 이상이 이루어지고 두 요소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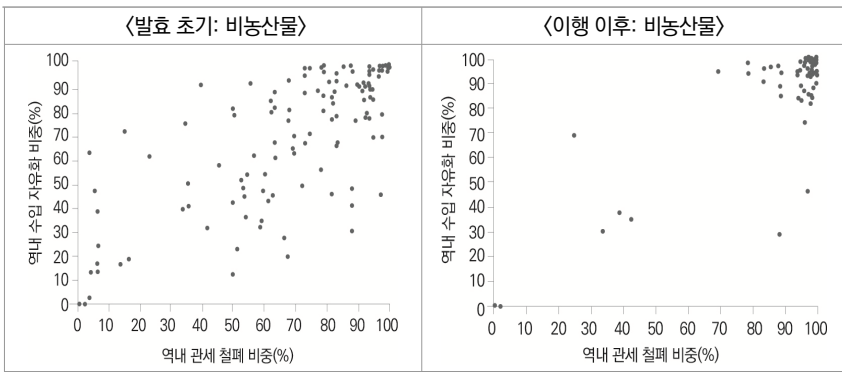
그림 4-1. 역내 수입자유화 비중과 관세자유화 간의 상관관계(발효시점 vs. 이행종료)



자료: Crawford(2012), p. 11, 그림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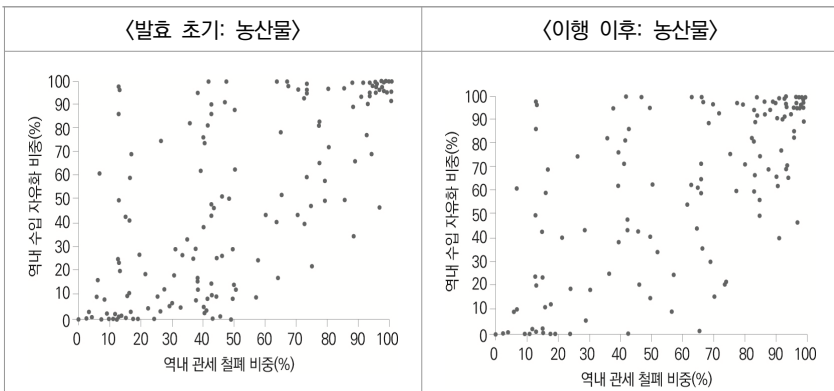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비농산물과 농산물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비농산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이행 이후에 관세자유화와 역내 수입자유화가 90% 이상 이루어지고 상관관계도 매우 높은 데 반해, 농산물에서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약하게 나타난다. 농산물의 관세자유화 및 수입자유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민감 분야인 농산물의 경우 비농산물에 비해 관세 인하와 그에 따른 수입자유화가 더욱 낮은 수준에서 느리게 진행됨을 보여준다.

그림 4-2. 역내 수입자유화 비중과 관세자유화 간의 상관관계(비농산물)



자료: Crawford(2012), p. 11, 그림 인용.

그림 4-3. 역내 수입자유화 비중과 관세자유화 간의 상관관계(농산물)



자료: Crawford(2012), p. 11, 그림 인용.

자유무역협정 상품무역협정 시장접근 조항은 관세 인하와 더불어 개방성 정도를 나타내는 시장접근 혜택의 확대 조항을 포함한다. 전체 자유무역협정의 25~37% 정도가 MFN-type 조항과 제3국의 추가적 가입 승인 조항이 포함된 '다자화 가능 유형'이다.<sup>40)</sup> 자유무역협정의 개방성은 잠재적으로 시장접근 향상과 직결되므로 중요한 요소이다.

Crawford(2012)의 연구를 인용하지 않아도 시장접근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직관적으로 명확하다.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 관세 인하를 통해 상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특혜는 배타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양자 교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만 교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개방 수준과 교역품목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미 관세 수준이 낮아 추가적인 특혜폭이 작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개도국의 경우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 수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서비스(Services)

서비스(Services) 관련 조항은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원칙과 의무를 규정하며 부속서 형태로 각국의 유보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는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분야는 별도 챕터 또는 부속서로 포함된다.

서비스 분야는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근거하고 있다. 서비스는 주요 협상 의제 중 하나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다자 차원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에 서비스 협정을 주도하는 국가(미국, 호주 등)를 중심으로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

40) Crawford(2012), p. 26.

Agreement)을 개시하여 진행 중이다.

서비스의 무역 형태(mode)<sup>41)</sup>는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이며, 최혜국(MFN: Most-Favoured-Nation)대우와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최혜국대우란 교역 상대국을 모두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을 의미하는데,<sup>42)</sup> 단 각 회원국이 예외목록에 명시한 분야에 대해서는 MFN 대우의 적용 예외가 인정된다. 내국민대우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을 의미한다.<sup>43)</sup>

서비스 관련 무역장벽은 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경우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접근 제한, 자격요건, 인허가 문제 등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운송·통신 분야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 인력이동을, 개도국은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합작요건에 지분제한, 금융 기관 설립 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 내국인 고용 의무 부과 등을 제한한다.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조항의 증가와 함께 협정문의 유형과 내용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협정의 유형은 크게 GATS 유형, NAFTA 유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GATS 유형은 GATS를 준용하면서 서비스 양허안을 제시하는 유형(positive list 방식, 열거주의)이고, NAFTA 유형은 본문에서 GATS 조문을 준용하고 유보리스트를 도입하는 유형(negative list 방식, 포괄주의)이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NAFTA 유형의 서비스 챕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캐나다, 호주, 중남미 국가 등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NAFTA 유형의 서비스 챕터를 구성한다. 과거에는 GATS 유형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

41) GATS 제1조.

42) GATS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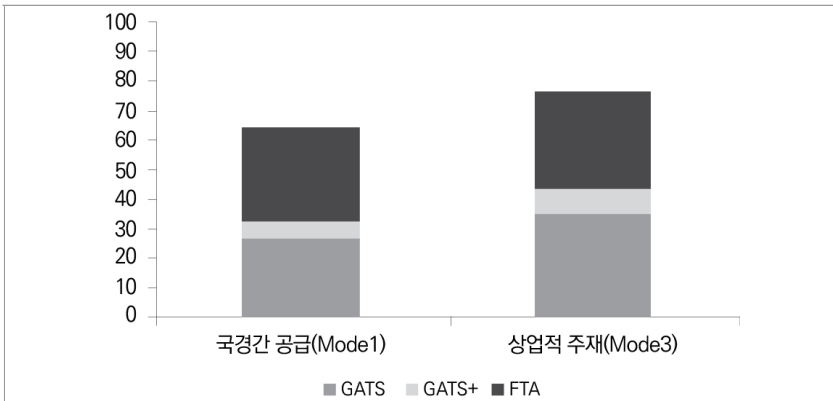
43) GATS 제17조.

중반 이후부터는 NAFTA 유형이 증가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조항의 수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Roy(2011)는 WTO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GATS+ 조항의 포함 여부와 서비스 조항의 범위(세부 분야 포함비중)를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조항은 GATS+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GATS 규정 수준보다 높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경간 공급(Mode1)과 자연인의 이동(Mode3)에 GATS+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4 참고). 경제 수준별로는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은 GATS+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GATS+ 조항이 개도국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며,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챕터를 통해 선진국 서비스 개방의 차이를 상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4)</sup>

그림 4-4. 세부 서비스 분야 포함 비중과 GATS+ 조항의 포함 여부

(단위: %)



주: 왼쪽 축은 서비스 세부 분야의 포함 비중임(% of sub-sector).  
 자료: Roy(2011), p. 7.

44) Roy(2011), p. 12.

서비스 자유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효율적인 서비스 수입재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와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는 유형(Mode)별 및 세부 산업별로 특성이 상이하여 상품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으며, 서비스 자유화가 상품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다만 서비스협정이 상품교역에 미치는 연관성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비스 자유화는 양국간 교역구조를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효과와 동시에 서비스 유형에 따라 투자와 마찬가지로 상품수입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투자(Investment)

투자(Investment) 챕터는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자유무역협정의 투자 챕터는 본문에 투자 관련 원칙을 규정하고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 유보리스트를 부속서에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자유무역협정 투자 조항의 주요 내용은 투자의 정의, 투자자유화, 투자보호 및 투자촉진, 예외, 투자협력, 분쟁해결 등이다. 자유무역협정 투자 조항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한 Chornyi, Nerushay, and Crawford(2016)에 따르면 WTO 출범과 GATS가 체결된 이후부터 자유무역협정에 투자 챕터가 활발하게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260개 자유무역협정 중 133개(52%)의 자유무역협정이 투자 챕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대부분(90%)은 투자 챕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와 관련된 조항이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4-6. 자유무역협정 유형별 투자챗터 포함 비중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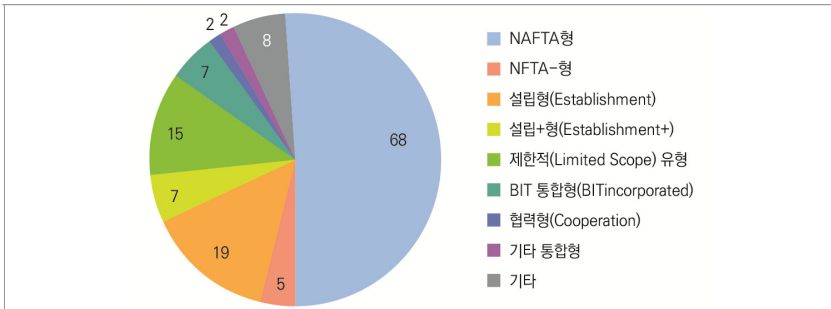
자유무역협정 유형	투자챗터 포함 여부			투자챗터 포함 비중(%)
	투자챗터 포함	투자챗터 미포함	총계	
상품 및 서비스	116	13	129	90
상품	17	114	131	13
총	133	127	260	52

자료: Chornyi, Nerushay, and Crawford(2016), p. 9 인용.

자유무역협정 투자챗터의 유형은 개방 수준에 따라 NAFTA, NAFTA-형, 설립(Establishment)형, 설립(Establishment)+형, 협력형(Cooperation), 제한적(Limited Scope) 유형, BIT 통합형(BIT incorporated)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4-5 참고). 가장 규정 수준이 높고 일반적인 유형은 NAFTA 유형으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사전/사후 설립요건, 최소대우기준(minimum standard treatment), 수용(expropriation), ISDS 등을 포함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남미, 아세안 국가들, 일본, 한국이 체결하는 FTA의 투자챗터는 대부분 NAFTA 유형이다. 낮은 수준의 투자 챗터인 협력형은 투자 관련 기본적인 조항만을 포함하며 전체 자유무역협정의 극소수가 이러한 유형의 투자 챗터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투자챗터 유형별 비중

(단위: 건)



자료: Chornyi, Nerushay, and Crawford(2016), p. 10 인용.

투자자유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역으로 무역자유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와 상품무역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투자의 유형은 크게 수평적 투자와 수직적 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외투자를 통해 본국과 유사한 최종재를 생산하는 경우를 수평적 투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를 통해 최종재 생산공정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를 수직적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도 수평적 투자와 수직적 투자를 구분할 수 있는데 수평적 투자는 시장접근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데 비해 수직적 투자는 저렴한 생산요소의 활용에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Blonigen and Piger(2014)를 참고하면,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투자는 수평적 투자의 한 유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수평적 투자를 하는 이유로는 높은 운송비 절감, 수요에의 적기 대응, 현지의 투자 인센티브 등을 들 수 있다.<sup>45)</sup> 문헌 또는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투자 형태 및 목적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나 실질적으로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과정 행태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투자자유화로 상대국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경우 수평적 투자의 확대는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투자의 확대를 가져와 과거 수출하던 상품을 해당국 투자를 통해 직접 생산 조달함으로써 상대국의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최종재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상대국의 투자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수직적 투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생산요소 활용형 투자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형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본국으로부터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협정 상대국의 경제발전 정도, 상대국 시장의 잠재력 등에 따라 투자의 유형이 결정되며 교역대상 상품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유화의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

45) 이 부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수영 박사의 서면 참고자료를 활용한 것임을 밝힌다.

## 라.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의장권, 상표권 등으로 세분화되고,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세분화된다.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는 지식재산의 창출에 기여하고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6)</sup>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국가간 보호 수준과 규제의 차이로 분쟁의 여지가 많고, 모방과 유통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재권 보호 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이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sup>47)</sup>가 설립되면서 여러 지식재산권 협약(총 26개)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WIPO하의 지식재산권 협약은 집행과 분쟁해결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국제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UR 협상을 통하여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체결되었다. TRIPs는 기존의 모든 다자간 지식재산권 협정을 포괄하는 강력한 국제규범이며 분쟁해결절차가 포함된 강제력 있는 협정이기도 하다. TRIPs 협정은 총 7개 지식재산권(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 보호)을 대상으로 하며 지재권 물품의 통관절차, 위조 상품, 국경조치 등 반경쟁 관행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TRIPs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진국들은 TRIPs의 지재권 보호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개도국에게 지재권 보호 규정

---

46) 외교부(2016), p. 250.

47) 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다.

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sup>48)</sup>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조항은 일반적으로 WTO TRIPs를 준용하면서도 보호기간 연장 등 TRIPs+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TRIPs 이후 쟁점이 되고 있는 광범위한 범위의 지식재산권 이슈(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 음반 조약,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분쟁, 의약품 관련 조항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조항은 ①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해 규정하는 자유무역협정 ② 특정 지식재산권 유형을 언급하는 자유무역협정 ③ 의약 특허 조항까지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분류 가능하다.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조항은 新유형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의 대상 확대,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GI) 보호 강화, Grace Period 연장, 강제실시권 발동요건 강화,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 등 보다 강화된 지재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lsig and Surbeck(2016)는 1947년부터 2016년까지 체결된 706개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조항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1985년 이후부터 지재권이 자유무역협정에 본격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33.6%의 자유무역협정에, 2010년 이후에는 87.7%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단순 선언적 조항보다 구체적인 특정 조항의 포함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sup>49)</sup> 이는 지재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재권 규제의 범위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조항의 보호 수준, 집행 수준, WTO와의 일치성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북미 지역 국가들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재권 조항을 도입하는 반면, 개도국이나 극빈 개도국끼리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낮은 수준의 지재권 조항을 도입한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 분야는 경제 수준별로 자유무역협정에서 협의 수준의 간극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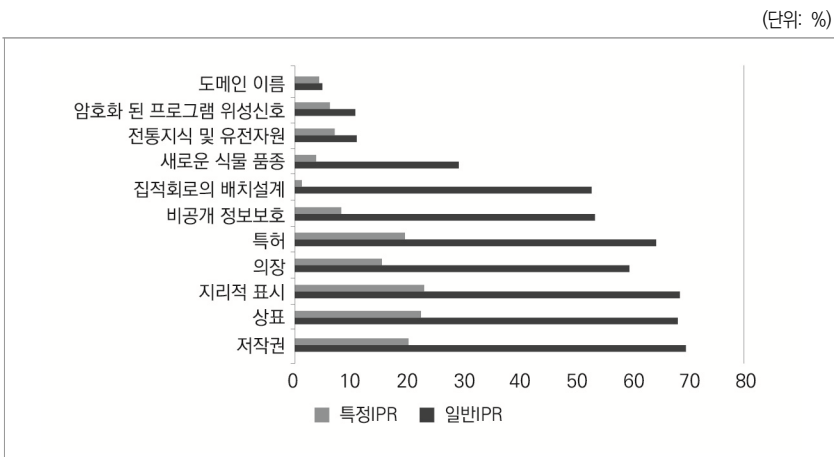
48) 조미진, 박현정(2007), p. 2.

49) Elsig and Surbeck(2016), p. 6.

큰 분야이다. 주목할 점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지재권 조항 수준이 선진국간,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조항 수준보다 높다는 점이다.<sup>50)</sup>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재권의 투자 및 기술 유치 기능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조항에서는 TRIPs 협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지재권 유형을 포함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새로이 포함하는 지식재산의 유형은 ① 새로운 식물 품종 ② 암호화된 프로그램 위성 신호 ③ 도메인 이름 ④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재권의 포함 비중은 60%를 상회하는 데 반해 신규로 포함되는 지재권 이슈의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다(그림 4-6 참고).

그림 4-6. 지식재산권 유형별 자유무역협정 포함 비중



자료: Elsig and Surbeck(2016), p. 11.

지재권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는 2000년대에는 EU, EFTA, 미국이 가장 큰 축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EFTA와 EU 허브 사이에 EU의 지식재산권

50) Elsig and Surbeck(2016), p. 7.

규정이 확산되면서 싱가포르, 칠레, 일본 등도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하였다.<sup>51)</sup>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의 발전도 자유무역협정의 지재산권 보호 수준 향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지재산권이 교역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도 정반대의 논의가 있어왔다. Maskus and Penubarti(1995)나 Ivus(2010, 2015)는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반면, 초기 연구들은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거나 (Smith 1999) 혹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Ferrantino 1993). 지식재산권 조항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검증된 규범체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개도국들은 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도국의 경제수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존재한다.

Lin and Lincoln(2018)이 미국 Census Bureau의 the confidential Longitudinal Business Database(LBD)를 분석한 결과,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상대국의 지식재산권이 강화될수록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영향은 기본적으로 독립적(arm's length) 거래에서 발생했으며 오히려 자회사와의 거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상대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미국과 관계가 깊을수록 그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2)</sup>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국의 지재산권 강화가 수출상품에 체화된 기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할 유인이 된다. 특히 자회사보다는 독립적인 기업과의 거래에서 그 유인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느슨한 지재산권 보호가 오히려 모방을 통한 기술 확보에 유리한데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이러한 모방을 위한 상품 수입 유인 감소,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Maskus and Ridley(2016) 역시

---

51) Valdés and McCann(2014), p. 38, Chart 7 참고.

52) Lin and Lincoln(201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ffect the pattern of trade," 온라인자료 (검색일: 2018. 11. 28).

지재권이 강화되는 경우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지재권이 강화되면서 전보다 수입재의 지식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입국 입장에서는 수입을 확대할 유인이 발생한다. 하지만 동시에 고 기술 제품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오히려 수출을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마.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공공조달은 일반적으로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과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정부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공조달의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며 구매 대상은 물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이다. 공공조달은 국가간 조달시스템의 차이가 크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관행에 의존하는 분야이다. 조달시장이 폐쇄적일수록 국내경제의 효율성은 저해되고 조달 과정의 불투명성은 부패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조달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 및 관행의 방지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의 개방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공공조달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공조달에 관련된 WTO 협정은 GATT, GATS, WTO-GPA이다. 그중 GATT와 GATS에서는 공공조달에 대해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sup>53)</sup> 따라서 동 협정에 의하면 공공조달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나 시장접근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sup>54)</sup> 때문에 다수의 WTO 회원국들은 공공조달 집행 과정에서 자국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우대혜택을 부여해왔다. 공공조달

---

53) GATT 제3조 8a항은 정부기관이 구매하는 상품의 조달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또는 조건에는 내국과 세 및 규칙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GATS 제13조 1항에서는 서비스의 공공조달에 대해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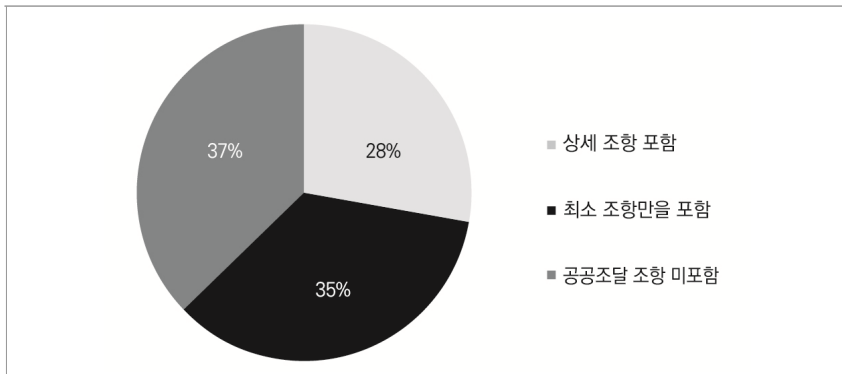
54) 단 정부가 수익을 바라며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이는 MFN과 내국민대우 등의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분야의 무역장벽은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금지, 국내기업 우대조치, 국내 산 사용요건, 국내 실적 요구, 기술이전 요건 등이며 그 밖에도 보이지 않는 관행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조달무역장벽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국간 협정인 WTO-GPA가 체결되었다. WTO-GPA는 입찰 및 낙찰 절차의 원칙, 정보의 투명성, 각국의 조달시장 양허,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WTO 이외에도 국제기구<sup>55)</sup>와 경제협력체<sup>56)</sup>들도 공공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수행해왔다.

복수국간(plurilateral) 협정인 WTO-GPA상의 의무는 가입국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GPA 미가입국은 양자채널을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한다. 139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조항을 분석한 Anderson *et al.*(2011)의 연구에 따르면 약 28%의 자유무역협정이 공공조달 상세 조항을 포함하며, 35%의 자유무역협정은 낮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하고, 37%의 자유무역협정은 공공조달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그림 4-7 참고).

그림 4-7. 공공조달 포함 수준에 따른 유형

(단위: %)



자료: Anderson *et al.*(2011),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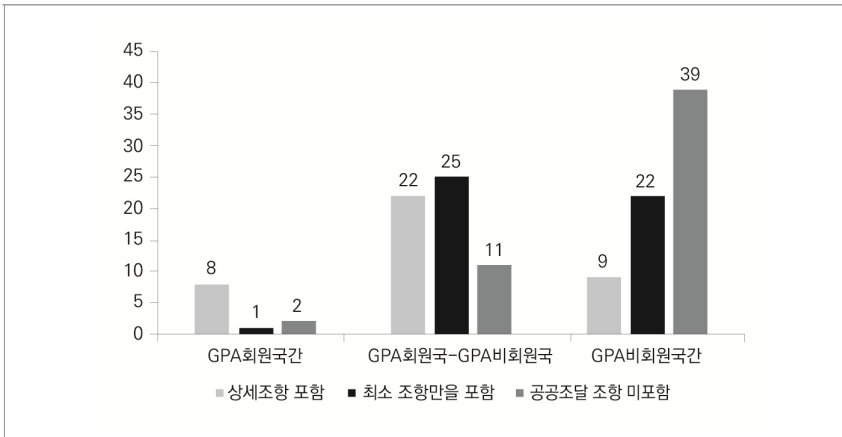
55) OECD는 조달시장 개방에 대한 회원국간 논의, 조달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56) APEC은 조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비구속적(non-binding)인 조달 원칙을 제정하고 회원국간에 공유한다.

[그림 4-8]은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의 GPA 가입 여부와 공공조달 조항의 수준을 보여준다. GPA 가입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대부분 상세 조항을 포함하는 공공조달 챕터를 채택하였고 GPA 가입국과 미가입국 간 자유무역협정도 대부분 공공조달 조항(상세 조항/최소 조항)을 두고 있다. GPA 미가입국간 자유무역협정에는 대부분 조달 조항이 없으나, 원칙 수준의 조달 챕터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GPA 가입 여부에 따른 공공조달 수준

(단위: 건)



자료: Anderson *et al.*(2011), p. 15.

자유무역협정 공공조달 챕터의 주요 내용은 ①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② 최혜국대우(MFN) ③ GPA에 따른 절차 조항 ④ 입찰 과정의 요건 ⑤ 분쟁해결절차 ⑥ 대응구매(offsets) 규제 ⑦ GPA 가입 ⑧ 향후 협상 ⑨ 조달절차 통합 ⑩ 협력 ⑪ 공동협의체 설립 등이다. 자유무역협정 공공조달 챕터는 기본적으로 GPA를 준용하여 마련되기 때문에 기본원칙과, 절차 조항, 투명성, 분쟁해결 등 대부분의 구성요소는 GPA 수준과 유사하고 WTO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은 낮다. 단 양허 범위나 수준에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경제 수준이나 상호 민

감 분야를 고려하여 양허기관이나 양허하한선을 조율하기도 한다.

GPA는 조달 관련 원칙을 제공하고 조달시장 확대와 조달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반면, 자유무역협정의 조달 조항은 GPA\_plus 조항과 시장접근,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규정의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sup>57)</sup> WTO와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며 교역 활성화를 통한 후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공공조달 조항 도입은 공공조달 입찰 과정 등에서의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차별을 없애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조달시장에의 접근성 개선은 시장개방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공공조달 조항의 도입은 수입의 증가로 이어진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공공조달 관련 규정의 도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Evenett(2003)의 지적과 같이 공공조달의 가장 큰 효과는 국내경쟁을 촉진하는 형태로 발생하는데, 실제 공공조달의 상당 부분은 국내에서 조달되며 해외로부터 조달되는 비중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 내 조달 비중 등 제한조건으로 인해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수입재를 국산재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바, 다소간의 수입제한적 요소도 존재할 수 있다.

Richard and Kono(2014)는 국내기업 편향적인 공공조달은 보편적 현상이나 그 편향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Shingal(2011)은 일본과 스위스의 1997~2003년간 공공조달 자료를 이용하여 상당한 자국편의(home bias)를 발견한 반면, Fronk(2015)는 미국과의 공공조달 협정 체결이 상대국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

57) Anderson *et al.*(2011), p. 72.

## 바. 경쟁(Competition)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유지하고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 경제정책이다. 경쟁정책의 주요 규제 대상은 가격 및 수요 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독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이다.<sup>58)</sup>

경쟁정책은 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경쟁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자유화의 정책목표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정책과 무역자유화정책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sup>59)</sup> 경쟁법이 경우에 따라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경쟁법을 역외로 확대 적용하기도 하고<sup>60)</sup> 경쟁법 집행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간접적인 보호무역 장벽으로 경쟁법을 활용한다. 또한 기업들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와 정부의 반경쟁적 무역조치, 각국의 상이한 규제 수준은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과 무역자유화를 저해한다.

이에 WTO와 국제기구 및 협력기관<sup>61)</sup>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참여국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아직 경쟁정책을 규율하는 다자간 협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이 심화 확대되고 다국적기업의 반경쟁행위 증가, 경쟁법의 역외적용 등 경쟁 분야에서 국가간 마찰이 증가하여 경쟁협력 및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경쟁 분야에서도 양자채널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자유무역

58) 외교부(2016), p. 431.

59) 윤미경, 김종근, 나영숙(1999), p. 33.

60)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하는 반경쟁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을 경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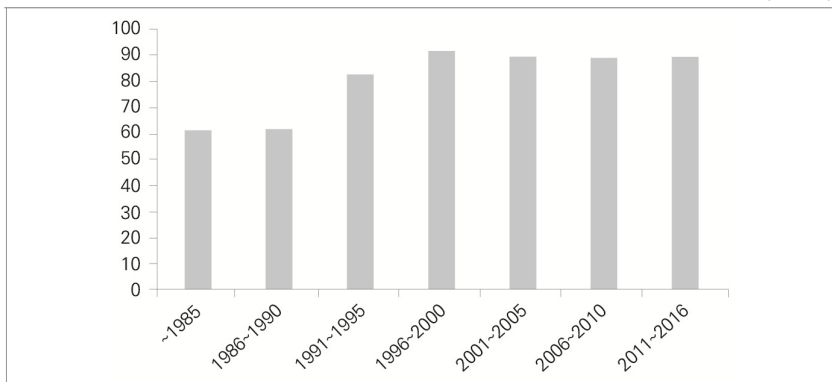
61) OECD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 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며, 국제 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법 전문 국제협의체이다. ASEAN은 2007년 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그룹(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을 설립하여 회원국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APEC은 경쟁정책과 제도개혁을 같이 도모하여 경쟁정책과 법 작업단(Competition policy and Law Group)을 199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협정에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또는 다른 이유는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하여 자유 무역협정의 혜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쟁정책이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에서 경쟁 챕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쟁 조항의 범위나 수준은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의 통합도,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NAFTA는 경쟁정책에 대해 선언적 수준에 머문 반면 EU와 ANZCERTA의 경우에는 경제 통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쟁정책 조항의 범위와 수준도 높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존재하는 경쟁 규제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경쟁 부문에서의 다자간 합의 도출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경쟁정책이 본격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협정에 경쟁정책 포함 비중이 높아졌다. 1990년대 이전에는 약 60% 정도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포함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최근(2011~16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88%가 경쟁 관련 조항이나 경쟁 챕터를 포함한다(그림 4-9 참고).

그림 4-9. 시기별 자유무역협정의 경쟁 조항/챕터 포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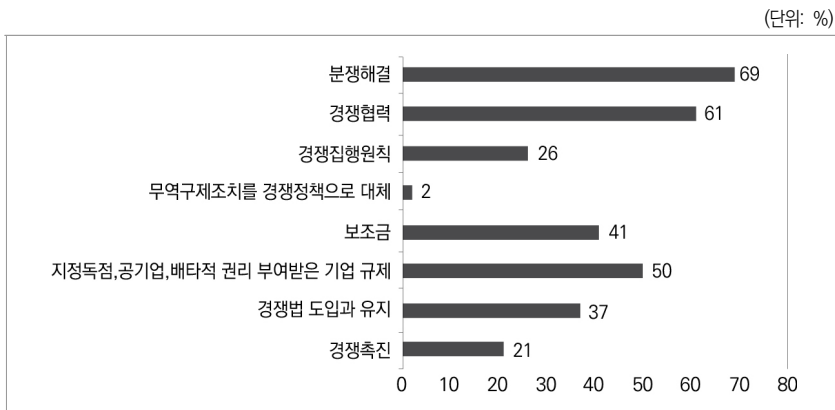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Lapr votte, Frisch, and Can(2015), p. 2.

자유무역협정 경쟁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경쟁촉진 ② 경쟁법의 도입과 유지 ③ 지정독점, 공기업, 특수하거나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기업에 대한 규제 ④ 보조금 ⑤ 경쟁 예외 ⑥ 무역구제조치의 감소 ⑦ 경쟁집행원칙 ⑧ 협력 ⑨ 분쟁 해결 등이다. 경쟁정책 세부조항의 포함 비중을 살펴보면, 분쟁해결이 69%로 가장 높고, 경쟁협력이 61%, 지정독점, 공기업, 특수하거나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5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4-10 참고).

그림 4-10. 경쟁 관련 조항의 자유무역협정 포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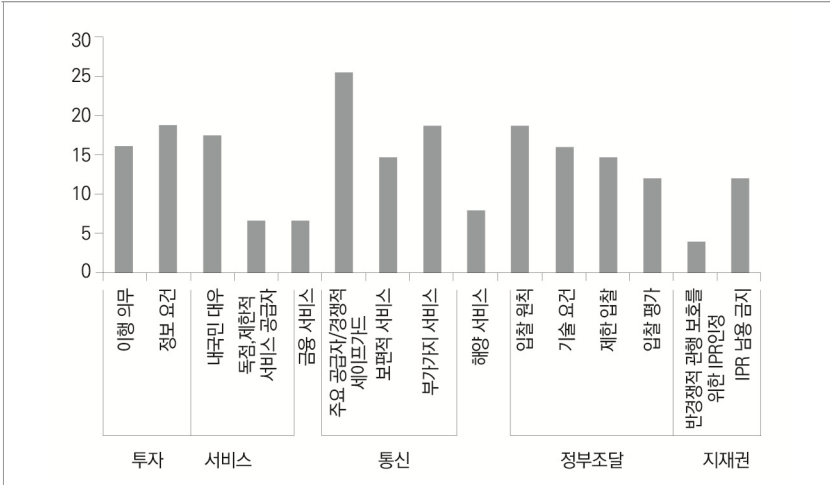
자료: Laprévotte, Frisch, and Can(2015), p. 3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경쟁과 관련된 조항들은 경쟁 챕터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규정되는데, 이와 같이 분야별로 규정되는 경쟁 관련 규정들의 경쟁제고 효과가 경쟁 챕터 자체보다 크다.<sup>62)</sup> Teh(2009)는 74개 PTA를 대상으로 분야별 경쟁 조항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통신, 투자, 정부조달, 지적권 등의 다양한 분야에 경쟁 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62) WTO(2011), p. 143 참고.

그림 4-11. 자유무역협정 분야별로 포함된 경쟁 관련 조항

(단위: 건)



자료: WTO(2011), p. 143.

우리나라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독립적인 경쟁 챕터를 두고 있으며 경쟁 챕터의 목적, 당사국에 의한 경쟁법의 유지·채택 및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채택, 반경쟁적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자적인 경쟁 챕터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대국에 따라 유연하게 경쟁 챕터를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는 북미식 경쟁 챕터를, 한-EU FTA에서는 유럽식 경쟁 챕터를 채택하였다.

경쟁정책의 변화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시장진입에 따른 고정비용의 감소를 통해 발생한다. 즉 경쟁정책의 강화는 고정비용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을 활발하게 만든다. 감소된 고정비용으로 인한 기업 수의 변화는 통상적인 무역이론의 독점적 경쟁모형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다.

경쟁정책이 강화될 경우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각 기업의 규모가 감소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서 전체적인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고정비용 감소로 인한 경쟁축진이 한계기업의 퇴출로 이어져 국내생산의 일부가 수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나 유통 분야에서의 경쟁축진은 해당 분야의 이익률 감소로 이어져 개방으로 인한 수입재의 가격하락이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인다. 동시에 경쟁의 축진은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의 확대와 수입의 대체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 사. 표준(Standards)

### 1) TBT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상품에 대해 규정하는 표준화의 차이로 발생하는 국가간 상품무역장벽을 가리킨다. TBT는 다자 무역체제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TBT 협정의 적용 대상인 TBT 조치들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품목과 관련되기 때문에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TBT는 정당한 목적<sup>63)</sup>을 위해 채택되었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높아 무역분쟁의 빈도가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TBT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협정)」에 기반하며 본 협정에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 목적을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적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73~79년 도쿄라운드(Tokyo Round)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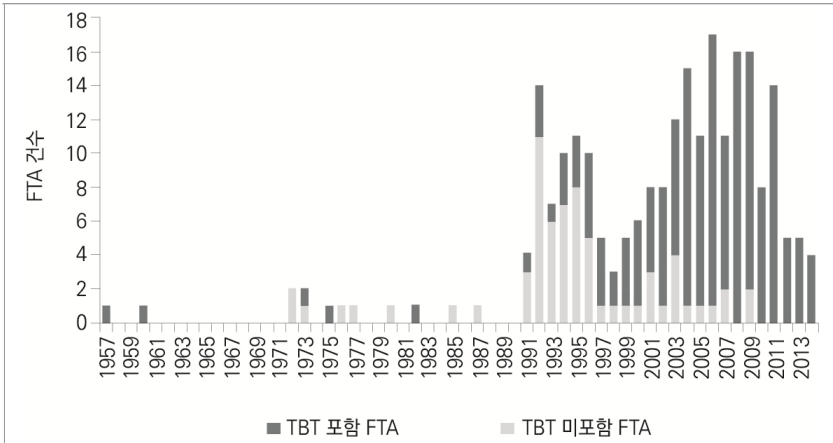
---

63) 정당한 목적의 구체적 내용은 후술한다.

합의된 '표준 협정(Standard Code)' 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1980년 GATT TBT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WTO 협정 부속서 중 하나로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하 TBT 협정)이 채택되면서 모든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성 있는 다자간 협정이 마련되었다. WTO TBT 협정은 정당한 목적 외 수입상품에 대해 기술규정 및 관련 제도의 과도한 적용, 비차별적인 조치로 인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내국민대우 및 무역제한 최소화(least-trade restrictive)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이와 같은 TBT 조치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TBT는 여전히 제도상 불명확성과 남용의 위험이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력, 역량, 경험 등으로 인해 다자적 합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TBT 조항은 다자적 합의가 어려운 이슈에 대해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들은 자유무역협정에 TBT 조항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림 4-12]는 1957년부터 2013년까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TBT 조항의 포함 여부를 보여준다. 1995년 이전에는 TBT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자유무역협정이 대부분이었으나 1995년 이후부터 자유무역협정의 TBT 조항 포함 비중이 높아지면서 2010년 이후 체결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은 TBT 조항을 포함한다.

그림 4-12. 시기별 자유무역협정의 TBT 조항 포함 여부



자료: Molina and Khoroshavina(2015), p. 4 인용.

자유무역협정 TBT 조항의 주요 내용은 ① 적용 범위 ② WTO TBT 협정의 재확인 ③ 적합성 평가절차<sup>64)</sup> ④ 투명성 ⑤ (국제)표준<sup>65)</sup> ⑥ 협력 ⑦ 기술규정<sup>66)</sup> ⑧ TBT 위원회 ⑨ 표시 및 라벨링 등이며, 기본적으로 WTO TBT 협정에 기반하고 있으나 체결국의 정책이나 국내법, 민감 분야 등을 반영하여 구성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중 EFTA, ASEAN, 인도, 호주와의 협정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자유무역협정은 TBT 챕터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자유무역협정 협정 초기에는 WTO TBT 협정을 준용하던 소극적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상대국의 기술규정 제·개정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적합성

64)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절차(표본추출, 시험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성 보증, 등록, 인정, 승인 등)를 의미한다.

65) 표준(Standard)은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한 문서로, 인정 기관에 의해 승인된다.

66)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은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과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평가절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발전하였다.<sup>67)</sup>

## 2) SP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이다. SPS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따라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된다.<sup>68)</sup> 그러나 SPS 조치를 임의로 제정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다.

구체적으로 GATT의 예외조항<sup>69)</sup>을 원용하여 SPS 위생 및 검역조치를 농산물의 수입제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UR 협상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이 체결되었다. SPS 협정은 각국이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SPS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한편, SPS 조치가 국제무역을 저해하고 장벽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SPS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따라 상품협정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TBT와 함께 독립된 챕터로 구성된다. 자유무역협정 SPS 조항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한 Jackson and Vitikala(201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58년부터 2014년까지 체결된 총 256개 자유무역협정 중 176개 자유무역협정이 SPS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91개 자유무역협정은 SPS 상세조항을 포함하고 85개 자유무역협정은 독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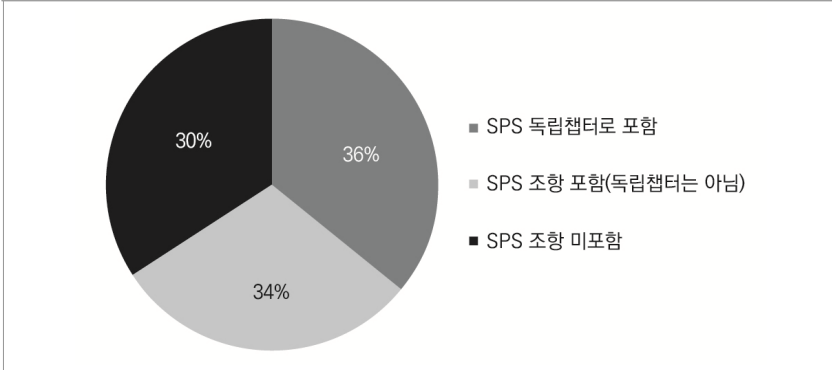
67) 유새별(2016), p. 10.

68) 네이버 지식백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38771&cid=42143&categoryId=42143>(검색일: 2018. 11. 20).

69) GATT 체제에서는 각국의 검역주권을 이유로 한 수입규제조치는 GATT 제XX조 (b)에 따라 “각국이 시행하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들간에 불공정한 차별을 초래하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인 챕터는 없이 기본 조항만을 포함한다(그림 4-1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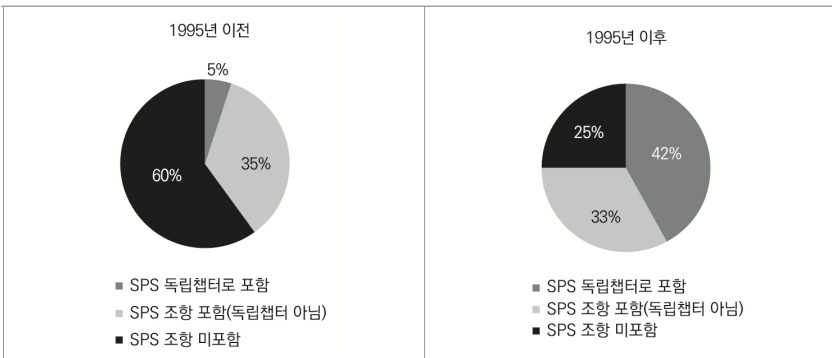
그림 4-13. 자유무역협정에서의 SPS 조항의 포함 형태(1958~2014년)



자료: Jackson and Vitikala(2016), p. 320.

WTO 출범시기인 1995년을 전후로 자유무역협정 SPS 조항 포함 형태를 비교해 보면 SPS 조항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이전에는 SPS 독립 챕터를 두는 경우가 5%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42%로 크게 증가하여 SPS 조항의 중요성과 수준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4 참고).

그림 4-14. 1995년 이전/이후의 SPS 조항의 포함 방식 비교



자료: Jackson and Vitikala(2016), p. 321.

자유무역협정의 SPS 조항은 과거에는 WTO SPS 협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무역협정 SPS 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가 추가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포함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이 등장하면서 규정의 수준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TPP의 경우에는 WTO+ 요소인 위험분석, 기술적 협의, 분쟁해결 적용 등이 추가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중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티키 FTA 등에서는 상품협정에 SPS 조치와 관련된 조항이 간략하게 포함되었고, 한-호주 FTA에서는 TBT 조치와 별도의 장으로 포함되었다. SPS 조치의 주요 대상이 농산물이므로 농업 부문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NAFTA의 경우가 그러하다.

### 3) 교역에의 영향

기본적으로 표준 조항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주권국가의 입장에서는 표준 조항을 활용하여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TBT, SPS와 같은 표준 조항들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우선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제품의 품질을 표준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탐색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교역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표준 관련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 규정 조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생산자의 수출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다만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순응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정 국가의 규정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차별성이 사라짐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폭을 줄이거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수입수요는 존재하지만 교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Moenius 2004, 2006). 특히 보호무역조치의 관점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데,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표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업자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석호 외(2016)도 표준 관련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표준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 방향이 혼재되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 조항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경로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순응비용의 증가와 소비자의 선택 폭 제한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아. 무역구제(Trade remedy)

무역구제제도란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포함하며 광의로는 불공정무역행위, 무역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무역구제는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구성요소이며, 자유무역협정 체결국들은 상대국에 정치·경제적 상황과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역내 무역구제 규정(Regional trade remedy regime)을 도입한다. 일부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조사 및 부과에 관한 요건들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WTO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을 준용하며 그 틀을 유지한다.<sup>70)</sup>

---

70) 외교부(2016), p. 114.

## 1) 반덤핑

반덤핑(Anti-dumping) 관세제도는 해외 수출자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덤핑 관세는 탄력관세<sup>71)</sup>로 덤핑 수입된 상품에 대해 정상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이를 산정하여 덤핑액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반덤핑 제도의 근거법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 제6조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WTO 반덤핑 협정')이다. WTO 반덤핑 협정이 WTO 협정의 부속서로 채택되면서 반덤핑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반덤핑 규정이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되어 보편성도 확보하였다.<sup>72)</sup> 2011년 11월 채택된 WTO 도하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규범협상을 DDA 협상의 일부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WTO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내 규범협상<sup>73)</sup> 그룹에서 반덤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반덤핑 관련 국제 논의의 주요 쟁점은 ① 제로잉 ② 인과관계 ③ 국내산업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 ④ 국내산업의 정의 ⑤ 조사대상상품 ⑥ 관계사 보유 정보 ⑦ 공공이익 및 최소부과원칙 ⑧ 우회덤핑 ⑨ 일몰재심 ⑩ 덤핑마진 계산에 관한 반덤핑 협정 제2.4.2조를 원심뿐만 아니라 재심에도 적용할 것 등이다.

---

71) 국내산업 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말한다.

72) 최승환(2014), p. 328.

73) DDA 규범협상은 ① 반덤핑 협정 개정 ② 일반보조금 규정 개정 ③ 수산보조금 규정 개정 ④ 자유무역협정 개정 네 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히 체결되면서 반덤핑 조항도 다양한 형태로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었다. 자유무역협정 반덤핑 조항은 WTO 반덤핑 협정과 관계, 반덤핑조치의 적용, 절차 규정, 실체 규정으로 구성된다(표 4-7 참고).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 반덤핑 조항은 WTO 반덤핑 협정의 내용을 준용하며, 두 협정의 효력 우선순위, 적용 배제 등을 규정한다.

표 4-7.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반덤핑 관련 조항(성질별)

대분류	소분류
WTO 반덤핑 협정과 관계	WTO 반덤핑 협정에 대한 언급 없음
	WTO 반덤핑 협정의 권리, 의무 유지
	WTO 반덤핑 협정의 수정
	WTO 반덤핑 협정의 배제
반덤핑조치의 적용	반덤핑조치를 취할 권리에 대한 인정
	반덤핑조치를 취할 권리의 포기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에 대해 반덤핑조치 금지
절차 규정	통지
	협의
	영어 문서 제공
	기간 약속
실체 규정	제로잉(Zeroing)
	미소마진
	피해의 누적평가
	공익 고려
	최소부과
	반덤핑 필요성 검토
기타 규정	분쟁해결의 절차 배제
	무역구제위원회

자료: KIEP(2017a, p. 162, 재인용).

자유무역협정 체결 초기에는 WTO 반덤핑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 유지를 강조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WTO 반덤핑 협정의 내용을 수정한 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TPP에서는 TPP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WTO 협정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NAFTA의 경우 NAFTA 자체에 반덤핑에 대한 실체적 규정이나 WTO에 대한 언급 없이 자국의 반덤핑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sup>74)</sup>

Rey(2012)는 300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반덤핑 조항과 WTO 반덤핑 조항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 결과 총 174건의 자유무역협정(90.6%)이 비차별원칙에 기반하는 WTO 반덤핑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따르는 역내 반덤핑 제도(regional antidumping regimes)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8건의 자유무역협정(9%)만이 WTO 원칙에 반하는 특혜요소를 포함한 반덤핑 조항을 채택하고 있으며, 14건의 자유무역협정(7%)은 역내 반덤핑조치 금지, 4건의 자유무역협정은 역내 반덤핑조치 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y(2012)의 연구 결과 자유무역협정이 반덤핑조치 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역내 국가들에 대한 반덤핑 관련 특혜요소도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상계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가격경쟁력이 상승한 제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관세이다. 보조금은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련된 무역갈등은 빈번하게

---

74) NAFTA 협정문 제1902조(Article 1902: Retention of Domestic Antidumping Law and Countervailing Duty Law) 제1항에서는 "Each Party reserves the right to apply its antidumping law and countervailing duty law to goods imported from the territory of any other Party. Antidumping law and countervailing duty law include, as appropriate for each Party, relevant statutes, legislative history, regulations, administrative practice and judicial precedents"를 명시하고 있다.

발생한다. 이러한 무역갈등과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가 상계관세이다.

상계관세의 근거법은 GATT 제6조(반덤핑 및 상계관세) 및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상계관세협정')이다. 상계관세협정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의 특정성(specificity)<sup>75)</sup> 여부, 무역왜곡효과가 명백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만 상계가능보조금 사용 가능, 환경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 허용, 분쟁해결기구 설치 등이다. 이와 같이 상계관세협정이 상계관세의 남용 방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상계관세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상계관세도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탄력관세이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출품의 단위당 보조금액을 산정하여 기본관세에 부과된다.<sup>76)</sup> 상계관세는 개별 WTO 회원국이 직접 보조금과 피해 판정을 하여 부과하는 일방적 조치이며 보조금 유형에 상관없이 부과하고 있다.<sup>77)</sup>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상계관세조치의 주요 내용은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과 관계, 그리고 통보, 협의 규정 등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초기의 상계관세 조항은 WTO 협정 내용을 재확인하고 WTO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 유지를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WTO 협정에 의해 규율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 조항의 우선 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5) 특정성(specificity)은 소수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과도한 지원을 의미한다.

76)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9.4조.

77) Shadikhodjaev 외(2012), p. 119 [그림 4-1]에 따르면 보조금 협정에서 보조금에 대한 대응은 일방적/다자적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상계관세조치는 일방적 수단이며, WTO 제소를 통한 다자적 대응방법도 존재한다. 다자적 대응은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그 유형을 나누어 다르게 처리하는 하는 반면 상계관세조치는 보조금의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리한다.

### 3) 교역에의 영향

무역구제와 교역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무역구제조치의 도입 또는 조사 개시가 교역 특히 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그 원인이 다를 뿐 결과적으로 긍정판정이 결정될 경우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역구제를 다루는 방식은 WTO의 협정을 원용하되 협정 당사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사전 양자협의 등 절차상 특혜를 제외하면 본질상 특혜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미 FTA의 경우에도 양국이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의 기회를 갖도록 한 점과 가격약속 및 사전물량 합의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한 점,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점 등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무역구제조치 관련 조항은 남발과 오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구제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교역을 활성화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실질적인 특혜가 없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할 경우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교역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 가.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 1) 분석 모형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와 같이 중력모형을 사용하며 PPML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생성한 9개의 상위 구성요소 지표를 모두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sup>78)</sup>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식 4-1]과 같다.

$$Trade_{ijt} = \exp \left( \begin{aligned} &GDP_{it} \beta_{GDP_{it}} + GDP_{jt} \beta_{GDP_{jt}} \\ &+ PCA(\text{시장접근})_{ijt} \beta_{\text{시장접근}} + PCA(\text{서비스})_{ijt} \beta_{\text{서비스}} \\ &+ PCA(\text{투자})_{ijt} \beta_{\text{투자}} + PCA(\text{지식재산권})_{ijt} \beta_{\text{지식재산권}} \\ &+ PCA(\text{공공조달})_{ijt} \beta_{\text{공공조달}} + PCA(\text{경쟁})_{ijt} \beta_{\text{경쟁}} \\ &+ PCA(\text{표준})_{ijt} \beta_{\text{표준}} + PCA(\text{무역구제조치})_{ijt} \beta_{\text{무역구제조치}} \\ &+ PCA(\text{비교역이슈})_{ijt} \beta_{\text{비교역이슈}} + \alpha_{ij} + \theta_t \end{aligned} \right) \epsilon_{ijt} \quad [\text{식 4-1}]$$

여기서,  $i$ 는 수입국,  $j$ 는 수출국,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즉  $Trade_{ijt}$ 는  $i$ 국의  $j$ 국으로부터의  $t$ 년도 수입액,  $GDP_{i(j)t}$ 는  $i(j)$ 국의  $t$ 년도 GDP이다.  $PCA_{ijt}$ (상위 구성요소)는  $i$ 국가와  $j$ 국가 간의 9개 상위 구성요소에 대한 주성분 분석 지표이다. 아울러 Feenstra(2004)에서 지적하였듯이 교역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때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수입국-수출국 고정효과( $\alpha_{ij}$ )를 포함하였으며 연도 특이성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 $\theta_t$ )를 포함하였다. 분석 기간 및 대상 국가는 전체 196개 국가를 대상으로 두 기간, 즉 1995~2015년(2008~10년 제외)과 2002~15년(2008~10년 제외)에 걸쳐 분석하였으며

78)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위 구성요소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52개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0.95 이상의 상관관계를 갖는 조합이 27개인 데 비해, 상위 구성요소간에는 시장접근과 무역구제조치만 0.94 수준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상관관계	시장접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공공조달	경쟁	표준	무역구제조치	비교역이슈
시장접근	1.000								
서비스	0.735	1.000							
투자	0.696	0.696	1.000						
지식재산권	0.758	0.717	0.706	1.000					
공공조달	0.698	0.714	0.796	0.798	1.000				
경쟁	0.874	0.722	0.741	0.870	0.780	1.000			
표준	0.755	0.811	0.851	0.776	0.823	0.762	1.000		
무역구제조치	0.940	0.776	0.716	0.834	0.754	0.893	0.789	1.000	
비교역이슈	0.576	0.689	0.826	0.670	0.711	0.666	0.710	0.619	1.000

추가적으로 교역량 기준 상위 48개국으로 분석 대상을 좁혀서 두 분석 기간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장의 분석 자료는 제3장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와 동일하므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 2) 분석 결과

이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국제무역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PPML 방법론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표 4-8]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중력모형 결과와 동일하게 수입국 GDP와 수출국 GDP의 계수추정치는 양(+)<sup>79)</sup>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9개의 상위 구성요소의 계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시장접근은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rawford(2012)가 지적하였듯이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 인하 등이 상호 시장접근성 강화로 이어져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sup>79)</sup> 교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는 모든 경우 계수추정치가 음(-)의 값을 가지나 1995~2015년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교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이며 2002년 이후로 분석 자료를 제한한 경우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대부분의 모형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2002~15년간 196개국 대상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대개도국 교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공조달의 경우 대부분 유의하게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2~15년간 48개국 대상 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에 관한 구성요소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02~15년간 196개국 대상 분석에서는 오히려 유의한 양(+)<sup>79)</sup>의 값으로 추정되어 경쟁이 교역에 미치는

79) 48개국, 2002~15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효과에 대한 결론은 유보하기로 한다. 이는 경쟁을 구성하는 세부 구성요소들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되기에 다음 절에서 경쟁을 구성하는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 국가보조, 경쟁정책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경쟁을 구성하는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준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1995~2015년을 분석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유의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15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역시 계수추정치가 양(+)의 값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분석 기간이 짧아 표준 설명변수의 변동성이 적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최근 들어 표준 관련 조항들이 비관세장벽으로 악용되면서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교역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비교역이슈는 모든 경우에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교역이슈는 대부분 WTO-X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3장에서의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 4-8.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대상 국가	196개국		48개국	
	1995~2015	2002~15	1995~2015	2002~15
수입국 GDP	0.752*** (0.029)	0.686*** (0.040)	0.745*** (0.035)	0.669*** (0.048)
수출국 GDP	0.617*** (0.028)	0.482*** (0.032)	0.619*** (0.032)	0.462*** (0.035)
주성분(시장접근)	0.230** (0.096)	0.200** (0.092)	0.185 (0.155)	0.263* (0.141)
주성분(서비스)	-0.383*** (0.064)	-0.203*** (0.070)	-0.410*** (0.092)	-0.162 (0.114)
주성분(투자)	-0.267*** (0.0908)	-0.097 (0.085)	-0.308** (0.120)	-0.165 (0.128)
주성분(지식재산권)	-0.021 (0.064)	-0.074* (0.044)	-0.009 (0.073)	-0.056 (0.049)
주성분(공공조달)	0.136** (0.066)	0.121** (0.059)	0.183* (0.093)	0.095 (0.092)
주성분(경쟁)	-0.042 (0.078)	0.122* (0.073)	-0.095 (0.111)	0.119 (0.110)
주성분(표준)	0.319*** (0.095)	0.046 (0.085)	0.369*** (0.117)	0.048 (0.123)
주성분(무역구제조치)	-0.047 (0.068)	-0.045 (0.061)	-0.026 (0.114)	-0.090 (0.098)
주성분(비교역이슈)	0.574*** (0.105)	0.260** (0.102)	0.687*** (0.130)	0.279** (0.137)
관측치	523,643	317,918	40,572	24,783
추정방법	PPML	PPML	PPML	PPML
수입국-수출국 FE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주: 1) ( ) 안은 강건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3) 모든 모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10년)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저자 작성.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교역상 대국을 경제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9 참고). 시장접근의 경우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에서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이 관측되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sup>80)</sup> 분석에 의하면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시장접근 이슈는 개도국간 교역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 선진국의 경우 관세장벽이 낮아 추가 자유화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고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상호 관세를 낮추는 협정 이외에도 GSP와 같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도국의 경우 자국 산업 육성 차원에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세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선진국의 대개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보인다.

서비스 자유화는 효율적 서비스 수입재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냄으로써 해당 상품의 수출이 늘어나고 그 결과 여타 제조업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확대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는 유형(Mode)별 및 세부 산업별로 특성이 상이하여 상품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으며, 서비스 자유화가 상품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선진국간 교역에서는 서비스 자유화가 상품교역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개도국간 상품교역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협정이 주로 선진국간에 체결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개도국간에 체결되는 서비스협정의 경우 그 수준이 높지 않아 상품교역에 미치는 연관성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것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다

80) 한 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EU 28개국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취급하는 대신 각국을 관측치로 활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측치의 수가 현저히 적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 다만 분석 대상 기간 중 EU 회원국의 수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타 모형에서의 충분한 변동성 확보를 위해 EU 개별 국가 자료를 이용하였다.

만 서비스 자유화는 양국간 교역구조를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Mode에 따라서는 후술하는 투자와 마찬가지로 상품수입을 대체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유화의 경우 투자 및 교역품목의 유형에 따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앞서 언급하였다. 투자자유화는 선진국의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도국의 수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자유화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의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투자협정으로 인해 협정 상대국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관세회피투자(tariff jumping investment)나 수출목적용 투자(export platform investment)가 보다 활발해져 수입을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GVC가 확대되어 투자협정이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sup>81)</sup> 특히 관세 수준이 낮더라도 투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투자여건 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들이 많아 투자의 확대가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지식재산권 조항 포함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개도국간 교역에서만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재산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협정문에 포함되는 경우 과거보다 수입재의 지식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입을 확대할 유인이 발생한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선진국의 대개도국 수출이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미뤄 그 긍정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대부분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경우 오히려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느슨한 상황에서 거러되던 상품들의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

81) 단 로그선형모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공조달의 경우 대개도국으로의 수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추가 개방의 폭이 크지 않은 데다, 이미 상당한 투명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수출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인프라 수요 등이 풍족해 공공조달시장의 성장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공공조달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투명성 확보에 따른 교역확대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의 경우 선진국으로의 수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정책의 강화는 공정한 경쟁을 담보함으로써 유통시장 등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한계기업들을 퇴출시킴으로써 수입의 활성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개도국의 경우 아직 경쟁 관련 법적 제도가 취약하고 국영기업 등 이슈가 남아 있어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의 경우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데는 부정적으로, 같은 개도국으로 수출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표준 조항의 도입은 개도국 수출업자가 선진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수출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선호를 증대시켜 수출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구제조치는 선진국간 그리고 개도국간 교역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역구제조치 자체에 특혜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편이고, 오히려 자유무역협정 이후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4-9. 경제 수준별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대상 국가	선진국(수입)- 선진국(수출)	선진국(수입)- 개도국(수출)	개도국(수입)- 선진국(수출)	개도국(수입)- 개도국(수출)
분석 기간	1995~2015			
수입국 GDP	0.508*** (0.072)	0.522*** (0.076)	0.764*** (0.062)	0.713*** (0.064)
수출국 GDP	0.510*** (0.085)	0.568*** (0.059)	0.497*** (0.087)	0.563*** (0.075)
주성분(시장접근)	-1.343** (0.589)	-0.083 (0.167)	-0.055 (0.164)	0.321*** (0.111)
주성분(서비스)	0.655* (0.370)	0.025 (0.112)	0.094 (0.119)	-0.624*** (0.080)
주성분(투자)	-0.368* (0.205)	-0.014 (0.095)	-0.434*** (0.117)	-0.114 (0.147)
주성분(지식재산권)	0.0416 (0.076)	0.036 (0.096)	0.004 (0.107)	-0.320** (0.139)
주성분(공공조달)	-0.239 (0.206)	0.030 (0.082)	0.448*** (0.108)	0.192*** (0.063)
주성분(경쟁)	1.740** (0.755)	0.275** (0.121)	0.111 (0.134)	0.114 (0.146)
주성분(표준)	-0.342 (0.266)	-0.245** (0.105)	-0.131 (0.095)	0.654*** (0.118)
주성분(무역규제조치)	-0.284** (0.117)	-0.000 (0.109)	0.016 (0.084)	-0.177** (0.077)
주성분(비교역이슈)	0.847*** (0.151)	0.556*** (0.146)	0.215 (0.187)	0.945*** (0.232)
관측치	15,660	81,309	82,234	336,405
추정방법	PPML	PPML	PPML	PPML
수입국-수출국 FE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주: 1) ( ) 안은 강건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3) 모든 모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10년)은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선진국을 수입으로하는 모형에서 벨기에, 산마리노, 룩셈부르크는 자료상의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저자 작성.

## 나.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특정 상위 구성요소의 세부 구성요소와 나머지 상위 구성요소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이 상위 구성요소들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세부 구성요소 각각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서비스와 공공조달은 각각 하나의 세부 구성요소만을 가지고 있고 비교역이슈는 대부분의 WTO-X 조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분석 및 결과 설명을 생략하였다.<sup>82)</sup> 분석 대상 국가 및 분석 기간은 앞 절과 동일하다.

### 1) 시장접근

#### 가) 분석 모형

시장접근의 세부 구성요소인 제조업 관세자유화, 농업 관세자유화, 수출세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식 4-2]이며 수식 및 분석 방법론은 [식 4-1]과 동일하다. 단 제조업 관세자유화, 농업 관세자유화, 수출세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으며 시장접근 상위 구성요소 이외의 나머지 상위 구성요소들 역시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Trade_{ij} = \exp \left( \begin{array}{l} GDP_{it} \beta_{GDP_t} + GDP_{jt} \beta_{GDP_t} \\ + \text{관세자유화(제조업)}_{ijt} \beta_{\text{제조업}} + \text{관세자유화(농업)}_{ijt} \beta_{\text{농업}} \\ + \text{수출세}_{ijt} \beta_{\text{수출세}} + PCA(\text{서비스})_{ijt} \beta_{\text{서비스}} + PCA(\text{투자})_{ijt} \beta_{\text{투자}} \\ + PCA(\text{지식재산권})_{ijt} \beta_{\text{지식재산권}} + PCA(\text{공공조달})_{ijt} \beta_{\text{공공조달}} \\ + PCA(\text{경쟁})_{ijt} \beta_{\text{경쟁}} + PCA(\text{표준})_{ijt} \beta_{\text{표준}} \\ + PCA(\text{무역구제조치})_{ijt} \beta_{\text{무역구제조치}} + PCA(\text{비교역이슈})_{ijt} \beta_{\text{비교역이슈}} \\ + \alpha_{ij} + \theta_t \end{array} \right)^{\epsilon_{ij}} \quad [\text{식 4-2}]$$

여기서 모든 수식은 [식 4-1]의 수식과 같다.

82) 앞 절의 [표 4-8] 참고.

## 나) 분석 결과

[표 4-10]은 시장접근 개별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PPML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 모형이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조업 관세자유화, 농업 관세자유화, 수출세 설명변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안으로 세 변수를 설명변수로 동시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sup>83)</sup> 제조업 관세자유화, 농업 관세자유화, 수출세를 각각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11], [표 4-12], [표 4-13]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196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 관세자유화 모두 유의하게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8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계수추정치가 양(+)<sup>83)</sup>의 값을 가지나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그 이유는 이미 많은 교역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간에는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관세가 많이 낮아진 상태여서 관세자유화 관련 설명변수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상대적으로 미미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출세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

83) 실제 개별 변수만 모형에 포함할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동시에 세 변수를 포함시킬 경우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표 4-10. 시장접근 개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대상 국가	196개국	196개국	196개국	196개국
분석 기간	2002~15	2002~15	2002~15	2002~15
수입국 GDP	0.686*** (0.040)	0.686*** (0.040)	0.686*** (0.040)	0.688*** (0.040)
수출국 GDP	0.482*** (0.032)	0.482*** (0.032)	0.482*** (0.032)	0.483*** (0.032)
제조업 관세자유화	0.470 (0.386)	0.149* (0.082)		
농업 관세자유화	-0.340 (0.388)		0.147* (0.082)	
수출세	0.070 (0.061)			0.083 (0.0613)
주성분(서비스)	-0.202*** (0.071)	-0.206*** (0.074)	-0.206*** (0.074)	-0.160** (0.068)
주성분(투자)	-0.098 (0.085)	-0.081 (0.084)	-0.081 (0.084)	-0.113 (0.086)
주성분(지식재산권)	-0.074* (0.044)	-0.072 (0.045)	-0.072 (0.045)	-0.076* (0.044)
주성분(공공조달)	0.121** (0.059)	0.132** (0.060)	0.132** (0.060)	0.122** (0.059)
주성분(경쟁)	0.122* (0.073)	0.162** (0.068)	0.162** (0.068)	0.129* (0.073)
주성분(표준)	0.047 (0.084)	0.034 (0.086)	0.034 (0.086)	0.057 (0.083)
주성분(무역규제조치)	-0.045 (0.065)	-0.049 (0.067)	-0.048 (0.067)	0.034 (0.045)
주성분(비교역이슈)	0.260** (0.102)	0.253** (0.102)	0.253** (0.102)	0.250** (0.098)
관측치	317,918	317,918	317,918	317,918
방법론	PPML	PPML	PPML	PPML
수입국-수출국 FE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4-11. 시장접근 제조업 관세자유화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대상 국가	196개국		48개국	
	1995~2015	2002~15	1995~2015	2002~15
수입국 GDP	0.752*** (0.029)	0.686*** (0.040)	0.745*** (0.035)	0.668*** (0.048)
수출국 GDP	0.617*** (0.028)	0.482*** (0.032)	0.618*** (0.032)	0.462*** (0.035)
제조업 관세자유화	0.180** (0.085)	0.149* (0.082)	0.174 (0.180)	0.239 (0.158)
주성분(서비스)	-0.389*** (0.067)	-0.206*** (0.074)	-0.423*** (0.094)	-0.185 (0.121)
주성분(투자)	-0.251*** (0.090)	-0.0812 (0.084)	-0.283** (0.118)	-0.125 (0.129)
주성분(지식재산권)	-0.017 (0.064)	-0.072 (0.045)	-0.008 (0.073)	-0.054 (0.049)
주성분(공공조달)	0.151** (0.066)	0.132** (0.060)	0.196** (0.092)	0.115 (0.095)
주성분(경쟁)	0.005 (0.072)	0.162** (0.068)	-0.052 (0.101)	0.181* (0.105)
주성분(표준)	0.306*** (0.096)	0.034 (0.086)	0.349*** (0.118)	0.019 (0.123)
주성분(무역구제조치)	-0.057 (0.077)	-0.049 (0.067)	-0.065 (0.169)	-0.140 (0.139)
주성분(비교역이슈)	0.566*** (0.105)	0.253** (0.102)	0.683*** (0.130)	0.271** (0.136)
관측치	523,643	317,918	40,572	24,783
방법론	PPML	PPML	PPML	PPML
수입국-수출국 FE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4-12. 시장접근 농업 관세자유화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대상 국가	196개국		48개국	
	1995~2015	2002~15	1995~2015	2002~15
수입국 GDP	0.753*** (0.029)	0.686*** (0.040)	0.745*** (0.035)	0.668*** (0.048)
수출국 GDP	0.617*** (0.028)	0.482*** (0.032)	0.618*** (0.032)	0.462*** (0.035)
농업 관세자유화	0.170** (0.086)	0.147* (0.082)	0.174 (0.180)	0.239 (0.158)
주성분(서비스)	-0.387*** (0.067)	-0.206*** (0.074)	-0.423*** (0.094)	-0.185 (0.121)
주성분(투자)	-0.251*** (0.090)	-0.081 (0.084)	-0.283** (0.118)	-0.125 (0.129)
주성분(지식재산권)	-0.017 (0.064)	-0.072 (0.045)	-0.008 (0.073)	-0.054 (0.049)
주성분(공공조달)	0.151** (0.066)	0.132** (0.060)	0.196** (0.092)	0.115 (0.095)
주성분(경쟁)	0.006 (0.072)	0.162** (0.068)	-0.052 (0.101)	0.181* (0.105)
주성분(표준)	0.306*** (0.096)	0.034 (0.086)	0.349*** (0.118)	0.019 (0.123)
주성분(무역구제조치)	-0.051 (0.077)	-0.048 (0.067)	-0.065 (0.169)	-0.140 (0.139)
주성분(비교역이슈)	0.565*** (0.105)	0.253** (0.102)	0.683*** (0.130)	0.271** (0.136)
관측치	523,643	317,918	40,572	24,783
방법론	PPML	PPML	PPML	PPML
수입국-수출국 FE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4-13. 시장접근 수출세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대상 국가	48개국		
	196개국	1995~2015	2002~15
수입국 GDP	0.688*** (0.040)	0.746*** (0.035)	0.671*** (0.048)
수출국 GDP	0.483*** (0.032)	0.619*** (0.032)	0.463*** (0.035)
수출세	0.083 (0.061)	0.060 (0.083)	0.089 (0.076)
주성분(서비스)	-0.160** (0.068)	-0.381*** (0.093)	-0.108 (0.115)
주성분(투자)	-0.113 (0.086)	-0.323*** (0.120)	-0.198 (0.132)
주성분(지식재산권)	-0.076* (0.044)	-0.011 (0.073)	-0.062 (0.050)
주성분(공공조달)	0.122** (0.059)	0.187* (0.096)	0.108 (0.093)
주성분(경쟁)	0.129* (0.073)	-0.090 (0.112)	0.103 (0.114)
주성분(표준)	0.057 (0.083)	0.380*** (0.118)	0.078 (0.122)
주성분(무역규제조치)	0.034 (0.045)	0.068 (0.069)	0.035 (0.067)
주성분(비교역이슈)	0.250** (0.098)	0.685*** (0.129)	0.290** (0.136)
관측치	317,918	40,572	24,783
방법론	PPML	PPML	PPML
수입국-수출국 FE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 2) 투자

### 가) 분석 모형

투자의 세부 구성요소인 TRIMs와 투자(WTO-X)<sup>84</sup>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식 4-3]이다. 기본적으로 수식 및 분석 방법론은 [식 4-2]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단 [식 4-3]에서는 상위 구성요소 투자 주 성분 지표 대신에 세부 구성요소인 TRIMs와 투자(WTO-X)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Trade_{ijt} = \exp \left( \begin{aligned} &GDP_{it} \beta_{GDP_a} + GDP_{jt} \beta_{GDP_x} \\ &+ TRIMs_{ijt} \beta_{TRIMs} + 투자(WTO-X)_{ijt} \beta_{투자} \\ &+ PCA(시장접근)_{ijt} \beta_{시장접근} + PCA(서비스)_{ijt} \beta_{서비스} \\ &+ PCA(지식재산권)_{ijt} \beta_{지식재산권} + PCA(공공조달)_{ijt} \beta_{공공조달} \\ &+ PCA(경쟁)_{ijt} \beta_{경쟁} + PCA(표준)_{ijt} \beta_{표준} \\ &+ PCA(무역구제조치)_{ijt} \beta_{무역구제조치} \\ &+ PCA(비교역이슈)_{ijt} \beta_{비교역이슈} + \alpha_{ij} + \theta_t \end{aligned} \right) \epsilon_{ijt} \quad [식 4-3]$$

### 나) 분석 결과

[표 4-14]는 투자의 세부 구성요소인 TRIMs와 투자(WTO-X)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TRIMs의 경우 교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게 나왔으며 강건하지도 않았다. TRIMs의 주요 내용이 현지생산 요건이나 해외투자의 수출성과 관련 규정 등 상품교역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금지조항은 수입을 저해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WTO-X)는 196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분석 기

84) 세부 구성요소로서의 투자는 상위 구성요소로서의 투자와 달리 WTO에서 다루지 않는 투자 규범을 다루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 절에서는 구분하여 투자(WTO-X)로 표시하였다.

간에 상관없이 유의하게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WTO에서 다루지 않는 절차의 조화 및 단순화, 내국민대우, 분쟁해결 절차 수립 등의 규범이 주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4. 투자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대상 국가 분석 기간	196개국		48개국	
	1995~2015	2002~15	1995~2015	2002~15
수입국 GDP	0.752*** (0.029)	0.686*** (0.040)	0.745*** (0.035)	0.669*** (0.048)
수출국 GDP	0.617*** (0.028)	0.482*** (0.032)	0.618*** (0.032)	0.462*** (0.035)
TRIMs	-0.106 (0.073)	0.024 (0.076)	-0.156* (0.091)	-0.046 (0.102)
투자(WTO-X)	-0.187*** (0.072)	-0.155** (0.069)	-0.172 (0.107)	-0.153 (0.109)
주성분(시장접근)	0.234** (0.095)	0.201** (0.090)	0.184 (0.153)	0.253* (0.137)
주성분(서비스)	-0.382*** (0.065)	-0.203*** (0.071)	-0.410*** (0.092)	-0.163 (0.116)
주성분(지식재산권)	-0.016 (0.064)	-0.064 (0.043)	-0.007 (0.073)	-0.052 (0.048)
주성분(공공조달)	0.163** (0.069)	0.161*** (0.058)	0.203** (0.100)	0.140 (0.099)
주성분(경쟁)	-0.038 (0.077)	0.136* (0.071)	-0.098 (0.111)	0.122 (0.109)
주성분(표준)	0.316*** (0.097)	0.029 (0.087)	0.373*** (0.118)	0.045 (0.125)
주성분(무역구제조치)	-0.048 (0.067)	-0.044 (0.061)	-0.023 (0.113)	-0.080 (0.099)

표 4-14. 계속

대상 국가	196개국		48개국	
	1995~2015	2002~15	1995~2015	2002~15
분석 기간				
주성분(비교역이슈)	0.556*** (0.104)	0.234** (0.099)	0.678*** (0.129)	0.264* (0.135)
관측치	523,643	317,918	40,572	24,783
방법론	PPML	PPML	PPML	PPML
수입국-수출국 FE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 3) 지식재산권

#### 가) 분석 모형

지식재산권의 세부 구성요소인 TRIPs와 지식재산권(WTO-X)<sup>85)</sup>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식 4-4]이다. 기본적으로 수식 및 분석 방법론은 [식 4-2]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단 [식 4-4]에서는 상위 구성요소 지식재산권 주성분 지표 대신에 세부 구성요소인 TRIPs와 지식재산권(WTO-X)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85) 세부 구성요소로서의 지식재산권은 상위 구성요소로서의 지식재산권과 달리 WTO에서 다루지 않는 지식재산권 규범을 다루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 절에서는 구분하여 지식재산권(WTO-X)으로 표시하였다.

$$Trade_{ijk} = \exp \left( \begin{aligned} &GDP_{it} \beta_{GDP_i} + GDP_{jt} \beta_{GDP_j} \\ &+ TRIPs_{ijk} \beta_{TRIPs} + \text{지식재산권 (WTO-X)}_{ijk} \beta_{\text{지식재산권}} \\ &+ PCA(\text{시장 접근})_{ijk} \beta_{\text{서비스}} + PCA(\text{서비스})_{ijk} \beta_{\text{서비스}} + PCA(\text{투자})_{ijk} \beta_{\text{투자}} \\ &+ PCA(\text{공공조달})_{ijk} \beta_{\text{공공조달}} + PCA(\text{경쟁})_{ijk} \beta_{\text{경쟁}} \\ &+ PCA(\text{표준})_{ijk} \beta_{\text{표준}} + PCA(\text{무역구제조치})_{ijk} \beta_{\text{무역구제조치}} \\ &+ PCA(\text{비교역이슈})_{ijk} \beta_{\text{비교역이슈}} + \alpha_{ij} + \theta_t \end{aligned} \right) \epsilon_{ijk}$$

[식 4-4]

### 나) 분석 결과

[표 4-15]는 지식재산권의 세부 구성요소인 TRIPs와 지식재산권(WTO-X)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TRIPs의 경우 교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게 나왔으나 2002~15년간 48개국 대상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주요국의 교역관계에서 TRIP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식재산권(WTO-X)은 2002~15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대상 국가에 관계없이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지식재산권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

대상 국가	196개국		48개국	
	1995~2015	2002~15	1995~2015	2002~15
수입국 GDP	0.753*** (0.029)	0.686*** (0.040)	0.747*** (0.035)	0.673*** (0.049)
수출국 GDP	0.617*** (0.028)	0.482*** (0.032)	0.620*** (0.032)	0.466*** (0.035)
TRIPs	-0.053 (0.078)	0.074 (0.088)	0.138 (0.122)	0.385*** (0.109)
지식재산권	-0.005 (0.038)	-0.059** (0.023)	-0.019 (0.0436)	-0.087*** (0.026)

표 4-15. 계속

대상 국가	196개국		48개국	
	1995~2015	2002~15	1995~2015	2002~15
주성분(시장접근)	0.234** (0.096)	0.194** (0.091)	0.167 (0.159)	0.266** (0.134)
주성분(서비스)	-0.385*** (0.065)	-0.199*** (0.068)	-0.383*** (0.094)	-0.125 (0.092)
주성분(투자)	-0.254*** (0.089)	-0.133 (0.085)	-0.365*** (0.115)	-0.321*** (0.118)
주성분(공공조달)	0.138** (0.067)	0.112* (0.059)	0.166* (0.096)	0.034 (0.091)
주성분(경쟁)	-0.021 (0.087)	0.074 (0.081)	-0.156 (0.122)	-0.032 (0.110)
주성분(표준)	0.323*** (0.096)	0.043 (0.083)	0.358*** (0.115)	0.043 (0.108)
주성분(무역구제조치)	-0.042 (0.068)	-0.063 (0.062)	-0.055 (0.113)	-0.199** (0.096)
주성분(비교역이슈)	0.557*** (0.108)	0.294*** (0.103)	0.741*** (0.134)	0.397*** (0.131)
관측치	523,643	317,918	40,572	24,783
방법론	PPML	PPML	PPML	PPML
수입국-수출국 FE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 4) 경쟁

##### 가) 분석 모형

경쟁의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 국가보조, 경쟁정책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식 4-5]이다. 기본적으로 수식 및 분석 방법론은 [식 4-2]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단 [식 4-5]에서는 상위 구성요소 경쟁주성분 지표 대신에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 국가보조, 경쟁정책을 설명변

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Trade_{ijt} = \exp \left( GDP_{it} \beta_{GDP_a} + GDP_{jt} \beta_{GDP_x} \right. \\ \left. + \text{국영기업}_{ijt} \beta_{\text{국영기업}} + \text{국가보조}_{ijt} \beta_{\text{국가보조}} + \text{경쟁정책}_{ijt} \beta_{\text{경쟁정책}} \right. \\ \left. + PCA(\text{시장접근})_{ijt} \beta_{\text{시장접근}} + PCA(\text{서비스})_{ijt} \beta_{\text{서비스}} \right. \\ \left. + PCA(\text{투자})_{ijt} \beta_{\text{투자}} + PCA(\text{공공조달})_{ijt} \beta_{\text{공공조달}} \right. \\ \left. + PCA(\text{표준})_{ijt} \beta_{\text{표준}} + PCA(\text{무역구제조치})_{ijt} \beta_{\text{무역구제조치}} \right. \\ \left. + PCA(\text{비교역이슈})_{ijt} \beta_{\text{비교역이슈}} + \alpha_{ij} + \theta_t \right) \epsilon_{ijt}$$

[식 4-5]

#### 나) 분석 결과

[표 4-16]은 경쟁의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 국가보조, 경쟁정책을 설명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세부 구성요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영기업 세부 구성요소는 대부분의 경우에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6)</sup> 국영기업 조항의 주요 내용이 국영기업의 설립, 유지 관련 조항과 생산 및 마케팅 등 조건의 비차별성을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영기업의 영업행태를 다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생산비중이 높을 경우 수입의 위축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보조는 모든 조합에서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쟁정책은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86) 단 196개국 2002~15년을 분석 국가와 분석 대상 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표 4-16. 경쟁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

대상 국가 분석 기간	196개국		48개국	
	1995~2015	2002~5	1995~2015	2002~15
수입국 GDP	0.753*** (0.029)	0.688*** (0.040)	0.744*** (0.035)	0.670*** (0.049)
수출국 GDP	0.616*** (0.028)	0.482*** (0.032)	0.615*** (0.032)	0.462*** (0.035)
국영기업	-0.134** (0.061)	-0.087 (0.060)	-0.219*** (0.075)	-0.132* (0.075)
국가보조	0.120* (0.063)	0.166*** (0.056)	0.194** (0.088)	0.198** (0.082)
경쟁정책	0.004 (0.068)	0.076 (0.064)	-0.125 (0.106)	0.037 (0.111)
주성분(시장접근)	0.216** (0.093)	0.180** (0.088)	0.169 (0.145)	0.228* (0.136)
주성분(서비스)	-0.331*** (0.074)	-0.142* (0.075)	-0.366*** (0.094)	-0.104 (0.120)
주성분(투자)	-0.238*** (0.084)	-0.092 (0.080)	-0.184 (0.123)	-0.131 (0.127)
주성분(지식재산권)	-0.023 (0.065)	-0.086** (0.042)	0.001 (0.073)	-0.061 (0.047)
주성분(공공조달)	0.128** (0.065)	0.114** (0.058)	0.238** (0.095)	0.133 (0.105)
주성분(표준)	0.284*** (0.094)	0.030 (0.082)	0.339*** (0.110)	0.059 (0.117)
주성분(무역규제조치)	-0.064 (0.063)	-0.060 (0.060)	-0.043 (0.101)	-0.111 (0.097)
주성분(비교역이슈)	0.522*** (0.108)	0.224** (0.103)	0.518*** (0.159)	0.197 (0.153)
관측치	523,643	317,918	40,572	24,783
방법론	PPML	PPML	PPML	PPML
수입국-수출국 FE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 5) 표준

### 가) 분석 모형

표준의 세부 구성요소인 SPS와 TBT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식 4-6]이다. 기본적으로 수식 및 분석 방법론은 [식 4-2]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단 [식 4-6]에서는 상위 구성요소 표준 주성분 지표 대신에 세부 구성요소인 SPS와 TBT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Trade_{ijt} = \exp \left( \begin{array}{l} GDP_{it}\beta_{GDP_i} + GDP_{jt}\beta_{GDP_j} \\ + SPS_{ijt}\beta_{SPS} + TBT_{ijt}\beta_{TBT} \\ + PCA(\text{시장접근})_{ijt}\beta_{\text{시장접근}} + PCA(\text{서비스})_{ijt}\beta_{\text{서비스}} \\ + PCA(\text{투자})_{ijt}\beta_{\text{투자}} + PCA(\text{지식재산권})_{ijt}\beta_{\text{지식재산권}} \\ + PCA(\text{공공조달})_{ijt}\beta_{\text{공공조달}} + PCA(\text{경쟁})_{ijt}\beta_{\text{경쟁}} \\ + PCA(\text{무역구제조치})_{ijt}\beta_{\text{무역구제조치}} + PCA(\text{비교역이슈})_{ijt}\beta_{\text{비교역이슈}} \\ + \alpha_{ij} + \theta_t \end{array} \right) \epsilon_{ijt} \quad [\text{식 4-6}]$$

### 나) 분석 결과

[표 4-17]은 표준의 세부 구성요소인 SPS, TBT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세부 구성요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SPS는 모든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반면 TBT는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7)</sup> 이를 통해 상위 구성요소 표준이 교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TBT 효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87) 단 196개국 1995~2002년을 분석 대상과 분석 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표 4-17. 표준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

대상 국가 분석 기간	196개국		48개국	
	1995~2015	2002~15	1995~2015	2002~15
수입국 GDP	0.753*** (0.029)	0.687*** (0.040)	0.746*** (0.035)	0.670*** (0.048)
수출국 GDP	0.618*** (0.028)	0.482*** (0.032)	0.619*** (0.032)	0.462*** (0.035)
SPS	0.080 (0.117)	-0.150 (0.139)	0.035 (0.152)	-0.196 (0.149)
TBT	0.241** (0.108)	0.209 (0.133)	0.343** (0.156)	0.274* (0.158)
주성분(시장접근)	0.230** (0.096)	0.200** (0.092)	0.178 (0.157)	0.252* (0.140)
주성분(서비스)	-0.385*** (0.064)	-0.206*** (0.068)	-0.413*** (0.091)	-0.169 (0.111)
주성분(투자)	-0.268*** (0.091)	-0.102 (0.083)	-0.312** (0.121)	-0.176 (0.125)
주성분(지식재산권)	-0.020 (0.064)	-0.071 (0.043)	-0.010 (0.073)	-0.053 (0.048)
주성분(공공조달)	0.139** (0.068)	0.121** (0.059)	0.195* (0.103)	0.101 (0.092)
주성분(경쟁)	-0.050 (0.080)	0.107 (0.072)	-0.118 (0.118)	0.090 (0.108)
주성분(무역구제조치)	-0.046 (0.068)	-0.046 (0.061)	-0.020 (0.115)	-0.085 (0.098)
주성분(비교역이슈)	0.581*** (0.107)	0.274*** (0.101)	0.703*** (0.135)	0.305** (0.135)
관측치	523,643	317,918	40,572	24,783
방법론	PPML	PPML	PPML	PPML
수입국-수출국 FE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 6) 무역구제

### 가) 분석 모형

무역구제의 세부 구성요소인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식 4-7]이다. 기본적으로 수식 및 분석 방법론은 [식 4-2]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단 [식 4-7]에서는 상위 구성요소 무역구제 주성분 지표 대신에 세부 구성요소인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Trade_{ijt} = \exp \left( \begin{array}{l} GDP_{it} \beta_{GDP_{it}} + GDP_{jt} \beta_{GDP_{jt}} \\ + \text{반덤핑조치}_{ijt} \beta_{\text{반덤핑조치}} + \text{상계관세}_{ijt} \beta_{\text{상계관세}} \\ + PCA(\text{시장접근})_{ijt} \beta_{\text{시장접근}} + PCA(\text{서비스})_{ijt} \beta_{\text{서비스}} \\ + PCA(\text{투자})_{ijt} \beta_{\text{투자}} + PCA(\text{지식재산권})_{ijt} \beta_{\text{지식재산권}} \\ + PCA(\text{공공조달})_{ijt} \beta_{\text{공공조달}} + PCA(\text{경쟁})_{ijt} \beta_{\text{경쟁}} \\ + PCA(\text{표준})_{ijt} \beta_{\text{표준}} + PCA(\text{비교역이슈})_{ijt} \beta_{\text{비교역이슈}} \\ + \alpha_{ij} + \theta_t \end{array} \right) \epsilon_{ijt} \quad [\text{식 4-7}]$$

### 나) 분석 결과

[표 4-18]은 무역구제의 세부 구성요소인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앞 절에서 무역구제 상위 구성요소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세부 구성요소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반덤핑조치는 4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에 반덤핑조치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조사 개시 등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이 개선되고 협의와 같은 절차상 특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계관세는 모든 경우에 유의하게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무역구제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대상 국가	196개국		48개국	
	1995~2015	2002~15	1995~2015	2002~15
반덤핑조치	0.127 (0.101)	0.118 (0.0952)	0.286** (0.128)	0.246** (0.103)
상계관세	-0.165** (0.081)	-0.154** (0.078)	-0.285*** (0.071)	-0.310*** (0.057)
주성분(시장접근)	0.217** (0.098)	0.189** (0.094)	0.142 (0.167)	0.208 (0.150)
주성분(서비스)	-0.383*** (0.064)	-0.204*** (0.070)	-0.412*** (0.092)	-0.165 (0.114)
주성분(투자)	-0.270*** (0.090)	-0.099 (0.085)	-0.313*** (0.119)	-0.173 (0.127)
주성분(지식재산권)	-0.020 (0.064)	-0.073* (0.044)	-0.008 (0.073)	-0.054 (0.049)
주성분(공공조달)	0.140** (0.066)	0.124** (0.059)	0.193** (0.094)	0.107 (0.092)
주성분(경쟁)	-0.041 (0.078)	0.123* (0.073)	-0.090 (0.111)	0.124 (0.110)
주성분(표준)	0.319*** (0.095)	0.046 (0.085)	0.367*** (0.117)	0.045 (0.123)
주성분(비교역이슈)	0.574*** (0.105)	0.258** (0.102)	0.685*** (0.131)	0.276** (0.137)
관측치	523,643	317,918	40,572	24,783
방법론	PPML	PPML	PPML	PPML
수입국-수출국 FE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 다. 소결

본 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Worldbank(2017) DB는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를 52개로 분류하였으나 52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을 추정할 경우 추정방법론상의 문제점 및 해석상의 한계점이 예상되어 이들 52개 세부 구성요소를 DESTA의 분류기준에 따라 총 9개 상위 구성요소로 재분류하였다. 이 9개 상위 구성요소에 대해 주성분 분석(PCA)을 통하여 새로운 지표(PCA 지표)를 구축하고, 새로이 생성된 PCA 지표를 활용하여 9개 구성요소의 개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위 구성요소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되, 나머지 다른 상위 구성요소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기타 상위 구성요소 지표들 역시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구성요소인 시장접근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시장접근의 세부 구성요소인 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 관세자유화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세는 그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서비스 구성요소는 교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선진국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개도국간 교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로서 투자 역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선진국의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이었다. 세부 구성요소를 통해 추가로 분석한 결과 WTO에서 다루지 않는 투자 규범들이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은 개도국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공공조달의 경우 개도국의 조달시장 접근성 및 투명성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관한 상위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 국가보조, 경쟁정책을 설명변수로 포함한 분석에서 국영기업

은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보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상위 구성요소인 표준은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PS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TBT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구성요소인 무역구제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선진국간 그리고 개도국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는데, 반덤핑조치가 주요국간 교역 확대에 기여하는 데 비해 상계관세는 모든 국가조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제5장



#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 1. 요약

자유무역협정이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체결되었다면 2000년대 전후로는 다양한 지역의 국가간 협정으로 확산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의 범위 역시 상품 중심 협정에서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협정으로 진화하였고 GVC 심화와 함께 협정이 포괄하는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아울러 WTO 체제 이전에는 주로 유사한 경제 수준의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면 1995년 이후에는 개도국-개도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빠르게 확산되는 동시에 선진국-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재에는 선진국-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동시에 협정 수준도 높아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Worldbank(2017) DB에 의하면 자유무역협정은 14개 WTO+ 구성요소와 38개 WTO-X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 WTO-X에 비해 WTO+ 요소의 협정 포함 비중이 높고 법적구속력도 강력하였다.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WTO+ 및 WTO-X 구성요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분쟁절차까지 포함한 강력한 법적구속력이 부여된 요소의 수에서는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보다 다양한 구성요소를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난 세계적 양상인 반면 그러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는 협정 당사국간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선진국 간 자유무역협정과 선진국-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 수는 비슷하나 법적구속력 수준은 선진국-선진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와 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별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

합할수록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양(+)의 교역효과는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동태적 효과 분석에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WTO-X 구성요소를 많이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일수록 유의미한 양(+)의 교역효과가 더 오래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Worldbank (2017) DB의 52개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즉 세부 구성요소를 주성분 분석을 통해 9개 상위 구성요소 지표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구성요소로서 시장접근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는 교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구성요소로서 투자 역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의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이었다. 상위 구성요소로서 지식재산권은 개도국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경쟁에 관한 상위 구성요소는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보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구성요소 표준은 개도국의 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 무역구제는 선진국간 그리고 개도국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표 5-1. 구성요소별 교역 영향 요약

구성요소	이론적/직관적 영향	상위 구성요소	세부 구성요소
시장접근	(+) 특허시장접근	대부분 (+) 개도국간 효과 커	제조업, 농업 관세자유화 (+)
서비스	(+) 서비스중간재 활용 (-) 교역구조 전환	선진국간 (+) 개도국간 (-)	
투자	(+) 수직적 투자 (-) 수평적 투자	선진국의 수출 (-)	투자(WTO-X) (-)
지식 재산권	(+) 특허권자 신뢰 확보 (-) 기술모방용 수요 ↑↓, 수입재가격 ↑, 수출기업의 물량통제	개도국간 교역 (-)	TRIPs (+) 지재산권(WTO-X) (-)
공공조달	(+) 투명성 ↑ (-) 자국제품 사용 강요 Home bias	개도국의 수입 (+)	
경쟁	(+) 한계기업 퇴출, 경쟁심화로 수입재 가격↓ (-) 기업수 및 경쟁력 ↑ 인한 수입대체	선진국의 수입(+)	국영기업 (-) 국가보조 (+)
표준	(+) 소비자 신뢰 ↑ 탐색비용 ↓ (-) 기업의 순응비용 ↑	개도국의 선진국 수출(-), 개도국간 교역(+)	TBT (+)
무역구제	(+) 절차적 특혜 (-) 수입금지 시 남용↑	선진국간 교역(-) 개도국간 교역(-)	반덤핑 (+) 상계관세 (-)
비교역 이슈		대부분 긍정적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결과와 함께 무역협정문상에는 특정 항목 혹은 구성요소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협상 타결 후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협정문 분석만으로 교역효과를 식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2. 정책 시사점

### 가.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은 상대국의 경제 수준이나 상대국이 속한 지역 측면에서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편이다. 즉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교역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지역)나 기존에 무역이 활발한 교역 상대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신흥국과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교역에 보다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교역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거 2003년 수립되었던 FTA 로드맵과 같이 신흥 개도국과의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상품교역을 통해서만 우리 경제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로드맵에서는 잠재적인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 정치, 외교, 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우선 추진상대국을 식별하고 구성요소별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국의 경우에도 각국의 경제, 정치, 외교 등 다양한 기준과 상황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을 선정하고 있다.

표 5-2. 주요국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선정기준 비교

일본	미국	EU	중국
- 외무성(2002) ① 경제적 기준 ② 지리적 기준 ③ 정치 외교적 기준 ④ 실현 가능성 기준 ⑤ 시간적 기준 - 외무성(2004) ①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기여 가능성 ② 경제적 실익 ③ EPA/FTA 실현 가능성	- GAO(2004) ① 상대국 준비 정도 ② 경제적 이익 ③ 미국 무역자유화 전략 확대에 대한 지지 ④ 미국 국익과의 적합성 ⑤ 의회/민간부문 지지 ⑥ 미국 정부의 자원 제약 - IIE(2004) ① 국내 정치적 고려 ② 경제정책 고려 ③ 상대국의 의지 ④ 외교정책 고려	① 시장잠재력 ② EU 수출이익에 반하는 보호 수준(관세 및 비관세장벽)	① 중국과 좋은 정치적 외교적 관계 유지 여부 ② 중국과 상호 보완적인 무역패턴과 경제 구조 ③ 방대한 국내시장 보유 여부 또는 지역의 자유무역협정 허브 역할 ④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common desire 공유

자료: KIEP(2017b), p. 30.

우리나라 역시 이미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가 완성됨에 따라 신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국내 문헌 검토도 활발해졌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준원(2017)에서는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시장의 규모, 성장 잠재력, 교역 및 투자장벽, 자원 확보 가능성, 우리의 수출경쟁력과 상대국의 국가위험도 등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수동 외(2016)는 상대국 산업구조와의 경합도와 정합도를 고려하여 유망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적인 점은 산업 및 교역구조를 토대로 유망국을 식별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산업발전 추구, 시장과 일자리 창출, 기술연계, 산업 및 자원협력 등 유형별 전략을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김영한 외(2015)에서는 시장 확보 가능성, 산업협력 가능성, 기술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신선영(2008)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대국과의 협정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국의 시장 및 경제성장 잠재력, 관세 수준, 국내산업에의 피해 가능성, 자원 보유 현황, 여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

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무역협정의 초점이 시장 확보와 이를 통한 수출 확대에 맞춰져 있었다면, 향후 신흥개도국과의 협정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이나 포용적 통상정책 관점에서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정책으로서 통상정책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두 목표는 수출을 통한 총생산의 증가가 아닌 그 과정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상대국과의 생산 및 경제구조를 고려하는 한편, 양국을 포함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정문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통상정책 관점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신흥개도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개척뿐 아니라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처 발굴의 관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협상전략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의 대개도국 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과 더불어 투자, 지식재산권, 표준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나. 높은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는 상대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선진국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개도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본 연구에서 WTO-X 구성요소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시 이들 구성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양자

경제협력관계를 반영한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정협상 역시 신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 MERCOSUR와 같은 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는 WTO-X 요소, 즉 각종 비관세조치를 완화하고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한 규범의 포함 비중을 더욱 높여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교역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무역협정 개선대상의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시스템 및 산업/교역 구조의 관점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개선협상 대상국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대개도국 협상 분야를 연구하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개도국의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나 표준 관련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다. WTO-X 및 신규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중 하나는 새로운 무역이슈의 부상이다. 대표적인 이슈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미중 분쟁 과정이나 USMCA(NAFTA 2.0)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공정경쟁 관점에서의 이슈들(지식재산권, 국영기업과 노동, 환경 등)도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공고화되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며 동시에 법과 제도 등 규제의 조화를 통한 글로벌 표준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이 높

을수록, 특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유의미한 양(+)의 교역증진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WTO-X에 대한 논의는 비단 자유무역협정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 무역이슈들이 등장하면서 WTO-X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제경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아직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그 필요성에 비해 뒤쳐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국제통상규범은 그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와 검토가 진행된다. 그 이후 보다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규범의 초안이 만들어지고 종종 WTO나 OECD의 작업반이나 관련 위원회를 통해 관련국이 정식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WTO를 포함한 이슈별 국제기구뿐 아니라 CPTPP나 메가 FTA 등 다양한 논의의 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무역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겠다.

## 라. 구성요소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그동안 우리는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왔으나, 주요 관심은 상품의 시장접근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시장접근(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 관세자유화)뿐만 아니라 표준 및 비교역이슈 역시 교역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비관세 이슈가 교역을 촉진하는 경로에 대한 면밀한 식별을 통해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농업에서의 개선된 시장접근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 FTA 활용 지원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외 구성요소를 위한 활용지원책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주

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이들 조항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이행위원회 및 (개선)협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통상정책의 성패는 결국 협정을 통해 만들어진 기회를 기업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과 같은 주요국의 경우 협상 및 이행의 모든 과정에 이행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효과적인 의견수렴과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가 운영 중이나, 대부분 시장접근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의 경우 관련 협의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해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기존의 협의체를 검토하고 필요시 재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권영민, 이수희, 김남두, 이흥구, 원용걸. 2001. 『뉴라운드와 공산품 분야의 시장접근』. 연구보고서 2001-02. 한국경제연구원.
- 김수동, 이상규, 김바우, 박가영. 2016. 『FTA 추진 유망국가 선정과 제조업 부문 경제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16-798. 산업연구원.
- 김영한 외. 2015. 『신흥시장에 대한 중장기 FTA 정책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자료.
- 박성훈, 한홍열, 송유철, 강문성, 송백훈. 2017.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7-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선영. 2008. 『향후 FTA 우선 추진 국가 검토』. 한국무역협회.
- 안덕근. 2012.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대안』.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새별. 2016. 『Mega FTA 대응전략 연수: TBT 협정을 중심으로』, p. 10. 연구자료 16-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부.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윤미경, 김종근, 나영숙. 1999.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 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자료논문 99-24/OECD 연구시리즈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승주. 2010. 『FTA의 확산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증충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2권 1호, pp. 133~164. 중앙대학교.
- 이준원. 2017.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발굴 연구』. 『Trade Focus』, 16호. 국제무역연구원.
- 조미진, 박현정. 2007.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3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승환. 2014. 『국제경제법』. 법영사.
- 한석호, 김영귀, 김수동, 김봉태, 정인교. 2016. 『메가 FTA의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KIEP. 2017a.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망 FTA 체결국 등 전략연구』.

- \_\_\_\_\_. 2017b. 『주요 지역무역협정 모니터링 분석체계 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
- Shadikhodjaev, Sherzod, 서정민, 김민성, 이채형. 2012. 『저탄소 녹색성장과 다자무역규범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12-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 Acharya, R. 2016.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derson, R. D., A. C. Müller, K. Osei-Lah, J. P. De Leon, and P. Pelletier. 2011. “Government Procurement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a Stepping Stone to GPA Accession?” Sue Arrowsmith and Robert D. Anderson eds. *The WTO Regime on Government Procurement: Challenge and Reform*, pp. 561-656. Cambridge.
- Baier, S. L. and J. H. Bergstrand. 2004. “Economic Determinants of Free Trade Agre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64, Iss. 1, pp. 29-63.
- \_\_\_\_\_. 2007. “Do Free Trade Agreements Actually Increase Member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71, Iss. 1, pp. 72-95.
- Baldwin, R. 2008. “Big-Think Regionalism: A Critical Survey.” NBER Working Paper, No. 14056.
- Bhagwati, J. and A. Panagariya. 1996. “Preferential Trading Areas and Multilateralism: Strangers, Friends or Foes?” Discussion Paper Series, No. 9596-04. Washington, D.C: AEI Press.
- Blonigen, B. A. and J. Piger. 2014.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47, Iss. 3, pp. 775-812.
- Chornyi, V., M. Nerushay, and J. Crawford. 2016. “A Survey of Investment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Working Paper, No. ERS-2016-07.
- Crawford, J. 2012. “Market Access Provisions on Trade in Good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Staff Working Papers, No.

ERSD-2012-20.

- Damuri, Y. R. 2012. "21st Century Regionalism and Production Sharing Practice." CTEI Working Papers. The Graduate Institute.
- Deardorff, A. V. and R. M. Stern. 1994.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and Preference Trading Arrangements." Alan Deardorff and Robert M. Stern eds. *Analytical and negotiation Issue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Chapter 2.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Egger, P. and M. Larch. 2008. "Interdependent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Membership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76, Iss. 2, pp. 384-399.
- Elsig, M. and J. Surbeck. 201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Data, Concepts and Research Avenues." NCCR Trade Working Paper Series, 2016/02. Bern, Switzerland: World Trade Institute, NCCR Trade Regulation.
- Ethier, W. 1998. "Regionalism in a Multilateral Worl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6, Iss. 6, pp. 1214-1245.
- Evenett, S. 2003. "Is There a Case for New Multilateral Rules on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S. Evenett and the Swiss State Secretariat of Economic Affairs eds. *The Singapore Issues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Road to Cancun and Beyond*.
- Feenstra, R. C. 2004. *Advanced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Evid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errantino, M. 1993. "The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29(2), pp. 300-331.
- Frnk, J. 2015. "International Agreements on Trade in Government Procurement: Formation and Effect." Ph.D. Thesis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of Georgetown University.
- Hofmann, C., A. Osnago, and M. Ruta. 2017. "Horizontal Depth: A New Database on the Content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7981. Washington, D.C.:

- World Bank Group.
- Horn, H., P. C. Mavroidis, and A. Sapir. 2010. "Beyond the WTO? An Anatomy of EU and U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The World Economy*, Vol. 33, Iss. 11, pp. 1565-1588.
- Ivus, O. 2010. "Do Stronger Patent Rights Raise High-tech Exports to the Developing Worl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1, Iss. 1, pp. 38-47.
- \_\_\_\_\_. 2015. "Does Stronger Patent Protection Increase Export Variety? Evidence from U.S. Product-level Dat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46, Iss. 6, pp. 724-731.
- Jackson, L. and H. Vitikala. 2016. "Cross-cutting Issu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R. Acharya ed.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TO Internal Only, pp. 316-3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CBO9781316676493.009.
- Jolliffe, I. T. 2002. "Graphical Representation of Data Using Principal Component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New York: Springer-Verlag.
- Krishna, P. 2003. "Are Regional Trading Partners Natur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1, Iss. 1, pp. 202-226.
- Krueger, A. 1999. "Are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Trade Liberalizing or Protectionis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3, Iss. 2, pp. 105-124.
- Krugman, P. 1989. "Is Bilateralism Bad?" NBER Working Paper, No. 2972.
- Laprévôte, F. C., S. Frisch, and B. Can. 2015. "Competition Policy within the Context of Free Trade Agreements." E15 Initiative.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TSD) and World Economic Forum.
- Lawrence, R. 1996. *Regionalism, Multilateralism and Deeper Integration*.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Magee, C. S. 2003. "Endogenou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 Empirical Analysis." *The B. 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 2, Iss. 1, pp. 1-19. De Gruyter.

- Maskus, K. E. and M. Penubarti. 1995. "How Trade-related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39, Iss 3-4, pp. 227-248.
- Maskus, K. E. and W. Ridley. 2016.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the Composition of Trade." EUI Working Paper, RSCAS 2016/35.
- Mattoo, A., A. Mulabdic, and M. Ruta. 2017.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Deep Agreement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8206, pp. 1-44. (September)
- Moenius, J. 2004. "Information Versus Product Adaptation. The Role of Standards in Trade." Kellogg School of Management Working Paper, Northwestern University.
- \_\_\_\_\_. 2006. "The Good, the Bad and the Ambiguous: Standards and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IATRC Summer Symposium. Bonn, Germany. (May 28-30)
- Molina, A. C. and V. Khoroshavina. 2015. "TBT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What Extent Do They Go beyond the WTO TBT Agreement?" WTO Staff Working Paper, No. ERSD-2015-09.
- Rey, Jean-Daniel. 2012. "Antidumping Regional Regime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Do Regional Antidumping Regimes Make a Difference?" WTO Staff Working Paper, No. ERSD-2012-22.
- Richard, S. J. and D. Y. Kono. 2014. "Think Globally, Buy Locally: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Government Procurement."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9, Iss. 3, pp. 333-352.
- Roy, M. 2011. "Services Commitments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 Expanded Dataset." WTO Staff Working Paper, No. ERSD-2011-18.
- Shingal, A. 2011. "Services Procurement under the WTO's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Wither Market Access?" *World Trade Review*, Vol. 10, no. 4, pp. 1-23.
- Silva, J. S. and S. Tenreyro. 2006. "The Log of Gra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8, Iss. 4, pp. 641-658.

- Smith, P. 1999. "Are Weak Patent Rights a Barrier to U.S. Expor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8, Iss. 1, pp. 151-177.
- Summers, L. 1991. "Regionalism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pp. 295-301. Symposium on Policy Implication of Trade and Currency Zone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 Teh, R. 2009. "Competition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A. Estevadeordal, K. Suominen, and R. Teh eds. *Regional Rule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pp. 418-49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2010. *Integrating Developing Countries' SMEs into Global Value Chains*.
- Valdés, R. and M. McCann. 2014.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Revision and Update." WTO Staff Working Paper, no. ERSD-2014-14.
- Wonnacott, P. and M. Lutz. 1989. "Is There a Case for Free Trade Areas?" J. J. Schott ed. *Free Trade Areas and U.S. Trade Policy*, pp. 59-84. Washinton, D.C.: Inst. Int. Econ.
- WTO. 2008. *Multilateralizing Regionalism: Challenges to the Global Trading System*. Patrick Low and Richard Baldwin eds. Geneva.
- \_\_\_\_\_. 2011. *The WTO and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From Co-existence to Coherence*. World Trade Report 2011.
- Zissimos, B. 2011. "Why are Trade Agreements Regional?"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9, Iss. 1, pp. 32-45.

#### [온라인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38771&cid=42143&categoryId=42143>(검색일: 2018. 11. 20).
- 한국의 기발효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검색일: 2018. 6. 28).
- DESTA. <https://www.designoftradeagreements.org/downloads/>(검색일: 2018. 10. 15).
- Lin, Jenny and William Lincoln. 201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ffect the Pattern of Trade." <https://voxeu.org/article/intellectual-property-rights-affect-pattern-trade>(검색일: 2018. 11. 28).

-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18. 5. 11).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18. 5. 10).
- Worldbank. 2017. <http://datacatalog.worldbank.org/dataset/content-dep-trade-agreements>(검색일: 2018. 3. 2).
-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Information System(RTA-IS).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검색일: 2018. 5. 18).

**[협정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부 록

1. 주성분 분석(포함 여부)
2. 주성분 분석(법적구속력 여부)
3. 주성분 분석(분쟁해결대상 여부)

## 부록 1. 주성분 분석(포함 여부)

부표 1-1.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시장접근)

시장접근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2.8655	0.9552	제조업 관세자유화	0.5818	0.6745
주성분 2	0.1215	0.0405	농업 관세자유화	0.5842	0.6489
주성분 3	0.0129	0.0043	수출세	0.5659	0.9338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2.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투자)

투자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1.4315	0.7158	TRIMs	0.7071	0.5
주성분 2	0.5684	0.2842	투자	0.7071	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3.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지식재산권)

지재권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1.8547	0.9274	TRIPs	0.7071	0.5
주성분 2	0.1452	0.0726	지식재산권	0.7071	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4.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경쟁)

경쟁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2.6981	0.8994	국영기업	0.5672	0.8470
주성분 2	0.1950	0.0650	국가보조	0.5811	0.7334
주성분 3	0.1067	0.0356	경쟁정책	0.5836	0.717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5.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표준)

표준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1.8644	0.9322	SPS	0.7071	0.5
주성분 2	0.1355	0.0678	TBT	0.7071	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6.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1.9295	0.9648	반덤핑조치	0.7071	0.5
주성분 2	0.0704	0.0352	상계관세조치	0.7071	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7.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비교역이슈)

비교역이슈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주성분 2 고유벡터
주성분 1	20.0896	0.5580	통관	0.1861	0.0986
주성분 2	3.5081	0.0974	반부패	0.0885	-0.0587
주성분 3	2.6553	0.0738	환경법	0.2080	0.1023
주성분 4	2.2793	0.0633	노동시장규제	0.1671	-0.0296
주성분 5	1.5013	0.0417	자본이동	0.2060	0.0979
주성분 6	1.1548	0.0321	소비자보호	0.1795	-0.2064
주성분 7	0.8307	0.0231	데이터 보호	0.1229	0.1375

부표 1-7. 계속

비교역이슈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주성분 2 고유벡터
주성분 8	0.5984	0.0166	농업 기술지원	0.1967	0.0356
주성분 9	0.4631	0.0129	입법절차 통일	0.1767	-0.1455
주성분 10	0.3609	0.0100	시청각	0.1780	-0.1851
주성분 11	0.3325	0.0092	시민보호	0.0752	0.0417
주성분 12	0.2977	0.0083	혁신정책	0.0541	0.2165
주성분 13	0.2304	0.0064	문화협력	0.1985	0.0420
주성분 14	0.2211	0.0061	경제정책 대화	0.1862	-0.1038
주성분 15	0.1977	0.0055	교육훈련	0.2032	0.0116
주성분 16	0.1585	0.0044	에너지	0.2031	0.1141
주성분 17	0.1409	0.0039	금융지원	0.1966	0.0376
주성분 18	0.1269	0.0035	보건	0.1758	-0.1020
주성분 19	0.1089	0.0030	인권	0.1140	0.2313
주성분 20	0.0955	0.0027	불법이민	0.1659	-0.2314
주성분 21	0.0868	0.0024	불법약물	0.1343	0.2647
주성분 22	0.0752	0.0021	산업협력	0.1985	0.0370
주성분 23	0.0712	0.0020	정보사회	0.1455	0.3012
주성분 24	0.0631	0.0018	광업	0.1563	-0.2273
주성분 25	0.0573	0.0016	자금세탁	0.1112	0.2159
주성분 26	0.0520	0.0014	원자력 안전	0.1507	-0.3278
주성분 27	0.0439	0.0012	정치적 대화	0.1272	0.2202
주성분 28	0.0361	0.0010	공공행정	0.1032	0.1252
주성분 29	0.0295	0.0008	지역협력	0.1979	0.1056
주성분 30	0.0276	0.0008	공동연구	0.2096	0.1008
주성분 31	0.0255	0.0007	중소기업	0.1717	-0.1473
주성분 32	0.0228	0.0006	사회 문제	0.2083	0.0989
주성분 33	0.0182	0.0005	통계	0.1974	-0.0091
주성분 34	0.0160	0.0004	조세	0.1521	-0.3109
주성분 35	0.0134	0.0004	테러리즘	0.1221	0.0022
주성분 36	0.0081	0.0002	비자와 인력이동	0.1478	-0.2702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8.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비교역이슈) (계속)

변수	주성분 3 고유벡터	주성분 4 고유벡터	주성분 5 고유벡터	주성분 6 고유벡터	KMO 지수
통관	-0.0606	-0.1116	0.0325	-0.0865	0.9774
반부패	0.2335	0.0675	0.2571	0.3179	0.7775
환경법	-0.0535	-0.1125	0.0200	-0.0648	0.9128
노동시장규제	0.0839	-0.3558	-0.0513	0.2167	0.8948
자본이동	-0.0515	-0.1142	0.0353	-0.0786	0.9722
소비자보호	0.0787	0.0975	0.0286	-0.2197	0.9124
데이터보호	0.3759	-0.1410	0.2485	-0.0226	0.7972
농업 기술지원	-0.2008	0.0580	-0.0468	0.0021	0.9422
입법절차 통일	-0.0266	0.1234	0.0058	-0.2223	0.9017
시청각	0.1687	0.1276	-0.0064	0.0576	0.9188
시민보호	0.4513	-0.0047	-0.2786	-0.1743	0.7402
혁신정책	0.1591	-0.3500	0.4624	0.0224	0.6046
문화협력	-0.0481	0.0457	-0.2088	0.1393	0.929
경제정책 대화	-0.0715	-0.0878	-0.2392	-0.1023	0.932
교육훈련	-0.0951	0.0086	-0.1843	-0.0567	0.9485
에너지	-0.0208	-0.1081	-0.0193	0.1071	0.9166
금융지원	-0.0141	-0.1666	0.0035	-0.0065	0.8976
보건	0.0732	-0.1379	-0.2860	0.2495	0.8831
인권	0.0071	0.4072	0.1322	0.0862	0.9138
불법이민	0.0201	0.1461	0.1897	0.2306	0.821
불법약물	-0.0968	0.1761	-0.1783	0.3285	0.8076
산업협력	-0.2014	0.0617	-0.0604	0.0154	0.9279
정보사회	-0.1185	-0.1373	0.0848	-0.1209	0.9597
광업	0.0592	0.0508	0.1201	0.2201	0.8915
자금세탁	0.0283	0.4144	0.1695	0.1335	0.8213
원자력 안전	-0.1230	-0.0103	0.1560	-0.1314	0.8994
정치적 대화	-0.1196	0.3059	0.1553	-0.2959	0.8586
공공행정	0.3605	0.1156	-0.1879	-0.2451	0.8483
지역협력	-0.1572	-0.0963	0.1264	-0.0164	0.9463
공동연구	-0.0520	-0.1052	0.0084	-0.0645	0.9319

부표 1-8. 계속

변수	주성분 3 고유벡터	주성분 4 고유벡터	주성분 5 고유벡터	주성분 6 고유벡터	KMO 지수
중소기업	0.1185	0.0588	0.0050	-0.3034	0.9544
사회 문제	-0.0512	-0.1045	0.0050	-0.0549	0.921
통계	0.0099	0.0435	-0.2397	0.2006	0.9311
조세	-0.1111	0.0113	0.1690	-0.1503	0.9275
테러리즘	0.4168	0.1213	-0.0176	0.0212	0.7997
비자와 인력이동	-0.0504	0.0447	0.1730	0.1320	0.9051

자료: 저자 작성.

## 부록 2. 주성분 분석(법적구속력 여부)

부표 2-1.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시장접근)

시장접근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2.8305	0.9435	제조업 관세자유화	0.5838	0.6618
주성분 2	0.1562	0.0521	농업 관세자유화	0.5862	0.6429
주성분 3	0.0131	0.0044	수출세	0.5618	0.9458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2.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투자)

투자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1.5067	0.7534	TRIMs	0.7071	0.5
주성분 2	0.4932	0.2466	투자	0.7071	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3.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지식재산권)

지재권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1.8677	0.9339	TRIPs	0.7071	0.5
주성분 2	0.1322	0.0661	지식재산권	0.7071	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4.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경쟁)

경쟁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2.7217	0.9072	국영기업	0.5655	0.8557
주성분 2	0.1940	0.0647	국가보조	0.5797	0.7322
주성분 3	0.0842	0.0281	경쟁정책	0.5867	0.6872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5.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표준)

표준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1.8838	0.9419	SPS	0.7071	0.5
주성분 2	0.1161	0.0581	TBT	0.7071	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6.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1.8703	0.9352	반덤핑조치	0.7071	0.5
주성분 2	0.1296	0.0648	상계관세조치	0.7071	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7.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비교역이슈)

비교역이슈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주성분 2 고유벡터
주성분 1	20.3075	0.5641	통관	0.1232	0.0638
주성분 2	3.4230	0.0951	반부패	0.1000	0.0164
주성분 3	2.2855	0.0635	환경법	0.1837	0.0720
주성분 4	1.7834	0.0495	노동시장규제	0.1840	0.0706
주성분 5	1.2193	0.0339	자본이동	0.1358	0.0518
주성분 6	1.1625	0.0323	소비자보호	0.2165	0.0309
주성분 7	1.0812	0.0300	데이터보호	0.0981	0.2829
주성분 8	0.8725	0.0242	농업 기술지원	0.1789	-0.1936
주성분 9	0.6221	0.0173	입법절차 통일	0.2030	0.0268
주성분 10	0.5137	0.0143	시청각	0.2155	0.0310
주성분 11	0.4722	0.0131	시민보호	0.0866	0.4635
주성분 12	0.4274	0.0119	혁신정책	0.0034	0.0213
주성분 13	0.2357	0.0065	문화협력	0.2096	0.0309
주성분 14	0.217	0.0060	경제정책 대화	0.2156	0.0304
주성분 15	0.1858	0.0052	교육훈련	0.2142	0.0264

부표 2-7. 계속

비교역이슈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주성분 2 고유벡터
주성분 16	0.1700	0.0047	에너지	0.1924	0.0196
주성분 17	0.1552	0.0043	금융지원	0.2070	0.0305
주성분 18	0.1390	0.0039	보건	0.2152	0.0297
주성분 19	0.1221	0.0034	인권	0.0108	0.0063
주성분 20	0.1145	0.0032	불법이민	0.1831	-0.1910
주성분 21	0.0910	0.0025	불법약물	0.0152	0.1182
주성분 22	0.0677	0.0019	산업협력	0.1722	-0.1633
주성분 23	0.0590	0.0016	정보사회	0.0061	0.0474
주성분 24	0.0520	0.0014	광업	0.2006	-0.1944
주성분 25	0.0427	0.0012	자금세탁	0.0238	0.1545
주성분 26	0.0362	0.0010	원자력 안전	0.2003	-0.2129
주성분 27	0.0313	0.0009	정치적 대화	0.0214	0.1453
주성분 28	0.0295	0.0008	공공행정	0.0844	0.4561
주성분 29	0.0181	0.0005	지역협력	0.1993	-0.1938
주성분 30	0.0162	0.0005	공동연구	0.2140	0.0269
주성분 31	0.0133	0.0004	중소기업	0.1965	0.0622
주성분 32	0.0110	0.0003	사회 문제	0.1877	0.0317
주성분 33	0.0075	0.0002	통계	0.2123	0.0297
주성분 34	0.0055	0.0002	조세	0.1806	-0.1941
주성분 35	0.0052	0.0001	테러리즘	0.1334	0.3357
주성분 36	0.0028	0.0001	비자와 인력이동	0.1891	-0.18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8.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비교역이슈) (계속)

변수	주성분 3 고유벡터	주성분 4 고유벡터	주성분 5 고유벡터	주성분 6 고유벡터	주성분 7 고유벡터	KMO 지수
통관	0.0529	0.5181	0.0894	-0.0348	-0.0133	0.9373
반부패	0.1464	-0.0045	-0.6428	0.0802	-0.0029	0.7773
환경법	-0.0342	0.1851	-0.1242	0.1852	-0.0038	0.8651
노동시장규제	-0.0322	0.1834	-0.1225	0.1915	-0.0152	0.875
자본이동	0.0668	0.5012	0.0549	-0.1349	-0.0203	0.8662
소비자보호	-0.0358	-0.0960	0.0454	-0.0570	0.0119	0.9582
데이터보호	-0.0493	0.2701	-0.4271	0.1014	-0.0399	0.8216
농업 기술지원	0.0871	-0.0177	-0.0257	-0.0515	-0.0071	0.9078
입법절차 통일	-0.0343	-0.0377	0.0566	-0.0502	-0.0058	0.9768
시청각	-0.0408	-0.0905	0.0456	-0.0555	0.0041	0.9762
시민보호	-0.1081	-0.1165	0.1647	-0.0695	0.0072	0.7952
혁신정책	0.1565	0.0218	-0.0077	0.0372	0.9082	0.1653
문화협력	-0.0377	-0.0742	0.0519	-0.0608	0.0096	0.9716
경제정책 대화	-0.0409	-0.0806	0.0883	0.0863	0.0124	0.9529
교육훈련	-0.0380	-0.0667	0.0984	0.0871	-0.0029	0.925
에너지	-0.0183	0.0349	0.1463	0.1058	0.0001	0.9112
금융지원	-0.0388	-0.0643	0.0530	-0.0695	0.0010	0.9733
보건	-0.0381	-0.0859	0.0370	-0.0550	0.0147	0.9527
인권	-0.0133	0.0880	0.2546	0.8242	-0.0246	0.1387
불법이민	0.0078	0.0252	-0.0519	-0.0359	-0.0087	0.9686
불법약물	0.4691	-0.0678	0.0688	0.0086	-0.2828	0.8599
산업협력	0.0687	0.0826	0.0854	0.1547	-0.0161	0.8879
정보사회	0.2016	0.4132	0.2690	-0.3021	0.0065	0.2629
광업	0.0672	-0.0652	-0.0305	-0.0244	-0.0160	0.9123
자금세탁	0.5454	-0.1463	0.0171	0.0512	-0.1949	0.5705
원자력 안전	0.0087	-0.0511	-0.0356	-0.0298	-0.0003	0.9101

부표 2-8. 계속

변수	주성분 3 고유벡터	주성분 4 고유벡터	주성분 5 고유벡터	주성분 6 고유벡터	주성분 7 고유벡터	KMO 지수
정치적 대화	0.5485	-0.1182	0.0327	0.0508	0.2052	0.5981
공공행정	-0.1063	-0.1099	0.1669	-0.0715	0.0067	0.901
지역협력	0.0697	-0.0522	-0.0299	-0.0292	-0.0087	0.9506
공동연구	-0.0366	-0.0723	0.0959	0.0903	0.0147	0.9262
중소기업	-0.0852	-0.0731	0.0002	-0.0590	0.0963	0.9834
사회 문제	-0.0329	0.0250	0.0374	-0.0971	-0.0091	0.9393
통계	-0.0379	-0.0937	0.0494	-0.0577	-0.0004	0.992
조세	0.0809	-0.0315	-0.0348	-0.0595	-0.0298	0.9067
테러리즘	-0.0581	-0.0925	-0.2874	-0.0169	-0.0059	0.8387
비자와 인력이동	0.0727	-0.0078	-0.0314	-0.0251	-0.0032	0.9357

자료: 저자 작성.

### 부록 3. 주성분 분석(분쟁해결대상 여부)

부표 3-1.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시장접근)

시장접근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2.8305	0.9435	제조업 관세자유화	0.5838	0.6618
주성분 2	0.1562	0.0521	농업 관세자유화	0.5862	0.6429
주성분 3	0.0131	0.0044	수출세	0.5618	0.9458

자료: 저자 작성.

부표 3-2.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투자)

투자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1.5141	0.7571	TRIMs	0.7071	0.5
주성분 2	0.4858	0.2429	투자	0.7071	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3-3.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지식재산권)

지재권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1.8637	0.9319	TRIPs	0.7071	0.5
주성분 2	0.1362	0.0681	지식재산권	0.7071	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3-4.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경쟁)

경쟁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2.6599	0.8866	국영기업	0.5627	0.8547
주성분 2	0.2334	0.0778	국가보조	0.5813	0.7223
주성분 3	0.1065	0.0355	경쟁정책	0.5878	0.688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3-5.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표준)

표준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1.8412	0.9206	SPS	0.7071	0.5
주성분 2	0.1587	0.0794	TBT	0.7071	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3-6.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KMO 지수
주성분 1	1.8397	0.9199	반덤핑조치	0.7071	0.5
주성분 2	0.1602	0.0801	상계관세조치	0.7071	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3-7.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비교역이슈)

비교역이슈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주성분 2 고유벡터
주성분 1	19.6869	0.5625	통관	0.1237	0.0410
주성분 2	4.1224	0.1178	반부패	0.0988	-0.0377
주성분 3	1.8222	0.0521	환경법	0.1908	0.0580
주성분 4	1.2748	0.0364	노동시장규제	0.1908	0.0554
주성분 5	1.1873	0.0339	자본이동	0.1371	0.0318
주성분 6	1.1294	0.0323	소비자보호	0.2208	0.0298
주성분 7	1.0019	0.0286	데이터보호	0.1003	0.2426
주성분 8	0.9013	0.0258	농업 기술지원	0.1811	-0.1891
주성분 9	0.8400	0.0240	입법절차 통일	0.2067	0.0254
주성분 10	0.6229	0.0178	시청각	0.2208	0.0299
주성분 11	0.4804	0.0137	시민 보호	0.0882	0.4370
주성분 12	0.4385	0.0125	혁신정책	0.0008	0.0009
주성분 13	0.2242	0.0064	문화협력	0.2206	0.0291
주성분 14	0.2037	0.0058	경제정책 대화	0.2199	0.0299
주성분 15	0.1626	0.0046	교육훈련	0.2188	0.0269
주성분 16	0.1596	0.0046	에너지	0.1957	0.0188
주성분 17	0.1366	0.0039	금융지원	0.2106	0.0297
주성분 18	0.1221	0.0035	보건	0.0846	0.4243

부표 3-7. 계속

비교역이슈	고유값	비중	변수	주성분 1 고유벡터	주성분 2 고유벡터
주성분 20	0.0743	0.0021	불법이민	0.1855	-0.1759
주성분 21	0.0615	0.0018	불법약물	0.0009	0.0017
주성분 22	0.0540	0.0015	산업협력	0.1752	-0.1650
주성분 23	0.0469	0.0013	정보사회	0.0018	0.0077
주성분 24	0.0401	0.0011	광업	0.2026	-0.1926
주성분 25	0.0333	0.0010	자금세탁	0.0032	0.0016
주성분 26	0.0179	0.0005	원자력 안전	0.2038	-0.1935
주성분 27	0.0150	0.0004	정치적 대화	0.0857	0.4292
주성분 28	0.0110	0.0003	공공행정	0.2019	-0.1929
주성분 29	0.0053	0.0002	지역협력	0.2184	0.0262
주성분 30	0.0048	0.0001	공동연구	0.2024	0.0712
주성분 31	0.0031	0.0001	중소기업	0.1910	0.0286
주성분 32	0.0023	0.0001	사회 문제	0.2161	0.0290
주성분 33	0.0013	0.0000	통계	0.1825	-0.1889
주성분 34	0.0008	0.0000	조세	0.1362	0.2974
주성분 35	0	0.0000	테러리즘	0.1952	-0.1789
주성분 36	0.0028	0.0001	비자와 인력이동	0.1891	-0.180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3-8.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비교역이슈) (계속)

변수	주성분 3 고유벡터	주성분 4 고유벡터	주성분 5 고유벡터	주성분 6 고유벡터	주성분 7 고유벡터
통관	0.0529	0.5181	0.0894	-0.0348	-0.0133
반부패	0.1464	-0.0045	-0.6428	0.0802	-0.0029
환경법	-0.0342	0.1851	-0.1242	0.1852	-0.0038
노동시장규제	-0.0322	0.1834	-0.1225	0.1915	-0.0152
자본이동	0.0668	0.5012	0.0549	-0.1349	-0.0203
소비자보호	-0.0358	-0.0960	0.0454	-0.0570	0.0119
데이터보호	-0.0493	0.2701	-0.4271	0.1014	-0.0399
농업 기술지원	0.0871	-0.0177	-0.0257	-0.0515	-0.0071
입법절차 통일	-0.0343	-0.0377	0.0566	-0.0502	-0.0058
시청각	-0.0408	-0.0905	0.0456	-0.0555	0.0041
시민보호	-0.1081	-0.1165	0.1647	-0.0695	0.0072
혁신정책	0.1565	0.0218	-0.0077	0.0372	0.9082
문화협력	-0.0377	-0.0742	0.0519	-0.0608	0.0096
경제정책 대화	-0.0409	-0.0806	0.0883	0.0863	0.0124
교육훈련	-0.0380	-0.0667	0.0984	0.0871	-0.0029
에너지	-0.0183	0.0349	0.1463	0.1058	0.0001
금융지원	-0.0388	-0.0643	0.0530	-0.0695	0.0010
보건	-0.0381	-0.0859	0.0370	-0.0550	0.0147
인권	-0.0133	0.0880	0.2546	0.8242	-0.0246
불법이민	0.0078	0.0252	-0.0519	-0.0359	-0.0087
불법약물	0.4691	-0.0678	0.0688	0.0086	-0.2828
산업협력	0.0687	0.0826	0.0854	0.1547	-0.0161
정보사회	0.2016	0.4132	0.2690	-0.3021	0.0065
광업	0.0672	-0.0652	-0.0305	-0.0244	-0.0160
자금세탁	0.5454	-0.1463	0.0171	0.0512	-0.1949
원자력 안전	0.0087	-0.0511	-0.0356	-0.0298	-0.0003

부표 3-8. 계속

변수	주성분 3 고유벡터	주성분 4 고유벡터	주성분 5 고유벡터	주성분 6 고유벡터	주성분 7 고유벡터
정치적 대화	0.5485	-0.1182	0.0327	0.0508	0.2052
공공행정	-0.1063	-0.1099	0.1669	-0.0715	0.0067
지역협력	0.0697	-0.0522	-0.0299	-0.0292	-0.0087
공동연구	-0.0366	-0.0723	0.0959	0.0903	0.0147
중소기업	-0.0852	-0.0731	0.0002	-0.0590	0.0963
사회 문제	-0.0329	0.0250	0.0374	-0.0971	-0.0091
통계	-0.0379	-0.0937	0.0494	-0.0577	-0.0004
조세	0.0809	-0.0315	-0.0348	-0.0595	-0.0298
테러리즘	-0.0581	-0.0925	-0.2874	-0.0169	-0.0059
비자와 인력이동	0.0727	-0.0078	-0.0314	-0.0251	-0.0032

주: KMO지수의 경우 correlation matrix singular 문제로 계산이 불가.  
자료: 저자 작성.

## The Contents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ir Effects on Trade

Moonhee Cho, Young Gui Kim, Kyong Hyun Koo, Hyeri Park, and Hyeyoon Keum

Recently, the global trade system is deteriorating and the basis for world free trade is being threatened by a rise in trade protectionism.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represented by the WTO has shown its limitations in efficiently reflecting the rapidly changing global trade environment. In the meantime, free trade agreements have continued to increase up to recently, not only in terms of their numbers but also the scope they cover. While free trade agreements in the past focused on tariff reduction, more recent free trade agreements include complex provisions on issues such as non-tariff barriers, services, investment, digital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study reviews the contents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investigates their effects on trade using data from Worldbank (2017). First, more recent free trade agreements appear to contain more contents or provisions. We also find that Korea tends to sign more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s, containing an average of 26 provisions, which is higher than the world average of 18. Second, we find that establishing such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s has greater positive effects on trade. In particular, free trade agreements

including more WTO-X provisions promote trade flows more effectively. Third, we also investigate the effect of each type of provision on trad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 Market access provisions increased trade significantly. However, service provisions appear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rade. Investment provisions also have a negative effect on trade, mainly negative for export from advanced countries to both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We also find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sions play a restrictive role on trade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while public procurement provis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export to developing countries. Finally, while standard provisions have a negative effect on ex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advanced countries, they appear to promote trade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s mentioned above, the effects of provisions on trade are heterogeneous by the level of a country's economy. Moreover, these might vary depending on how they are implemented, so further research is needed for an accurat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

## 조문희(趙文熙)

연세대학교 경영학(부:경제학) 학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mhcho@kiep.go.kr)

### 저서 및 논문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공저, 2017)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공저, 2017) 외

---

## 김영귀(金榮貴)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現, E-mail: ygkim@kiep.go.kr)

### 저서 및 논문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공저, 2016)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7) 외

---

## 구경현(丘景鉉)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khkoo@kiep.go.kr)

### 저서 및 논문

"The Evolution of Earnings Volatility during and after the Great Recession"  
(*Industrial Relations*, 55.4, 2016)  
"The Rise of China and the Rebound in Korea's Manufacturing  
Employment"(공저, 2018) 외

---

## 박혜리(朴혜리)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Texas A&M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hr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공저, 2017)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공저, 2017) 외

---

## 김혜윤(琴惠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사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hykeum@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6)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7) 외

#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 2018년

- 18-01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 정영식 · 김경훈 · 김효상 · 양다영 · 강은정
- 18-02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 이수영 · 최혜린 · 김혁황 · 박민숙 · 남시훈
- 18-03 디지털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 최낙균 · 이규엽 · 김혁황 · 장윤중
- 18-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 강태수 · 김경훈 · 서현덕 · 강은정
- 18-05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광성일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 김미림
- 18-06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 윤덕룡 · 김소영 · 이진희
- 18-07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 문진영 · 나승권 · 이성희 · 김은미
- 18-08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 조동희 · 김종혁 · 김홍중 · 문성만 · 윤여준 · 임유진
- 18-09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유애라
- 18-10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8-11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경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18-12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정형근 · 김병연 · 이 석 · 조남훈 · 이정균 · 김범환
- 18-13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세르게이 루코닌 · 올가 쿠즈네초바

■ 2017년

- 18-14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최유정 · 임소정 · 이효영
- 18-15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 윤지현
- 18-16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  
현상백 · 박민숙 · 박진희 · 조고운 · 김부용
- 18-17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배찬권 · 엄준현 · 정민철 · 이장완
- 18-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  
이규엽 · 조문희 · 강준구 · 강민지
- 18-19 한 · 중 · 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 전자상거래 ·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규판 · 이현태 · 오윤미 · 김승현 · 이정은
- 18-20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김종택 · 박지현 · 김민성 · 안덕근
- 18-21 개방경제하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  
안성배 · 김효상 · 신희비 · 김지수 · 장희수
- 18-22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  
정영식 · 최혜린 · 양다영 · 강은정 · 고덕기
- 18-23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  
라미령 · 신민이 · 신민금 · 정재완 · 김재국
- 18-24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문희 · 김영귀 · 구경현 · 박혜리 · 금혜윤
- 18-25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최보영 · 이수영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 18-26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  
이상훈 · 김홍원 · 김주혜 · 최재희
- 17-01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정형곤 · 방호경 · 이보람 · 백종훈
- 17-02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7-03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승신 · 이현태 · 현상백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오윤미

- 17-04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  
곽성일 · 김재완 · 김재국 · 신민이
- 17-05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  
김상겸 · 박순찬 · 강민지
- 17-06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최장호 · 임수호 · 이석기 · 최유정 · 임소정
- 17-07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김규판 · 이형근 · 김종혁 · 권혁주
- 17-08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강준구 · 이홍식 · 한치록
- 17-09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윤덕룡 · 김효상
- 17-10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 · 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김효은
- 17-11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김경훈 · 김소영 · 강은정 · 양다영
- 17-12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김민성 ·곽소영 · 정민철
- 17-13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17-14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 · 중 관계를 중심으로 /  
윤여준 · 김종혁 · 권혁주 · 김원기
- 17-15 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  
박정호 · 염동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17-16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 유애라 · 윤상철 · 이종욱
- 17-17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 · 인도 협력방안 /  
이 용 · 배찬권 · 이정미
- 17-18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황운중 · 이수영 · 김혁황 · 강영호
- 17-19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이규엽 · 배찬권 · 이수영 · 박지현 · 유새별

- 17-20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철광석)을 중심으로 / 임수호·양문수·이정균
- 17-21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현·이상훈·오종혁·박진희·이하나·노수연
- 17-22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남시훈·금혜윤·김낙년
- 17-23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이현태·최장호·최혜린·김영신·오윤미·이준구
- 17-24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조문희·김종덕·박혜리·정민철
- 17-25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 김규판·이형근·이정은·김제국
- 17-26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조충제·정재완·송영철·오종혁
- 17-27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안성배·김기환·김수빈·이진희·한민수
- 17-28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동희·이철원·오탈현·이현진·임유진
- 17-29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최보영·이보람·이서영·백종훈·방호경
- 17-30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지역별 분석 / 이상훈·정지현·김홍원·박진희·이하나·최지원·김주혜·최재희
- 17-3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 문진영·한민수·송지혜·김은미
- 17-32 투자주도 성장정책의 이론과 정책의 국제비교 / 표학길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A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발간물일체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The Contents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ir Effects on Trade

Moonhee Cho, Young Gui Kim, Kyong Hyun Koo, Hyeri Park, and Hyeyoon Keum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협정이 포함하는 구성요소와 이를 규율하는 조항이 복잡·다양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Worldbank(2017)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 세계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을 조사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및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SBN 978-89-322-1723-9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